地域醫療保險 國庫支援方式의 評價와 改善方案

崔 秉 浩

韓國保健社會研究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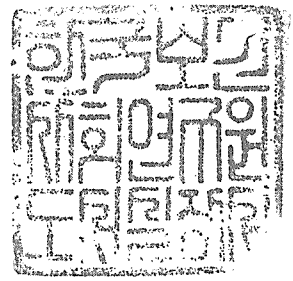

머 리 말

1977년 醫療保險制度가 도입된 이후 適用範圍의 급속한 擴大에 주력하여, 1988년에 農漁村지역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였고, 1989년 7월에 都市地域으로 확대하여 의료보호를 포함한 全國民 醫療保障時代를 맞이한 지 6년이 경과하였다. 이러한 급속한 확대로 인해 醫療接近度 면에서 놀라운 成果를 거둔 반면에 확대과정에서 발생하는 問題點을 계속 補完하여야 하는 것이 政策課題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農漁村 및 都市地域의 自營者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地域醫療保險이 안고 있는 財政的 脆弱性은 제도실시이후 계속된 國庫負擔金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懸案課題로 每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1994년 醫療保障改革委員會는 地域醫療保險에 대한 國庫支援을 단기적으로는 조합의 財政力에 따른 差等支援을 年次的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조합별 綜合財政力指數를 산정하여 완전히 差等配分할 것을 건의하였다. 政府는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國庫支援計劃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다.

本 報告書는 醫療保障改革委員會가 건의하는 國庫支援方向을 具體化하는 方案에 대한 연구로서, 현행 國庫負擔金의 組合間 配分方式을 再評價하고, 差等配分要素에 대한 計量的 分析을 통하여 組合別 綜合財政力指數의 산정방법을 개발하였다. 그 綜合指數에 따라 差等配分을 확대함으로써, 組合의 財政自立努力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組合間 衡平과 國家豫算運用의 效率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本 報告書에서 제안하고 있는 國庫配分方式이 앞으로의 國庫負擔金 政策樹立에 도움이 되고, 國庫配分方式의 發展을 위한 後續 硏究의 토

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어 關聯分野 學者 및 政策擔當官들의 一讀을 권한다.

本 硏究는 본 연구원의 崔秉浩 責任硏究員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본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院內세미나, 政策懇談會 및 政策協議會를 거쳐 各界의 意見을 수렴하였으며, 理論的 部分에 대해서는 韓國保健經濟學會의 학술발표를 통해 諸學者들과의 토론을 거쳤다.

本 硏究者는 이러한 과정에서 報告書 作成에 많은 도움을 준 保健福祉部 문경태, 변희연 과장, 김명석 사무관, 醫療保險聯合會의 한오석 연구위원, 윤완섭 과장, 장수목 대리, 醫療保險組合을 대표하여 討論에 참여한 서울 마포구 장기근 부장, 인천 남동구의 이선만 부장, 경기 남양주시의 윤효덕 부장, 경기 의정부시의 김덕배, 한진현 부장, 경기 광주군 유동열 부장, 경기 파주군 정행직 부장, 그리고 延世大學校의 이규식 교수에게 感謝하며, 原稿를 읽고 귀중한 助言을 해 준 본원의 金元重 연구위원과 李忠燮 책임연구원에게 謝意를 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本報告書의 내용은 著者의 個人的인 의견이며 本院의 公式的인 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5년 12월

韓國保健社會硏究院

院長 延 河 淸

目　　次

要 約 11

第 1 章　序 19

第 2 章　地域醫療保險 財政 및 國庫支援의 現況 및 評價 25

　第 1 節　地域醫療保險의 財政現況 25
　第 2 節　地域醫療保險의 國庫支援方式 32
　第 3 節　現行 國庫支援方式에 대한 評價 40

第 3 章　國庫支援方式에 대한 旣存 硏究와 外國의 事例 47

　第 1 節　國庫支援方式에 대한 旣存의 硏究 47
　第 2 節　國庫支援의 外國事例 50
　　1. 日本 50
　　2. 社會保險方式의 西歐諸國 54

第 4 章　醫療保障改革委員會의 改革案과 評價 57

　第 1 節　醫療保障改革委員會의 改革案 57
　第 2 節　改革案에 따른 國庫配分과 評價 58

第 5 章　國庫支援方式의 改善方案 63

　第 1 節　國庫의 組合間 差等配分指標의 選定 63
　第 2 節　組合의 綜合財政力指數의 開發과 國庫配分方式 70
　　1. 差等配分指標의 妥當性 檢討 71

2. 綜合財政力指數의 算定 75
3. 差等配分要素別 比重과 差等配分金의 適正比重 79
第 3節 改善案에 의한 國庫配分結果 87
第 4節 向後 國庫支援의 政策課題 94

第 6章 地方化時代에서의 國庫支援方式 檢討 97

第 1節 地方化時代와 醫療保險의 管理運營 97
1. 中央政府(保健福祉部長官)의 權限의
廣域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委任事項 99
2. 中央政府(保健福祉部長官)의 權限의 聯合會에
대한 委託事項 101
3. 地域組合 業務의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委託事項 102
第 2節 地方化時代下의 國庫支援方式 檢討 104

第 7章 結論 및 政策的 示唆 109

參考文獻 114

附 錄 117
Ⅰ. 1992年 地域醫療保險組合의 財政指標 119
Ⅱ. 1993年 地域醫療保險組合의 財政指標 126
Ⅲ. 綜合財政力指數에 의한 完全差等配分 結果 133
Ⅳ. 所得課標와 老人扶養比의 函數形態 變形에 따른 回歸分析 134
Ⅴ. 지니係數의 槪念과 計算方法 135

表 目 次

〈表 2- 1〉 醫療保障 適用人口 現況(1993年末) 26
〈表 2- 2〉 地域醫療保險의 保險料 配分比重 27
〈表 2- 3〉 地域保險의 要素別 保險料 比重 28
〈表 2- 4〉 地域醫療保險의 月平均 保險料 29
〈表 2- 5〉 地域醫療保險의 診療實績 30
〈表 2- 6〉 地域醫療保險의 財政收支 31
〈表 2- 7〉 地域醫療保險의 國庫負擔金 規模推移 33
〈表 2- 8〉 地域醫療保險의 都農間 國庫負擔金 現況(1993) 34
〈表 2- 9〉 地域醫療保險의 保險給與費 國庫負擔金 推移 34
〈表 2-10〉 現行 地域醫療保險 配分基準別 配分方式 38
〈表 2-11〉 地域醫療保險 醫療需要 및 保險料負擔 推移 41
〈表 2-12〉 醫療供給資源의 分布: 適用人口 萬名當
醫療機關數(1992) 42
〈表 2-13〉 現行 國庫負擔金 配分方式에 의한 組合間
配分結果(1992) 45
〈表 2-14〉 現行 國庫負擔金 配分方式에 의한 組合間
配分結果(1993) 46
〈表 3- 1〉 日本의 地域醫療保險('國民健康保險')의 國庫補助金
種類 및 內容 51
〈表 3- 2〉 日本 地域醫療保險의 國庫補助金 對 給與支出比重 53
〈表 3- 3〉 社會保險方式 中心의 西歐諸國의 國庫補助金
支援 現況 56
〈表 4- 1〉 醫療保障改革委員會의 改革案에 의한 國庫配分結果 59

〈表 4- 2〉 國庫差等配分의 擴大(50%, 100%)에 따른 國庫配分結果 61
〈表 5- 1〉 地域醫療保險의 財政自立度와 財政力評價指標의 分布 67
〈表 5- 2〉 國庫支援關聯 保險財政 및 財政力評價指標(1992) 69
〈表 5- 3〉 國庫支援關聯 保險財政 및 財政力評價指標(1993) 70
〈表 5- 4〉 財政力評價指標間의 相關係數(1992) 71
〈表 5- 5〉 財政力評價指標間의 相關係數(1993) 71
〈表 5- 6〉 差等配分指標와 財政自立度間 回歸分析: 標準化된 回歸分析 73
〈表 5- 7〉 差等配分指標와 財政自立度間 回歸分析: 彈力性分析 75
〈表 5- 8〉 配分指標로서의 1人當 所得課標의 形態別 分布 77
〈表 5- 9〉 配分指標로서의 老人扶養比의 形態別 分布 77
〈表 5-10〉 國庫負擔金 配分方式의 改善方案 79
〈表 5-11〉 綜合財政力指數 I에 의한 國庫差等配分 結果 (10, 15, 20% 差等) 87
〈表 5-12〉 綜合財政力指數 II에 의한 國庫差等配分 結果 (10, 15, 20% 差等) 89
〈表 5-13〉 綜合財政力指數에 의한 國庫差等配分 結果 (50, 100% 差等) 90
〈表 5-14〉 國庫負擔金의 差等配分 시뮬레이션(1995～'98) 92
〈表 5-15〉 農漁村地域에 대한 追加 財政移轉額 推定(1995) 93
〈表 6- 1〉 中央政府·地方自治團體 및 組合間 權限委任·委託 關係 103
〈表 6- 2〉 市·道別 廣域化에 의한 保險財政 및 財政力 評價指標(1992) 105
〈表 6- 3〉 市·道別 廣域化에 의한 保險財政 및 財政力 評價指標(1993) 106

〈表 6- 4〉 醫療保障改革委員會 改革案의 國庫支援方式에 의한 廣域地域別 國庫配分結果(1993) 107
〈表 6- 5〉 綜合財政力指數에 의한 完全差等配分方式에 의한 國庫配分結果(1993) 108

圖 目 次

〔圖 2-1〕 現行 國庫負擔金 支援方式 35
〔圖 5-1〕 地域組合別 財政收入의 지니集中度 82
〔圖 5-2〕 國庫差等配分 比重別 지니集中度 84
〔圖 5-3〕 國庫差等配分 比重別 分配率 84

附錄 表目次

〈附表 1〉 組合別 保險財政指標 및 財政力 評價指標(1992) 119
〈附表 2〉 組合別 保險財政指標 및 財政力 評價指標(1993) 126
〈附表 3-1〉 綜合財政力指數에 의한 分位間 完全差等配分 結果(1993) 133
〈附表 3-2〉 綜合財政力指數에 의한 地域間 完全差等配分 結果(1993) 133

要 約

Ⅰ. 序

1977년 醫療保險制度가 도입된 이후 1989년 7월 全國民 醫療保障時代를 맞이하기 까지 適用範圍의 급속한 확대로 인해 醫療接近度와 國民的 連帶에서 큰 성과를 거둔 반면에 擴大過程에서 발생하는 問題點을 보완하여야 하는 것이 政策課題이다. 이러한 문제점 가운데 農漁村 및 都市地域의 自營者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地域醫療保險이 안고 있는 財政的 脆弱性은 실시이후 계속된 國庫支援에도 불구하고 매년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1994년 醫療保障改革委員會는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단기적으로는 조합의 財政力에 따라 差等支援을 年次的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組合別 綜合財政力指數를 산정하여 完全히 差等配分할 것을 건의하였다. 政府는 이를 바탕으로 國庫支援計劃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다.

本 硏究는 醫療保障改革委員會가 제안하는 長期的인 國庫支援方案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로서, 國庫負擔金의 조합간 配分方式을 再評價하고 差等配分要素에 대한 計量的 分析을 통한 綜合財政力指數를 산정하는 방법을 개발하며, 그 綜合指數에 따라 差等配分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이와 더불어 地方化時代의 출범이 향후 醫療保險組合의 管理運營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국고지원정책의 방향을 논의한다.

II. 國庫支援方式의 現況과 評價

國庫負擔金의 配分方法은 管理運營費는 전액 국고지원하고, 나머지 豫算으로 保險給與費를 보조하고 있다. 급여비에 대한 국고부담금예산은 대부분이 조합별 被保險者當 定額으로 지원하고, 一部留保에 의해 조합별 財政力에 따라 차등배분하고 있다.

國庫負擔金留保에 의한 配分時, 財政力隔差要因으로 1인당 綜合所得稅 課標크기와 老人扶養比를 선정하고, 각 요인간 배분비율을 7:3으로 한다. 단, 산업재해지역, 도서벽지, 유병율이 높은 특수지역 등에는 특별추가지원을 하고 있다.

課標크기基準 配分은 1인당 평균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수를 감안하여 배분하되 老人人口數는 계산에서 제외하며, 老人基準 配分은 노인기준 총배분액에다 각조합의 노인인구비율을 가중치로 하여 배분한다(表 2의 改善方案과의 比較 參照).

現行 國庫配分方式에 의한 組合別 配分結果를 1993년 자료를 중심으로 醫療保障改革委員會의 개혁안에 따라 段階的으로 保險給與費의 10%('95), 15%('96), 20%('97)를 유보하여 차등배분하는 경우의 조합별 財政收支 改善效果를 實驗(simulation)한 결과는 〈表 1〉과 같다.

差等配分의 比重이 강화될수록 재정력이 취약한 하위분위에 속한 조합군의 國庫補助率과 收支率이 개선되며, 組合 全體의 平均値도 改善되고 있는데, 이는 재정력에 따른 差等配分이 얼마나 效率的인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差等配分은 國庫負擔金 豫算運用의 效率性을 제고할 뿐만아니라 조합 재정력에 따른 상대적 격차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衡平性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하다.

한편 國庫差等配分比重을 더욱 확대하는 경우 즉, 保險給與費 國庫負擔金의 50%, 100%를 대상으로 差等配分하는 경우, 평균수지율은 계속 호전되면서 수지율이 모든 분위에 걸쳐서 흑자로 전환되고 있으나

하위分位의 수지율이 上位分委의 수지율보다 높아지는 收支逆轉現狀이 발생하고 收支率 隔差가 분위간에 점차 擴大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방식에 의한 國庫負擔金의 差等配分擴大는 조합간의 收支隔差를 擴散시키고 組合間의 不衡平을 초래하여 조합이 스스로 經營效率化를 위한 운영을 포기하게 될 우려가 있다.

〈表 1〉 醫療保障改革委員會의 改革案에 의한 國庫配分結果

	기존 재정상태 ('93)		차등배분 확대안						50%, 100% 확대			
			1995(10%)		1996(15%)		1997(20%)		50%		100%	
분위	수지율	국고 보조율	수지율	국고 보조율	수지율	국고 보조율	수지율	국고 보조율	수지율	국고 보조율	수지율	국고 보조율
1	87.6	32.4	91.3	36.1	93.4	38.2	95.5	40.3	108.1	52.9	129.1	73.9
2	95.4	34.9	97.6	37.1	99.4	38.9	101.3	40.7	112.3	51.8	130.7	70.2
3	97.9	34.4	99.6	36.1	101.2	37.7	102.7	39.2	112.1	48.7	127.8	64.3
4	100.1	34.8	101.1	35.8	102.4	37.1	103.6	38.3	111.3	45.9	123.9	58.6
5	102.6	34.0	103.6	35.0	104.8	36.2	106.1	37.4	113.4	44.7	125.6	57.0
6	105.0	33.9	105.9	34.7	106.7	35.5	107.5	36.3	112.2	41.1	120.2	49.0
7	107.6	34.3	108.0	34.8	108.6	35.4	109.2	35.9	112.8	39.5	118.8	45.5
8	109.9	34.1	109.4	33.5	109.3	33.4	109.2	33.4	108.7	32.8	107.8	31.9
9	113.0	34.2	112.2	33.3	112.0	33.1	111.8	33.0	110.8	32.0	109.1	30.3
10	115.5	34.1	114.2	32.8	113.8	32.4	113.4	32.0	110.9	29.5	106.8	25.3
11	119.5	35.2	117.8	33.6	117.3	33.0	116.8	32.5	113.7	29.4	108.5	24.3
12	127.5	35.6	125.4	33.6	124.8	33.0	124.2	32.4	120.6	28.8	114.6	22.7
平均	107.0	34.3	107.3	34.7	108.0	35.3	108.6	35.9	112.3	39.7	118.6	45.9
偏差	11.6	3.2	9.7	3.353	9.04	4.4	8.55	5.5	9.4	12.8	19.3	25.4
v.c	0.109	0.093	0.090	0.097	0.084	0.124	0.079	0.153	0.084	0.324	0.163	0.554

註: 1) 각 분위별로 22개 조합이 포함됨. 단, 12분위에는 24개 조합임. 분위분류기준은 기준수지율을 중심으로 하였음. '기준'은 국고부담금을 조합의 피보험자수당 정액으로 배분하는 경우임.

2) 수지율 = (보험료수입+국고부담금) / 보험급여비(%)

3) 국고보조율 = 국고부담금/보험급여비(%)

4) v.c는 변이계수(variation coefficient)

III. 國庫配分方式의 改善方案

國庫配分方式의 改善案은 다음과 같다.

첫째, 差等配分指標로서 1인당 所得課標, 老人扶養比, 1인당 給與費, 扶養率(세대당 세대원수), 醫院의 分布 등 5가지를 선택하여 계량분석한 결과, 所得과 老人扶養比 지표를 중심적인 차등지표로 선택하되, 扶養率指標를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選擇된 指標들을 중심으로 해당조합의 綜合的인 財政力을 평가할 수 있는 綜合財政力指數를 개발하였다(表 2 참조).

〈表 2〉 國庫負擔金 配分方式의 改善方案

改 善 案	現 行
組合別 國庫配分金(x_i)은 $x_i = \alpha X \frac{z_i n_i}{\sum z_i n_i} + (1-\alpha) X \frac{n_i}{\sum n_i}$ 여기서, 組合 i 의 綜合財政力指數(z_i)는 $z_i = \beta \frac{a_i}{\sum a_i} + (1-\beta) \frac{b_i}{\sum b_i}$, $a_i = \sqrt{\frac{y}{y_i}}$, $y = \frac{\sum y_i n_i}{\sum n_i}$ $b_i = \sqrt{\frac{old_i}{econ_i} \times 100}$ β = 0.6	組合別 國庫配分金(x_i)은 $x_i = \alpha X [\ \beta \frac{a_i}{\sum a_i} + (1-\beta) \frac{b_i}{\sum b_i}\ ] + (1-\alpha) X \frac{n_i}{\sum n_i}$ 여기서, $a_i = \frac{y}{y_i}(n_i - old_i)$ $y = \frac{\sum y_i n_i}{\sum n_i}$ $b_i = old_i \times \ln(\frac{old_i}{econ_i} \times 100)$ β = 0.7, α = 0.1 ('95년), 0.15 ('96년), 0.2 ('97년)

<변수설명>

n_i = i 조합의 피보험자수, y_i = i 조합의 1인당 평균 소득과세표준

old_i = i 조합의 65세 이상 노인인구수,

$econ_i$ = i 조합의 20~64세의 경제활동인구

β = 소득과표에 따른 배분비중, $(1-\beta)$ = 노인부양비에 따른 배분비중

X = 급여비국고부담금 총규모, α = X중 차등배분금으로 할당되는 비중

셋째, 綜合指數를 구성하는 指標間의 相對的 比重을 결정한다. 즉 所得課標와 老人扶養比간 비중은 계량분석 결과, 6:4로 구성한다.

넷째, 전체 給與費 國庫負擔金豫算중 差等配分비중을 지니集中度와 分位間 分配率을 기준으로 適正差等率을 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95년의 國庫配分은 現行配分方式에 의하여 10%를 차등배분한다. '96년에는 새로운 배분방식에 의해 40%를 차등배분하고, '97년에는 차등배분을 55%로 확대하고, '98년에는 70%까지 확대하도록 하며, 이후 100%까지 완전차등배분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表 3〉 國庫負擔金의 差等配分 시뮬레이션

		現行方式		綜合財政力指數에 의한 方式							
		10% 차등 ('95)		40% 차등 ('96)		55% 차등 ('97)		70% 차등 ('98)		100% 차등	
분위	기준 수지율	수지율	국고 보조율	수지율	국고 보조율	수지율	국고 보조율	수지율	국고 보조율	수지율	국고 보조율
1	87.1	91.3	36.1	93.8	38.5	96.3	41.0	98.8	43.5	103.8	48.6
2	93.9	97.6	37.1	100.0	39.5	102.3	41.8	104.6	44.1	109.2	48.7
3	96.5	99.6	36.1	101.7	38.2	103.7	40.2	105.6	42.1	109.6	46.1
4	98.6	101.1	35.8	102.9	37.6	104.6	39.3	106.2	40.9	109.5	44.2
5	101.2	103.6	35.0	105.2	36.6	106.8	38.1	108.3	39.7	111.4	42.7
6	104.3	105.9	34.7	107.1	35.9	108.2	37.0	109.2	38.0	111.3	40.2
7	106.9	108.0	34.8	109.0	35.7	109.8	36.5	110.6	37.3	112.2	38.9
8	109.6	109.4	33.5	109.5	33.6	109.4	33.6	109.4	33.5	109.3	33.5
9	112.5	112.2	33.3	112.1	33.2	111.9	33.1	111.8	32.9	111.5	32.6
10	115.1	114.2	32.8	113.8	32.4	113.3	31.9	112.8	31.4	111.9	30.5
11	118.8	117.8	33.6	117.2	32.9	116.5	32.3	115.9	31.7	114.6	30.4
12	126.6	125.4	33.6	124.6	32.7	123.8	31.9	123.0	31.2	121.5	29.6
平均	106.1	107.3	34.7	108.2	35.6	109.0	36.4	109.8	37.2	111.4	38.7
偏差	11.3	9.7	3.4	8.8	4.5	8.2	5.8	7.8	7.2	7.9	10.1
v.c	0.106	0.090	0.097	0.081	0.126	0.075	0.160	0.071	0.194	0.071	0.260

개선안에 의한 國庫差等配分 결과는 〈表 3〉과 같다. 完全差等配分에 가까울수록 전체적인 收支率이나 國庫補助率이 계속 상승하면서 國庫補助率의 變異係數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收支率의 변이계수는 계속

하락함으로써 조합간 收支隔差가 수렴하는 安定傾向을 보여주고 있어 바람직한 配分方式이라고 판단된다.

國庫支援方式의 改善과 더불어 향후 國庫支援政策의 課題는 다음과 같다.

綜合財政力指數를 구성하는 각 指標는 매년 새로이 얻어지는 조합별 資料를 바탕으로 再構成되어야 할 것이다. 즉, 조합의 財政收支와 財政力指標들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작업을 定例化함으로써 보다 타당한 종합재정력지수를 재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所得課標指標는 각조합의 負擔能力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매년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扶養率指標, 給與費指標 등이 補助指標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매년 재정상황을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국고지원정책은 醫療保險 全體財政의 측면에서 財政安定化를 위한 財政調整事業(즉, 고액진료비 및 노인의료비 공동부담사업)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組合方式을 채택한 先進國의 경우 國庫負擔金은 특별히 지원이 요청되는 분야에 한정되고 있으며, 주로 재정조정사업에 의해 조합간의 질병 및 부담능력상 위험요인을 조정하고 있다. 日本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地域組合에 대해 國庫補助가 상당히 투입되고 있으나 운영주체가 '市町村'이라는 기초자치단체이며, 또한 國庫負擔金豫算이 매년 감소되는 추세에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醫療保險의 관리운영체계가 組合方式의 기조로 유지·발전하여 간다면 保險財政安定은 조합간 재정조정사업에 의해 보험제도내에서 해결되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재정조정사업이 연차적으로 확대되는 것과 비례하여 國庫負擔金규모를 조정함으로서 組合間 財政移轉을 적절히 조정해 나가는 것이 政府豫算運用의 效率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IV. 地方化 時代下의 國庫支援政策 檢討

地方自治의 출범에 따라 각종 정부사업의 中央과 地方政府간의 財源配分 및 執行上의 責任과 權限配分의 問題가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醫療保險의 경우 중앙정부(즉 보건복지부 장관)가 保險給與 및 保險料賦課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決定權限을 지고 있으며, 각 직장 및 지역별 組合이 獨立된 法人格으로서 가입자들의 資格管理, 保險料徵收 및 積立基金 등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전반적인 사업이 원칙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을 이유는 없다.

그러나 현행 1994년 12월의 醫療保險法 施行令改正을 통해 많은 부분의 권한이 廣域自治團體에 委任될 수 있으며, 조합의 업무도 地方自治團體에 委託할 수 있도록 되어, 향후 組合運營方向은 中央政府, 廣域自治團體, 基礎自治團體, 聯合會, 組合 등 5자간의 관리운영권 배분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중앙정부로부터 광역자치단체에 상당한 권한위임이 이루어져 廣域地方政府가 地域內 組合間 財政調整 혹은 自治를 시도한다면 실질적으로 組合規模를 廣域化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광역조합내에서 財政共同事業과 같은 橫的危險調整機能과 國庫差等支援의 縱的危險調整機能을 상당 부분 흡수하게 됨으로서 개별조합간 財政力隔差를 緩衝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한 방편으로서 1단계로 廣域地域別로 國庫配分이 이루어지고, 2단계로 각 광역지역내의 個別組合別로 再配分·調整하는 형태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V. 結 論

본보고서는 地域醫療保險의 財政安定化를 위한 현행 國庫支援方式을

評價하고, 國庫支援金을 地域組合別 財政力에 따라 差等配分을 擴大함으로서 조합간 衡平과 豫算運用의 效率을 제고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現行 國庫支援方案에 의한 국고배분결과는 농어촌 지역 등 財政脆弱組合의 財政不安定이 여전히 상존하게 되고, 部分的으로 差等支援을 확대할 경우 재정안정과 조합간 형평이 개선되나 差等配分을 계속 확대할 경우에는 조합간 不衡平과 經營上 效率을 沮害할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고서에서 고려한 差等配分要素로서는 所得課標, 老人扶養比외에 給與費, 扶養率(세대당 피보험자수), 醫院의 供給分布 등 5가지이다. 이상의 차등배분요소가 財政力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현단계로서는 所得課標와 老人扶養比 양지표를 차등배분지표로서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향후 醫療利用行態가 安定的으로 定着됨에 따라 扶養率 및 給與費를 補助的 指標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本 改善案에서 조합별 綜合財政力指數를 計量分析的 方法 (266개 지역조합의 1992, 1993년 자료를 이용한 統計分析 및 財政集中度 分析과 정책시뮬레이션을 활용)에 의해 개발하였으며, 國庫負擔金豫算을 종합지수에 의해 差等配分을 확대함에 따라 組合間 衡平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개선안에 의한 차등배분에 따라 國庫負擔金豫算을 절약할 수 있으며, 그 餘裕豫算을 타부문의 豫算으로 效率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地方化時代에 따른 中央政府의 廣域自治團體에 대한 權限委任이 醫療保險管理運營에 미칠 영향을 예상하고, 광역자치단체별로 조합의 財政調整 혹은 自治가 이루어지는 경우의 國庫負擔金政策을 검토하고 있다. 廣域自治地域의 財政安定은 최소한 현상태에서도 가능하며, 國庫補助가 廣域地域別로 배분되고 다음단계로 地域單位組合으로 재배분·조정됨으로써 廣域地域內의 財政問題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第1章 序

市場의 失敗로 인해 政府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영역중 社會保險으로서의 國民醫療保險은 질병발생이라는 社會的 危險(social risks)을 국민 각자의 부담능력에 따른 保險料(혹은 조세)를 갹출재원으로서 對處(risk pooling)하려는 것이 기본목적이다.

그런데 1977년 醫療保險制度가 도입된 이후 적용범위의 급속한 확대에 주력하여 1988년에 農漁村지역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였고, 1989년 7월에 都市地域으로 확대하여 의료보호를 포함하여 全國民의 醫療保障을 정부가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확대로 인해 醫療接近度면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둔 반면에 확대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야 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과제로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가운데 農漁村 및 都市地域의 自營者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地域醫療保險이 안고 있는 財政的 脆弱性은 제도실시이후 계속된 國庫負擔金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1994년 醫療保障改革委員會는 地域醫療保險에 대한 국고지원을 단기적으로는 조합의 재정력에 따른 差等支援을 年次的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조합별 종합재정력지수를 산정하여 완전히 差等配分할 것을 건의하였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국고지원 계획안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다.

本 報告書는 의료보장개혁위원회가 제안하는 長期的인 國庫支援方案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로서, 현행 地域醫療保險의 國庫負擔金의 조합간 配分方式을 再評價하고, 差等配分요소에 대한 計量的 分析을 통한 綜合財政力指數를 산정하는 방법을 개발하며, 그 綜合指數에 따

라 差等配分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이와 더불어 地方化時代의 출범이 향후 醫療保險組合의 관리운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국고지원정책의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地域醫療保險은 그 적용대상자의 평균적인 부담능력이 낮아 保險料 납부 저항 등 實施에는 限界가 있으므로 정부의 國庫負擔金지원에 의해 제도시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행 地域醫療保險은 扶助性 醫療保險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시행초기에 많은 재정적자조합이 발생하였으나 정부의 지원강화에 의해 적자조합수는 초기에 비해 줄어들었다.

그러나 문제는 地域醫療保險組合의 財政健全性에 있어서 조합간에 많은 차이를 시현하고 있는 것이다. 財政黑字가 누적되어 積立金規模가 상당한 조합이 있는 반면에 재정적 부담이 과중하거나 재정적자를 시현하고 있는 조합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1] 이러한 사실은 근본적으로 保險給與費에 상당하는 保險料를 부과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험료부과상의 制約과 그 제약을 단기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國庫負擔金을 각 地域組合의 財政力에 비례하지 않게 배분하는 方式이 地域組合間 財政收支의 격차를 낳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현행 國庫負擔金의 지원방식은 각 地域組合에 대한 管理運營費를

---

1) 地域醫療保險 266개 조합중 經常赤字基準으로, 赤字組合數는 1992년에 33개(도시 1개, 농촌 32개)로서 전체의 12%를 차지하였으나, 1993년에는 78개(도시지역 5개, 농촌지역 73개)로서 전체의 약 30%로서 재정상황이 악화되었다. 여기서 赤字는 보험료징수액과 국고보조금의 합계 대비 보험급여비를 기준으로한 것이다. 한편 보험료수입만으로 財政自立을 이루고 있는 조합수는 1992년 5개(도시), 1993년 2개(도시)에 불과하다(의료보험연합회, 『'92지역의료보험조합결산현황(조합별 내역)』, 1993. 9. 와 『'93지역의료보험조합결산현황(조합별 내역)』, 1994. 9.).

제외하고는 組合規模(피보험자수)別로 定額支援하는 것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2] 즉 피보험자 1인당 정액을 지원하는 인두제식 보조금으로 배분하고 있다. 이러한 配分方式하에서는 組合間의 재정력격차에 따른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醫療保險의 財政運營의 目標는 첫째, 피보험자의 負擔能力에 따라 保險料를 갹출하고 부담능력과 연계되지 않고 適正한 醫療給與를 제공받을 수 있는 형평성 (사회적 연대)을 보장하는 것이며 둘째, 주어진 負擔能力하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풍부한 의료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效率性을 제고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醫療保險 財政運營상의 目標를 地域醫療保險에 대한 國庫負擔金운영이란 측면에서 비추어 볼 때 첫째, 각 地域組合의 財政力에 따라 補助金을 배분하고 각 조합의 재정부담능력과 관계없이 적정한 의료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衡平性을 추구하여야 하며 둘째, 주어진 國庫負擔金 豫算하에서 각 地域組合別 財政需要를 적절히 보충하여 모든 조합이 재정적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배분함으로서 豫算運用의 效率性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地域醫療保險의 財政安定化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본 연구에서의 분석대상인 國庫負擔金 지원정책을 통한 것 외의 여러 방법들이 있다. 첫째는 保險財政調整事業으로서 피용자보험(직장의료보험과 공무원 및 교직원의료보험)과 自營者保險(地域醫療保險)을 포함한 모든 보험조합에서 부담능력별 일정 비율의 갹출로 共同財源을 마련하여 고액진료나 노인진료 등 診療費 發生要因이 높은 조합에 많은 지원을 함으로서 조합내의 특수한 요인에 의한 財政不安을 共同 對處하려는 제

---

2) 人頭別 定額支援은 所得에 대한 비중으로 보면 저소득일수록 높아지는 累進的인 구조를 지니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누진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조합간의 재정력격차가 심각하게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도이다. 이 경우에는 정부의 국고지원이 없이도 각 조합간 부담능력에 따른 橫的再分配(cross subsidization)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는 기존의 보험조합에 의한 운영방식을 전환하여 統合的인 單一制度로 운영하는 것으로서, 정부가 保險料를 조세로 징수하여 조성된 재원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의료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재원이 부족할 경우 國庫負擔金으로서 보충할 수 있을 것이며, 조세부과체계에 따라 소득계층간 垂直的 再分配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3)]

그런데 두번째 방법에 의한 財政安定化는 현행 조합방식에 의한 운영하에서는 일단 논외로 한다. 현행 운영방식하에서의 選擇은 전체 보험재정내에서의 횡적보조에 의한 공동부담사업방식('財政調整事業')에 의한 지역보험의 財政安定化를 택할 것인지 혹은 國庫負擔金의 지역보험에 대한 조합간 配分方式 개선을 통해 財政安定化를 택할 것인지 혹은 양방식간의 混合에 의할 것인지에 대한 政策的 判斷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3) 地域醫療保險의 財政赤字要因에 관한 각종 연구는 보험료상승율을 상회하는 수진율과 건당진료비상승에 의한 보험급여요인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 공통된 결론이다. 그 외에 보험과부과와 징수실적간의 괴리에 의한 적자요인을 들 수 있는데 지역의료보험의 도입이후 보험료징수실적은 해마다 개선되어 1993년 현재 98.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아래 表 참조), 지역의료보험이 보험료징수면에서는 정착단계에 진입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保險料賦課와 徵收간의 乖離에 의한 재정취약요인은 없다고 본다.

지역의료보험료의 징수실적(%)

년도	도시	농어촌	평균
1988	-	81.0	81.0
1989	78.6	91.4	83.0
1990	89.3	94.9	90.0
1991	92.7	96.2	93.5
1992	96.3	98.0	96.8
1993	98.6	99.1	98.7

資料: 保健社會部, 『保健社會白書』, 各年度.

본 연구에서는 國庫負擔金의 地域組合間 配分方式 改善에 의한 財政安定化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國庫負擔金에 의한 국고지원이 財政調整事業과 비교하여 지니는 장점은 다음과 같다. 國庫負擔金에 의한 差等支援이 타 수단에 비해 直接的이고 강력한 再分配手段이므로 농어촌 등 취약조합에 대한 短期的인 財政安定化에 크게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直接的'이란 의미는 정부에 조합의 어떤 寄與없이 補助(transfer)해 준다는 뜻이며, 반면에 財政調整事業은 조합의 共同醵出에 의해 고액 및 노인의료비 발생시 일정초과분에 대해 보상을 받는 조합의 寄與-報償의 迂廻的 連結이 있다는 의미에서 '間接的'인 보조수단이다. 短期的인 處方이 필요한 이유는 기존의 國庫支援方式하에서 근래 수년간 地域組合間 재정력격차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WTO체제의 출범에 따른 農業開放으로 농가의 경제난은 가중되고 農業離脫이 가속화될 전망이므로 國庫負擔金의 差等支援이 단기적으로 강력하게 전개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향후 농가인구의 감소가 계속됨에 따라 國庫負擔金 지원규모는 점진적으로 감소될 것이므로 장기적으로는 큰 재정문제가 없을 것이므로 政策處方의 時期選擇에 있어서 短期的인 政策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國庫負擔金'이란 용어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國庫負擔金은 현재 法令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保險料에 대한 政府의 負擔이란 성격이 강하다. 그런데 給與支出과 管理運營費를 예상하여 국고의 부담규모를 산정하므로 支出에 대한 補助的 역할을 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國庫負擔金과 國庫補助金이란 용어를 때에 따라서 混用하여 사용하고 있다. 地方財政에서 사용되는 國庫補助金은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의 발전과 깊은 관계가 있는 地方自治團體의 特定事業에 대하여 정부(중앙부처)가 부담하게 되는 경비의 일부를 말하며, 地方財政調整方法의 하나이다. 다른 하나의 지방재정조정방법으로서 地方

交付金은 지방자치단체의 財政需要와 稅收를 비교하여 부족재원을 보전할 목적으로 국가가 교부하는 재원이다.[4] 따라서 지역의료보험 組合의 醫療需要(보험급여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한 保險料收入을 보충할 목적이라면 交付金에 가깝다. 地域組合의 管轄區域은 기초자치단체의 行政區域과 동일하지만, 組合이 政府組織이 아니므로 國庫負擔金이란 이름으로 國庫補助 혹은 財政交付를 하고 있다. 日本의 경우 지역자영자에 대한 의료보험운영은 '市町村'이라는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금은 財政調整交付金, 補助金, 負擔金 등의 각종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 지역의료보험의 전반적인 財政現況과 함께 國庫負擔金의 組合間 配分方式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國庫配分 結果를 評價한다. 제3장에서 국고지원방식에 대한 지금까지의 각종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外國에서의 國庫支援事例를 분석하고 우리에게 주는 示唆點을 도출하려 한다. 제4장에서는 1994년의 醫療保障改革委員會에서 제안하는 국고지원방식과 그에 따른 國庫配分 결과를 평가한다. 제5장에서는 國庫支援金의 差等配分을 위한 배분지표 및 綜合財政力指數를 개발하고 이에 따른 國庫配分 결과를 보여주며, 향후의 國庫支援政策의 課題를 제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올해 실시된 地方自治制의 出帆이 地域組合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하고 이에 따른 廣域自治團體의 행정구역내 地域組合간 財政調整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國庫支援과 財政分析을 시도하고 있다. 제7장에서 結論과 본연구 결과의 政策的 示唆點을 제시한다.

---

4) 보다 상세한 설명은 김동건(1984: 472~476)을 참조함.

第 2 章 地域醫療保險 財政 및 國庫支援의 現況과 評價

第 1 節 地域醫療保險의 財政現況

1. 適用對象의 不安定性

현행 地域醫療保險의 國庫支援現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地域醫療保險 재정과 관련된 一般的 現況을 보기로 한다.

먼저 地域醫療保險의 適用人口는 〈表 2-1〉에서 보듯이 1993년말 현재 2,137만명으로서 전체 국민의 48.1%로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地域醫療保險의 適用對象者는 대부분이 自營者로서 所得의 樣態가 다양하고 所得水準의 隔差도 큰 특징이 있다. 즉, 도시지역 자영자 중 高所得의 特殊職種從事者가 있는 반면 도시저소득층과 농어촌 주민 등 저소득계층이 혼재하고 있다. 또한 피용자중에서도 직장 혹은 공교의료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소외되는 일부 근로자도 포함되고 있다. 특히 피용자가 퇴직하는 경우 피용자보험의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 지역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5]

---

5) 정부는 직장 및 공교보험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도 계속 피보험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보건사회부, 『보건사회백서』, 1994). 이는 한국 의료보험에 대한 NERA(National Economic Research Associates) 개혁안에서도 주장되고 있다(NERA, *The Reform of Health Insurance in Korea*, 1994). NERA는 퇴직근로자를 직장조합에 소속토록 함으로서 지역보험의 재정안정에 기여함으로서 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世代間 社會的 連帶에도 도움을 주며, 경로사상에도 합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地域醫療保險의 적용대상자는 피용자보험에서 제외되는 인구를 포괄하고 있으므로 그 구성이 매우 多樣하여 財政運營상 構造的으로 不安定한 요인을 안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불안정요인에서 발생되는 財政不安定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政策課題가 된다. 國庫負擔金의 配分은 이러한 지역별 각 組合의 財政不安要因에 따라 배분되는 것이 효율적이며 형평상 바람직할 것이다.

〈表 2-1〉 醫療保障 適用人口 現況(1993年末)

(단위: 만명)

구 분	적 용인 구	비 중
醫療保險	4,231	95.2
職 場	1,619	36.4
公 敎	475	10.7
地 域	2,137	48.1
農 漁 村	564	12.7
都 市	1,573	35.4
醫療保護	214	4.8
1 종	64	1.4
2 종	150	3.4

資料: 保健社會部, 『保健社會白書』, 1994.

2. 保險料賦課

地域醫療保險의 保險料賦課는 매년도의 保險給與費 支出을 추계하고, 그 추계액에서 國庫支援金을 차감한 금액을 保險料賦課 목표액으로 산정한다. 이때 保險給與費 지출예상은 지역내의 醫療機關分布, 所得水準, 醫療利用率 등을 감안하고 있다.

保險料賦課 目標額이 산정되면 保險料는 각 世帶별로 能力比例 保險料와 基本保險料로 구분하여 부과한다. 能力比例의 構成要素는 다시 所得, 財産, 自動車로 구분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소득과 재산은 30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별 정액으로 부과하고, 자동차는 5등급으로 구분

하여 臺當 8,000원 이내에서 부과하고 있다. 基本保險料의 구성요소는 世帶와 被保險者로 나누고 각각 25:75의 비율로 부과하고 있다.

基本保險料와 能力比例保險料간의 比重配分은 所得/財産把握率에 따라 그 비중을 달리하고 있다(表 2-2 참조). 소득/재산파악율이 높을수록 能力比例保險料에 많은 가중치를 두고 있다. 課稅資料上 소득/재산파악율이 낮을 경우 自律申告制로 하고 地域實情에 맞게 재조정하며, 신고재산에 대한 基礎控除額 수준을 조정함으로서 부담상의 衡平을 도모하려 하고 있다.

한편 소득/재산이 파악되지 않는 低所得世帶는 基本保險料만 부과하고,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오벽지주민에 대해서는 세대당 總保險料의 50% 이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총적용세대중 5% 이내의 저소득세대에 대해 保險料의 5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保險料賦課가 불공정한 경우에 조정하기 위한 기구로서 지역별 保險料調整委員會를 각 읍, 면, 동별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表 2-2〉 地域醫療保險의 保險料 配分比重

(단위: %)

소득/재산파악률	50 이하	60	70	80	90	90 이상
配分比						
能力比例	40	50	60	70	80	90
基本	60	50	40	30	20	10

註: 소득/재산파악률 = $\frac{\text{소득재산중 1개 이상 자료가 있는 세대수}}{\text{전체 적용세대수}} \times 100$

資料: 保健社會部, 『保健社會白書』, 1993.

賦課基準別 保險料의 比重은 〈表 2-3〉과 같다. 能力比例保險料의 비중이 계속 증가하여 왔으며 1993년 기준으로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所得/財産의 把握率이 해마다 개선되고 있음에 따라 能力比例 保險料에 대한 賦課比重이 상승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재산기준의 保險料比重이 상대적으로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表 2-3〉 地域保險의 要素別 保險料 比重

(단위: %)

구분	能力比例保險料				基本保險料		
	소계	소득	재산	자동차등	소계	세대당	피보험자당
1990	49.2	27.5	19.0	2.7	50.8	14.6	36.2
1991	51.6	27.9	20.8	2.9	48.4	13.8	34.6
1992	56.7	25.0	24.8	6.9	43.3	12.3	31.0
1993	59.1	28.7	26.2	4.2	40.9	11.6	29.3

註: 자동차 등에는 기타자산 포함. 여기서 기타 자산보험료는 생활정도가 유사하면서도 능력비례보험료가 낮게 부과된 세대에 대해 리(동)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과됨.

資料: 保健社會部, 『保健社會白書』, 1994.

여기서 能力比例保險料의 부과대상이 되는 所得 및 財産자료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소득 및 재산자료는 課稅資料에 의해 파악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세자료가 없을 경우 自進申告를 받아 이를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所得資料로서 農地所得, 綜合所得(事業所得, 勤勞所得, 利子所得 등) 등의 과세자료와 被保險者가 자진신고한 申告所得資料가 있다. 財産資料로는 재산세과세자료(土地, 建物) 및 其他所得(전·월세)자료, 自動車에 대한 자료가 있다. 그런데 과세표준액은 동일하더라도 소득원이 다른 경우는 실제 소득수준이 같지 않음을 반영하기 위해 소득의 종류에 따라 評價率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즉 종합소득 과세자료상의 事業所得 100만원은 農地所得이나 勤勞所得 100만원 소득자보다 高所得者라고 인식된다. 한편 申告所得의 경우에도 일정한 평가율을 적용하지만 신고소득 자체의 정확도를 검증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신고소득 자체의 信賴度에 문제가 있다.[6]

한편 地域醫療保險 적용대상자의 世帶當 및 被保險者當 月平均 保

險料는 〈表 2-4〉 와 같다. 피보험자당 월평균 保險料는 1993년 현재 4,163원으로서 1990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이 16.8%로서 동기간중 연평균 1인당 경상GNP 성장율 12.9%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1인당 保險料 년평균 증가율이 농어촌 20.9%, 도시 14.8%로서 農漁村地域의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로서는 의료보험 실시초기에 농어촌 지역의 保險料抵抗으로 낮은 수준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增加하는 給與費에 대응하여 保險料引上이 블가피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될 수 있다.

〈表 2-4〉 地域醫療保險의 月平均 保險料

(단위: 원)

	1990	1991	1992	1993
세대당	9,121	12,032	13,040	13,652
도 시	9,699	12,586	13,504	14,007
농어촌	7,772	10,552	11,725	12,600
피보험자당	2,609	3,527	3,894	4,163
도 시	2,876	3,802	4,130	4,354
농어촌	2,053	2,866	3,319	3,638

資料: 保健社會部, 『保健社會白書』, 1994.

3. 給與 및 診療實績

地域醫療保險에 대한 保險給與는 직장 및 공교보험과 유사한 수준으로서 保險種類間 혹은 組合間 給與의 差異가 거의 없다. 요양, 분만, 장제비 등이 주요 保險給與對象이 되며, 保險給與對象에서 제외되는 진료가 아직 많이 있다. 保險給與對象이 되는 진료중 일부는 진료시 본인이 직접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本人負擔比重은 入院診療의 경우 진료비의 20%, 外來診療의 경우 종합병원은 진찰 및 진료비의

6) 地域醫療保險의 保險料 賦課體系에 관한 최근의 보다 상세한 연구는 金基玉·魯仁喆·柳美女(1994)를 참조하기 바란다.

55%, 병원은 진찰 및 진료비의 40%, 의원은 총진료비의 30%(단, 1만원 이하일 때 2,800원 정액)가 해당된다.

地域醫療保險에 대한 診療實績은 〈表 2-5〉와 같다. 총진료비는 1993년 현재 2조 1,228억원으로서 의료보험총진료비 4조 3,783억원중 48.5%를 차지함으로서 적용인구비중인 48.1%와 비례하고 있다. 총진료비중 本人負擔比重은 1990년 34.7%에서 1993년 36.6%로 증가하고 있다. 즉, 동기간중 연평균증가율이 조합부담은 15.8%, 본인부담은 19.0%이다. 동기간중 수진율의 년평균 증가율은 7.2%이고, 건당진료비의 년평균증가율은 5.8%(입원 9.8%, 외래 5.3%)로서 입원비의 증가율이 두드러지고 있다. 總診療費의 增加는 수진율과 건당진료비 양자의 증가에 의한 것이며, 그 중 前者의 증가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수진율의 증가란 의료수요의 증가이든 의료공급의 증가이든 診療件數의 增加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表 2-5〉 地域醫療保險의 診療實績

(단위: 억원)

	1990	1991	1992	1993
총진료비	13,270	14,852	17,820	21,228
조합부담	8,669	9,441	11,301	13,464
입 원	4,000	1,159	5,578	6,539
외 래	4,669	4,252	5,724	6,925
본인부담	4,601	5,411	6,519	7,764
입 원	1,002	1,159	1,402	1,638
외 래	3,599	4,252	5,724	6,126
수진율	2.964	3.129	3.340	3.656
입 원	0.062	0.065	0.070	0.224
외 래	2.902	3.064	3.271	3.432
건당진료비(원)	23,275	25,797	26,189	27,590
입 원	416,242	448,076	491,025	543,071
외 래	14,814	16,094	16,272	17,302

資料: 保健社會部, 『保健社會白書』, 各年度.

한편 1995년의 診療費增加는 과거 수년간의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都市組合의 대부분이 經常赤字狀態로 전환되어 保險料의 引上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있다. 참고로 公敎醫療保險의 경우 '95년 1~9월의 總診療費는 前年 同期에 비해 22.5%가 증가하였고 診療件數는 21%가 증가한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의료보험관리공단, 最近醫保動向, 119호, 1995).

4. 財政收支

〈表 2-6〉은 전체 地域醫療保險의 財政收支現況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총수입이 총지출을 초과하는 재정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保險料收入의 대 保險給與比重은 1990년 68.8%에서 1991년 87.6%로 급격히 상승하였으나 1992년 84.4%, 1993년 77.2%로서 財政自立度가 계속 약화되고 있다.

〈表 2-6〉 地域醫療保險의 財政收支

(단위: 억원)

	1990	1991	1992	1993
收 入	9,940.2	15,143.8	16,985.9	18,958.0
보험료수입(A)	6,021.1	8,441.4	9,631.5	10,538.1
국고부담금(B)	3,639.0	5,867.9	5,924.4	6,381.5
기 타	280.1	834.5	1,430.0	2,038.4
支 出	10,075.0	11,479.2	13,632.9	16,008.5
보험급여비(C)	8,751.5	9,638.0	11,413.3	13,659.2
관리운영비(D)	1,264.5	1,456.2	1,559.2	1,550.2
기 타	59.1	385.0	660.4	800.0
A/C(%)	68.8	87.6	84.4	77.2
(B-D)/C(%)	27.1	45.8	38.2	35.4

資料: 保健福祉部, 『保健社會統計年譜』, 1994.

한편 정부의 國庫負擔金 지원은 保險給與費와 管理運營費에 대한 보조로서 管理運營費는 전액 지원하고 保險給與費에 대해 일부 보조하고 있다. 管理運營費를 제외한 國庫負擔金의 대 保險給與費에 대한 비중은 1990년 27.1%에서 1991년 45.8%로 증가하였으나 1992년 38.2%, 1993년 35.4%로서 국고지원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이는 재정자립력이 하강하는 추세와 더불어 재정악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管理運營費가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12.6%, 1991년 12.7%, 1992년 11.4%, 1993년 9.7%로서 감소하고 있으나 1993년 직장보험의 6.5%, 공교보험의 4.2%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第 2節 地域醫療保險의 國庫支援方式

1. 國庫支援 現況

地域醫療保險의 全體 國庫負擔金規模는 전체보험재정의 50%로 되어 있으며 國庫負擔金의 각조합별 배분은 初期에는 管理運營費를 제외하고는 組合規模(피보험자수)에 비례한 人頭當 定額으로 산정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피보험자당 정액지원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편으로 1992년부터 國庫負擔金중 一部를 留保하여 각 조합의 1인당 平均所得課標와 老人人口數에 따라 差等配分하고 있으나 그 비중은 절대적으로 미미한 실정이다. 일부유보금의 규모는 1992년 약 88억, 1993년 약 119억(保險給與費의 2.6%), 1994년 166억(保險給與費의 3.3%)이다.

國庫負擔金 전체규모의 산정은 해당년도의 전체 保險給與費규모와 管理運營費 所要額을 추계하고 이를 기준으로 總財政支出規模를 산정한 후 그 중 50%를 政府一般會計豫算에서 國庫支援金으로 확보한다.[7]

〈表 2-7〉에서 보듯이 國庫負擔金規模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

는 地域醫療保險도입 이후 醫療需要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1992, 1993년의 경우 保社豫算의 약 38%를 차지하고 있다. 〈表 2-8〉 은 1992년의 國庫負擔金 規模를 좀더 상세히 살펴 본 것이다.

한편 管理運營費를 제외한 保險給與에 대한 國庫負擔金 規模의 추이는 〈表 2-9〉 와 같으며, 제도시행 초기에 비해 管理運營費 비중이 낮아졌으나, 아직 28%가 管理運營費로 지출되고 있다. 특히 農漁村地域組合의 경우 3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管理運營費는 硏究範圍에서 除外한다. 管理運營費의 效率化는 전산화 등 조합운영방식의 개선과 조합규모의 확대에 의한 規模의 經濟實現에 의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表 2-7〉 地域醫療保險의 國庫負擔金 規模推移

(단위: 억원)

연 도	합계(A)	都 市	農漁村	保社豫算(B)	A/B(%)
1988	945.6	-	945.6	6,638.4	14.2
1989	2,206.1	1,107.4	1,098.7	9,282.4	23.8
1990	3,639.0	2,358.2	1,280.9	11,518.2	31.6
1991	5,867.9	3,764.1	2,103.8	14,628.9	40.1
1992	5,924.4	4,078.7	1,845.7	15,462.3	38.3
1993	6,381.5	4,432.2	1,949.3	16,659.3	38.3
1994	6,924.0	-	-	17,719.0	39.1
1995	7,553.0	-	-	19,839.0	38.1

資料: 保健社會部, 『保健社會統計年譜』, 各年度.
保健社會部, 『保健社會白書』, 1994.
醫療保險聯合會, 『地域醫療保險組合決算現況』, 各年度.

7) 國庫負擔金은 地域醫療保險의 負擔能力을 감안하여 保險料에 대한 政府補助金이란 성격이 강하다. 그런데 財政赤字가 계속됨에 따라 全體保險給與費와 管理運營費의 50%를 支援하는 規模로 算定되고 있다. 결국 全體規模는 地域保險 전체의 收支均衡을 이루도록 책정되도록 하고 있으나 기존의 배분방식하에서는 個別組合間 財政力 隔差에 따라 收支均衡을 못이루고 있다.

〈表 2-8〉 地域醫療保險의 都·農間 國庫負擔金 現況(1993)

(단위: 백만원)

	도 시	농어촌	계
保險料國庫負擔金	337,321	125,525	462,846
管理運營費	105,899	69,404	175,303
合 計	443,220	194,929	638,149
被保險者數 1인당(원/年)			
保險料國庫負擔金	21,434	22,479	21,708
管理運營費	6,729	12,429	8,222
合 計	28,163	34,909	29,929

註: 1995년 保險料國庫負擔金 5,619억원, 管理運營費 1,934억원임.
資料: 醫療保險聯合會, 『'93 地域醫療保險組合決算現況』, 1994. 9.

〈表 2-9〉 地域醫療保險의 保險給與費 國庫負擔金 推移

(단위: 억원)

년 도	합 계	도 시	농 어 촌
1988	550.3 (58.2)	-	550.3 (58.2)
1989	1,328.4 (60.2)	664.4 (60.0)	664.1 (60.4)
1990	2,462.6 (67.7)	1,681.7 (71.3)	780.9 (61.0)
1991	4,398.9 (75.0)	2,884.5 (76.6)	1,514.4 (72.0)
1992	4,271.5 (72.1)	3,075.2 (75.4)	1,196.3 (64.8)
1993	4,628.5 (72.5)	3,373.2 (76.1)	1,255.3 (64.4)

註: ( )는 保險給與費國庫負擔金의 全體國庫負擔金에 대한 비중(%)임.
資料: 保健社會部, 『保健社會統計年報』, 各年度.

한편 國庫負擔金의 全體規模는 '95년 7,553억원이었으며, '96년 예산은 8,723억원으로서, 향후의 保險給與期間 및 給與範圍의 擴大에 따른 급여지출 증가의 가속화로 곧 1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國庫支援은 급여비증대에 따라 계속하여 증액되기에는 限界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保險料賦課體系의 改善에 의해 保險料收入을 확보하여 나가는 노력을 경주함과 아울러 國庫負擔金을 조합별 財政能力에 따라 差等配分함으로서 給與費의 부족분을 보충하여야 할 것이다.

2. 國庫支援金의 配分方式

國庫負擔金의 配分方法은 豫算執行時 管理運營費는 전액 국고지원하고, 나머지 豫算으로 保險給與費를 보조하는데 각 조합별 世帶數와 被保險者數를 기준으로 지원할 定額保險料를 환산하여 왔으나 1992년부터 被保險者當 定額으로 변경하였다.

國庫負擔金의 配分方式은 [圖 2-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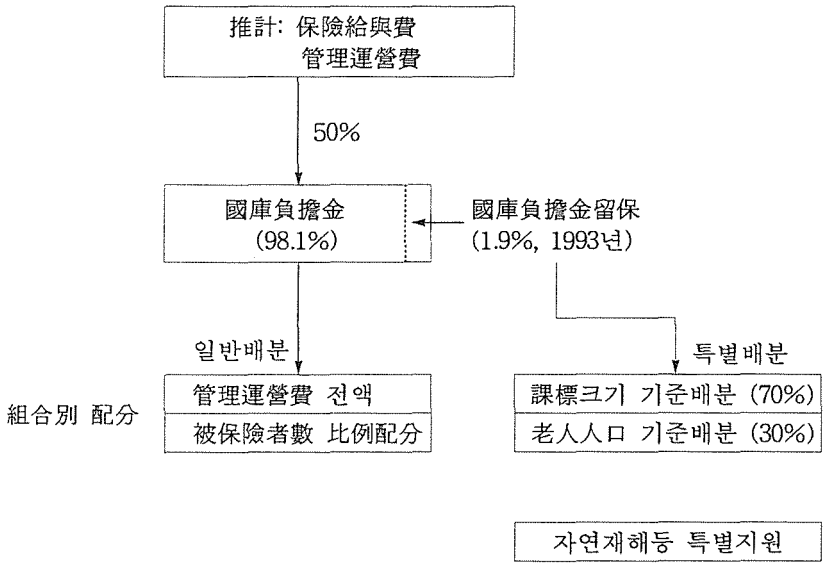

[圖 2-1] 現行 國庫負擔金 支援方式

國庫負擔金留保에 의한 配分으로서 각조합의 재정력격차에 따라 배분하고 있는데, 財政力 隔差要因으로 1인당 綜合所得稅 課標크기와 老人人口比重을 선정하고, 각 요인간 배분비율을 7:3으로 하고, 산업재해지역, 도서벽지, 유병율이 높은 특수지역 등에는 특별추가지원을 하고 있다.[8)]

직접적인 조합의 재정수지를 고려하여 배분하지 않는 것은 自律的인 財政安定努力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며, 배분대상 범위는 全地域組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現行 地域醫療保險 國庫負擔金의 配分基準別 配分方式〉

〈 變數 〉

n_i = i 조합의 피보험자수
y_i = i 조합의 1인당 평균 소득과세표준
old_i = i 조합의 65세 이상 노인인구수
$econ_i$ = i 조합의 20~64세의 경제활동인구

가. 一般配分

조합별 배분액 = (國庫負擔金 - 國庫負擔金留保) * $\frac{n_i}{\sum n_i}$

나. 課標크기 基準 配分

組合別 配分額 = 國庫負擔金留保* 0.7 * $\frac{a_i}{\sum a_i}$

여기서, $a_i = \frac{y}{y_i}(n_i - old_i)$

$$y = \frac{\sum y_i\, n_i}{\sum n_i}$$

- 綜合所得稅상의 1인당 課稅標準額크기를 기준으로 하며 농어촌의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農地所得은 제외함.
- 被保險者數를 감안하여 배분하되 老人人口의 二重計上을 피하

8) 1994년말부터는 都市地域 地域組合중 積立率(준비금적립금의 대 급여비 비중)이 50% 이상인 조합은 피보험자당 定額支援만 하고, 국고유보금에 의한 差等支援의 대상에서 除外하고 있다. 1994년 현재 130개 도시조합중 100개 조합이 적립률 50%를 초과하고 있다.

기 위해 老人人口數는 계산에서 제외함.

- 課標額은 申告所得을 기준으로 하되 신고소득이 없을 경우 推定所得을 기준으로 하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자료는 일부 지역 전산미연계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다. 老人基準 配分

$$\text{組合別 配分額} = \text{國庫負擔金留保} * 0.3 * \frac{b_i}{\sum b_i}$$

$$\text{여기서} \quad b_i = old_i \times \log(old_i/econ_i \times 100)$$

- 老人基準 總配分額에다 각조합의 노인인구비율을 가중치로 하여 배분함.
- 상기 式에 의해 老人構成比가 높은 조합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배분하게 됨.

라. 自然災害에 따른 配分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를 감안하여 特別基金에 의해 特別支援金을 補助하게 되는데, 그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text{組合別 配分金} = \text{特別支援金} \times \frac{\text{조합별 산출 피해면적}}{\text{전조합의 피해면적}}$$

$$\text{特別支援金規模} = \text{總留保額} \times \frac{\text{총 냉해피해 면적}}{\text{전국 경작지 면적}} \times 2$$

단, 피해면적은 피해율을 가중치로 하여 재조정함.

이러한 配分方式을 要約한 것이 〈表 2-10〉 이다.

〈表 2-10〉 現行 地域醫療保險 配分基準別 配分方式

구 분	조합별 배분액
일반배분	(국고부담금 - 국고부담금유보) × $\frac{n_i}{\sum n_i}$
과표기준 배분	국고부담금유보 × 0.7 × $\frac{a_i}{\sum a_i}$ 여기서, $a_i = \frac{y}{y_i}(n_i - old_i)$ $y = \frac{\sum y_i\ n_i}{\sum n_i}$
노인기준 배분	국고부담금유보 × 0.3 × $\frac{b_i}{\sum b_i}$ 여기서, $b_i = old_i \times \log(old_i/econ_i \times 100)$

< 變數 >

n_i = i 조합의 피보험자수
y_i = i 조합의 1인당 평균 소득과세표준
old_i = i 조합의 65세 이상 노인인구수
$econ_i$ = i 조합의 20~64세의 경제활동인구

한편 1995년부터 都市地域組合중 準備金積立率(적립금/급여비)이 50% 이상인 조합의 경우 國庫留保에 의한 差等支援對象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措置를 취하였다. 그런데 대부분의 도시조합의 경우 이러한 基準에 해당되므로(약100개 조합) 결과적으로 農漁村地域에 더많은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繼續事業으로 정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올해 給與費가 急增되고 있고 醫療酬價가 두차례에 걸쳐 인상('95. 4월 5.8%, 12월 11.82%)되었으며 향후 給與日數(현행 210일에서 매년 30일씩 연장되어 2000년경에는 제한철폐) 및 範圍가 확장될 것으로 보여 組合의 財

政狀況이 어려워져, 보험료인상이 수반되지 않는 한 적립율을 50% 이상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國民福祉企劃團의 건의에 따르면 적립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따라서 積立率 50%기준의 差等配分 對象除外 조치는 一時的인 조치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본보고서의 분석대상에서는 제외된다.

3. 國庫負擔金事業과 財政調整事業

農·漁村등 財政脆弱組合에 대한 재정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흔히 거론되는 것이 財政調整事業이다. 지금까지 고액진료비에 대해 전체 조합간 공동갹출에 의해 부담을 분산시켜 왔으나 1995년부터는 노인의료비를 포함하여 확대·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재정조정사업의 취지는 고액 및 노인의료비 등 높은 의료비지출에 대한 부담을 전조합이 共同對處하려는 것이며, 농어촌 등 부담능력이 약한 조합을 지원하려는 것이 一次的인 目的은 아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농어촌지역이 노인인구가 많고 노인질병이 고액진료를 유발하기 때문에 재정조정사업의 결과 농어촌지역에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즉 농어촌지역은 재정조정사업으로부터 적은 갹출료로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財政移轉效果를 間接的으로 누리게 된다.

현재 財政調整事業은 의료보험의 管理運營體系 논쟁에서 현행 조합방식에 통합방식의 利點을 수용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정부도 재정조정사업의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으며, 1991년 보험료수입의 5%에서 1994년까지 8%까지 확대하였으며, 1995년에 14.5%, 1996년 17.5%, 1997년 20%로 확대할 예정이다.[9]

---

9) 財政調整事業에 의한 年度別 財政移轉效果는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그런데 재정조정사업이 강화되는 경우 국고부담금사업의 存續 必要性에 대한 논의가 제기될 수 있다. 財政調整事業은 급여지출의 과다발생에 대한 共同對處가 주목적이며, 조합의 부담능력의 격차에 따른 재정적 취약요인을 해결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지역조합중 保險料負擔能力이 취약한 조합에 대한 國庫補助의 必要性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양사업의 올바른 방향으로서는 財政調整事業이 擴大됨에 따른 지역조합에 대한 재정이전효과를 고려하면서 國庫負擔金事業의 規模를 縮小·調整해 나가는 방향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역조합의 부담능력 및 의료급여지출 구조의 변화를 잘 관찰해 가면서 재정조정사업과 국고부담금사업 양자에 의한 綜合的인 財政移轉效果가 지역의료보험의 재정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제5장에서 후술하겠지만, 국고부담금의 차등배분이 강화되는 경우 취약조합에 대한 재정이전효과는 더욱 커지게 되므로, 재정조정사업의 확대와 더불어 국고부담금 규모는 더욱 축소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第 3 節 現行 國庫支援方式에 대한 評價

1. 國庫配分方式의 妥當性

현행 國庫負擔金 支援方式의 妥當性을 評價하면, 여러가지 측면에서

(단위: 억원)

	農·漁村	都市	職場	公敎
1991	81	106	-146	-41
1992	104	137	-176	-38
1993	136	189	-281	-51
1994	171	249	-346	-23
1995	656	487	-961	-161

볼 수 있다.

먼저 醫療需要側面에서 보았을 때 〈表 2-11〉에서와 같이 受診率(피보험자 1인당 진료건수)과 被保險者 1인당 給與費 추이에서 農漁村地域이 도시지역과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여 수요측면에서는 피보험자 1인당 정액지원방식은 비교적 타당하게 보인다.

〈表 2-11〉 地域醫療保險 醫療需要 및 保險料負擔 推移

(단위: 원/年)

연도	수진율		피보험자 1인당 연간 급여비		피보험자 1인당 보험료	
	농어촌	도 시	농어촌	도 시	농어촌	도 시
1988	1.645	-	19,284	-	-	-
1989	2.477	0.758	32,999	10,955	18,372	29,148
1990	2.908	2.991	43,317	45,918	24,636	34,512
1991	3.077	3.151	47,163	48,748	34,512	46,140
1992	3.356	3.335	55,431	55,498	39,480	50,256
1993	3.712	3.635	66,072	62,586	43,980	53,184

資料: 의료보험연합회, 『지역의료보험조합 결산현황』, 각년도.

그러나 1인당 정액 중심의 國庫支援方式에 의존하는 경우 農漁村地域에 불리한 構造的 要素가 많이 상존하고 있다.

첫째, 保險料의 負擔能力側面에서 지역간 경제적 불균형에 따른 조합간의 재정력 차이를 고려하여야 형평에 맞을 것이다.[10]

둘째, 人口構造上 疾病發生頻度 및 高額醫療費 등 많은 의료수요가 요구되는 老齡人口 比重이 農漁村地域이 높고 향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러한 노령인구에 대한 構造的 醫療需要問題가 고려되어야 할

10) 地域間 經濟力 隔差에 의한 부담능력을 반영하기 위해 保險料賦課基準중 하나로 所得에 근거하여 각출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료 부과기준이 所得, 財産, 自動車 등 應能基準이 있는 반면에, 世帶當, 世帶員數 등 應益基準이 있으므로 부담능력에 비례한 衡平賦課와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것이다.

셋째, 醫療供給側面에서 〈表 2-12〉와 같이 農漁村地域이 量的으로나 質的으로 의료공급의 혜택에 불리함을 안고 있어 같은 保險給與수준이더라도 實質的인 醫療受惠는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表 2-12〉 醫療供給資源의 分布: 適用人口 萬名當 醫療機關數(1992)

	병원급	의 원	보건소등	약 국
도 시	0.37	12.0	0.26	12.83
농어촌	0.19	3.58	5.99	3.82

資料: 의료보험연합회, 『'92년도 지역의료보험조합 결산현황』, 1993.

또한 현행 國庫負擔金 留保額의 配分基準에 있어 재정력격차를 고려하는 特別配分의 비중이 너무 낮아 差等支援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며, 또한 과표크기기준과 노인인구기준의 배분이 7:3으로 나누어지는 근거에 대해 분석을 요한다.

課標크기 기준에 의한 配分에 있어서 부담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로서의 과표기준은 綜合所得稅課標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이러한 과표가 부담능력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면 財産관련 課標도 보조적인 지표로서 포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保險料가 실질적으로 소득이라는 플로우(flow)를 창출하지 않는 스톡(stock)에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장기적으로 소득파악율이 제고되어 자영자에 대한 과세특례범위가 줄어들고, 綜合所得稅制가 확립될 것으로 생각하면 綜合所得稅課標를 계속 保險料算定의 기본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런데 전체세대중 課稅資料가 있는 세대는 少數이며 조합별로 과세자료를 보유한 세대의 비중이 다르므로 所得課標를 차등배분의 基準으로 삼는 데에는 限界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외의 다른 代案이 없다는 점이며 소득과

표의 조합간 相對的 크기는 유의하게 사용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한편 課標기준과 老人扶養比기준에 의한 配分算式에서 각 지표별 函數形態와 加重値로 사용된 人口範圍에 대한 검토가 다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함수형태로서 과표기준은 y/y_i(즉, 전조합 平均所得課標/개별조합 平均所得課標) 를 사용하고, 老人扶養比 기준은 $\log(old_i/econ_i(\%))$(즉, 老人扶養比를 로그형태로 치환)를 사용하고 있으며, 加重値로서는 과표기준은 (n_i-old_i)(즉, 노인을 제외한 개별조합의 피보험자수), 老人扶養比기준은 old_i(즉, 피보험노인수)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評價는 제5장의 계량분석에 의해 검토된다.

2. 國庫配分結果

現行 國庫配分方式에 의한 組合別 配分結果를 보기 위해서 1992년, 1993년 2개년을 중심으로 基準收支率[11] 크기순으로 266개 조합을 12분위로 나누어 收支率(保險料收入+國庫負擔金/保險給與費), 財政自立度(保險料收入/保險給與費), 基準國庫補助率[12], 國庫補助率(國庫負擔金/保險給與費), 그리고 市비중(市를 1로, 郡을 0으로 두었을 때의 평균치)을 나타내어 보았다. 그 결과는 〈表 2-13〉, 〈表 2-14〉와 같다.

管理運營費를 제외한 급여지출은 1993년에는 1992년에 비해 19.7%

11) 基準收支率은 國庫負擔金을 組合別로 被保險者當 定額으로 配分하는 경우에 各組合의 (保險料收入+國庫補助金)/保險給與費를 의미한다. 基準收支率 크기순으로 분류한 이유는 國庫負擔金이 원래 被保險者 1인당 基準으로 支援되어 오다가 近來에 이러한 定額支援方式이 組合間 財政的 環境을 考慮하지 못한다는 批判을 받아 差等配分方式으로 轉換하고 있기 때문에 差等配分에 의해 얼마나 組合間 財政格差가 緩和되는지를 比較하기 위한 準據로서 必要하기 때문이다.

12) 基準國庫補助率은 組合別로 1인당 定額으로 配分하였을 경우 國庫補助金對 保險給與費 比率을 의미한다.

증가한 데 대해 給與費國庫負擔金은 8.4% 증가에 그쳐 평균 國庫補助率이나 收支率이 '93년에는 '92년에 비해 악화되고 있다. 피보험자당 정액으로 배분한 기준수지율보다는 1992년, 1993년 일부 국고유보에 의한 差等配分결과는 평균적인 國庫補助率과 수지율을 약간 개선시키고 있다. 그런데 수지율의 변이계수를 보면 1992년에는 현행수지율의 변이계수가 기준수지율의 변이계수보다 낮아졌으나 1993년에는 오히려 증가하여 수지율격차가 더욱 벌어져 國庫負擔金配分이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國庫負擔金配分 對 保險給與支出比重의 전체 조합평균은 1992년 38.0%, 1993년 34.3%를 기준으로 각분위에 걸쳐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어, 國庫負擔金의 배분이 조합의 財政狀況과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間接的으로 알 수 있다. 또한 1993년 평균이 1992년보다 낮아진 것은 급여비의 증가가 國庫負擔金 증가를 상회하였기 때문이다. 國庫負擔金을 포함한 수지율은 1992년에는 2분위까지는 100% 이하로 적자를 시현하고 있으나 그 이상의 분위에서는 100%를 상회하는 흑자를 보이고 있으며, 1993년의 경우 3분위까지 적자를 시현하여 재정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평균수지율이 1992년 114%에서 1993년 107%로 떨어지고 있으며, 變異係數도 0.105에서 0.109로 커져 수지율의 상하분위간 조합의 격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國庫負擔金을 제외한 재정자립도의 경우에도 평균이 1992년 76% 에서 1993년 72.6%로서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國庫支援이 더욱 강화될 必要性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財政自立度가 조합분위별로 1992년 56.5%부터 94.6%로 분포하고 있으며 1993년 55.3%에서 91.9%로 분포하고 있어 심각한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시비중에서 나타내듯 수지상태가 좋은 상위분위일수록 시조합을 많이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都市組合일수록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에도 불구하고 國庫負擔

金이 농어촌과 별 差等없이 補助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변이계수의 검증을 통하여서도 뒷받침이 되고 있다. 財政自立度의 變異係數(표준편차/평균)는 0.157('92년), 0.150('93년)으로서 國庫補助率의 變異係數 0.092('92년), 0.093('93년)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즉, 재정자립도의 조합간 격차가 국고보조율의 조합간 격차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합의 재정수지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國庫負擔金이 보다 차등배분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表 2-13〉 現行 國庫負擔金 配分方式에 의한 組合間 配分結果(1992)

분위	수 지 율		자립도	국고보조율		
	기 준	현 행		기 준	현 행	市비중
1	92.6	94.3	56.5	36.0	37.8	0.05
2	98.9	99.6	62.2	36.7	37.4	0.14
3	102.6	104.1	65.4	37.2	38.7	0.09
4	105.3	105.9	68.5	36.9	37.4	0.14
5	107.5	107.9	70.6	37.0	37.4	0.27
6	110.6	111.7	73.2	37.4	38.5	0.36
7	114.4	115.4	77.0	37.3	38.4	0.41
8	118.9	119.3	82.0	37.0	37.4	0.82
9	121.5	121.1	84.0	37.5	37.2	0.91
10	124.9	124.6	86.2	38.8	38.5	0.77
11	127.5	128.1	89.2	38.4	39.0	0.91
12	133.9	134.2	95.6	38.3	38.6	0.96
平 均	113.4	114.0	76.0	37.4	38.0	-
標準偏差	12.2	11.9	11.9	2.9	3.5	-
變異係數	0.108	0.105	0.157	0.079	0.092	-

註 1) 변이계수는 편차/평균임.
2) 각분위별로 22개 조합이 포함된다. 단 12분위에는 24개 조합이 포함.
3) '基準'은 國庫負擔金을 조합의 피보험자수당 정액으로 배분하는 경우임.
4) 市비중은 시조합을 1, 군조합을 0으로 두었을 때의 평균치임.

〈表 2-14〉 現行 國庫負擔金 配分方式에 의한 組合間 配分結果(1993)

분위	수지율		자립도	국고보조율		
	기 준	현 행		기 준	현 행	市비중
1	87.1	87.6	55.3	31.9	32.4	0.00
2	93.9	95.4	60.5	33.4	34.9	0.00
3	96.5	97.9	63.5	33.0	34.4	0.05
4	98.6	100.1	65.3	33.3	34.8	0.14
5	101.2	102.6	68.6	32.5	34.0	0.23
6	104.3	105.0	71.2	33.1	33.9	0.36
7	106.9	107.6	73.3	33.6	34.3	0.50
8	109.6	109.9	75.9	33.7	34.1	0.81
9	112.5	113.0	78.9	33.7	34.2	0.86
10	115.1	115.5	81.4	33.6	34.1	0.86
11	118.8	119.5	84.3	34.6	35.2	1.00
12	126.6	127.5	91.9	34.8	35.6	1.00
平 均	106.1	107.0	72.6	33.4	34.3	-
標準偏差	11.3	11.6	10.9	2.2	3.2	-
變異係數	0.106	0.109	0.150	0.067	0.093	-

註 1) 각분위별로 22개 조합이 포함된다. 단 12분위에는 24개 조합이 포함.
2) '基準'은 國庫負擔金을 조합의 피보험자수당 정액으로 배분하는 경우임.
3) 市비중은 시조합을 1, 군조합을 0으로 두었을 때의 평균치임.

第 3 章 國庫支援方式에 대한 旣存 硏究와 外國의 事例

第 1 節 國庫支援方式에 대한 旣存의 硏究

國庫負擔金 支援方式에 관한 연구는 地域醫療保險의 財政安定化方案의 일환으로서 주로 연구되어 왔다. 먼저 地域醫療保險이 실시되기 전에 示範事業 당시의 연구들로서는 유승흠 외(1985), 이규식 외(1986), 연하청(1987), 문옥륜(1988) 등이 있으며, 全國民醫療保險 실시 이후의 연구로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1), 노인철(1991), 문종국(1991),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1992), 윤완섭(1994) 등이 있다.

國庫負擔金 配分方式을 구체적으로 연구한 것은 노인철(1991), 연세대학교(1992), 윤완섭(1994)이다. 먼저 노인철(1991)은 '標準支援基準'에 의한 각조합별 一律的인 配分을 제안하고 있다. 즉, '標準支援基準'을 地域醫療保險 적용대상자 전국평균 1인당 給與費와 保險料의 合의 평균으로 정하고 각조합의 被保險者數에 따른 人頭定額支援에 의한 배분효과를 설명하고 있다.[13] 그리고 소득수준에 따른 差等支援의 問題點으로서 피보험자의 能力比例保險料에 대한 國庫負擔金의 비율이 累進的인 構造를 가지기 때문에 현행 방식이 低所得層의 保險料 負擔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진다고 보며, 이 이상의 差等支援은 자영

13) 魯仁喆(1991)은 인두정액지원을 하는 理由로서 첫째, 政府의 責任限界를 명확히 설정하고 둘째, 국고부담금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고 셋째, 군조합과 시조합의 평균급여비 및 평균보험료수준의 차이로 인하여 도농간 차등지원이 사실상 가능하고 넷째, 조합측의 자발적인 의료비 절감노력이 기대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업자의 세대나 개인의 소득수준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로 귀결되어서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철(1991)에 의한 배분결과는 기존의 組合規模에 比例한 人頭定額支援方式에 의한 것과 큰 차이가 없으며, 따라서 이 방식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都,農間 地域組合의 財政不均衡이 상존하게 됨을 스스로 限界點으로 지적하고 있다.

延世大學校 保健政策 및 管理硏究所(1992)는 기존의 被保險者 1인당 定額支援과 더불어 組合間 差等配分基準으로서 老人人口數에 따른 比例的 配分方式을 제안하고 있다.[14] 地域組合의 財政脆弱要因은 給與부문에서 비롯되므로 老人人口數와 더불어 療養取扱機關數에 따른 差等配分을 제안하고 있다. 그런데 요양기관이 많은 지역일수록 醫療利用率이 높아 財政이 脆弱해 진다는 假說을 세웠으나 가설이 棄却되는 분석결과에 의해 老人人口數만을 고려한 배분을 제안하였다(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1992: 89~91). 그러나 어떤 지역에 療養機關이 많다는 것은 그 지역의 醫療費負擔能力이 크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구매력이 없다면 기업으로서의 요양기관은 그 지역에 진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市場原理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기 假說은 反對로 構成되어야 하며 그러할 경우 가설이 기각되지 않는 결과를 갖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검증은 제5장에서 취급된다.

윤완섭(1994)은 현행 國庫支援方式으로 조합간 財政調整機能을 별로 기대할 수 없음을 평가하고 있으며, 國庫配分方案으로서 우선 전체조합을 5集團으로 분류한다(분류기준은 所得, 適用人口, 面積). 다음으로 組合別로 保險料 負擔能力指數(보험료/소득) 혹은 給與費負擔指數(급

14) 연세대학교(1992)는 지역의료보험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綜合的인 接近을 하고 있다. 즉 피보험자 자격관리, 보험료부과 및 징수, 재정안정기금(고액진료비 공동부담사업)등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여비/소득)를 산정한다. 1段階로 全體國庫負擔金을 集團別로 배분하는데 配分額은 集團의 保險料 負擔能力指數의 他集團과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2段階로 집단의 국고부담금은 集團內에서 組合別 給與費 負擔指數의 他組合과의 相對的 크기에 따라 配分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 방안은 전체조합을 유사한 환경을 지니는 集團으로 나누고 집단별 보험료부담능력에 따라 배분하되, 集團內에서는 組合의 급여지출수준을 감안하여 적자조합을 감소시켜려는 시도로서 조합의 財政均衡을 위한 좋은 대안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방안이 실제 집행되기 위해서 몇가지 지적될 사항으로서는 첫째, 집단분류기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며 둘째, 保險料를 배분기준으로 사용하는 경우 基準의 外生性에 대한 문제가 있다. 배분기준은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外生變數를 쓰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給與費 基準의 경우에도 물론 조합이 급여지출을 통제할 재량이 미약하지만, 이 기준을 사용할 경우 不當給與의 적발노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所得基準에 대한 信賴性의 문제이다. 현재 소득파악률이 조합별로 상이하며 파악된 소득도 불완전하다. 따라서 소득외의 다른 외생적인 기준에 의해 조합의 재정력을 측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연하청(1987)은 都市型과 農村型으로 구분하여, 保險料徵收를 受益者負擔原則에 입각하되 地域別 所得水準과 醫療供給水準에 따를 것을 제안하고 있다(연하청, 1987, p.51). 권순원, 양봉민(1990)에 의하면 기존의 보조방식을 소득수준을 감안한 保險料補助方式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15] 특히 권순원(1993)에서는 富農이나 專門職從事者에 대해 정부가 비용의 50%를 부담하는 것은 국제관행에도 어긋날

15) 지역의료보험의 노인인구비율의 증가속도가 빠른 것으로 전망하여 노인계층을 타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에 적용시키거나 혹은 고액노인진료비에 대해 전체 의료보험재정과 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권순원 · 양봉민, 1990: 99~101).

뿐아니라 衡平問題나 國家財源의 非效率的 活用문제를 제기하며 이들에 대해 政府支援을 없애고 나머지 목표지원계층에 50%를 지원하는 방식[16]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의료욕구와 지불능력을 반영하는 조합의 經濟社會的 特徵(노인인구비율, 소득수준, 실업자수 등)을 묶어 複合指數를 산출한 다음, 이들을 근거로 조합별 差等支援을 행함으로서 효율을 제고하고 여기서 절약되는 豫算을 생산적인 시설투자(예; 보건소 시설 및 인력보강, 지역사회병원 설립 등)로 전환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그런데 保險料補助方式으로의 전환은 현행 조합별 보조방식에서 個人別 補助方式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는데 保險料산정의 기초가 소득수준이라는 객관적 근거가 확립된다면 가능할 것이나 현재 소득에 대한 파악율이나 파악방법이 조합별로, 개인별로 차이가 커므로 실행하기에 많은 난점이 있을 것이다. 또한 전문직이나 부농에 대한 국고지원의 중단은 타당한 논리이지만 保險料補助方式으로 전환되어야 가능할 것이며, 현행 조합에 대한 국고지원하에서는 어느 범위의 專門職과 富農을 제외할 것인지에 대한 기술상의 난점이 많을 것이다.

第 2節 國庫支援의 外國事例

1. 日 本

日本의 醫療保險은 크게 被傭者保險과 自營者保險으로 구분되며, 우

16) 권순원(1993: 63)은 보험료를 全額自負擔하는 가입자의 選定方法으로서 비업무용 자가용 승용차 소유세대와 1인당 전기료를 많이 지출하는 세대를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자가용보유가 소득수준의 결정적 기준이 되기 어렵고, 전기료사용이 소비수준을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지만 그 기준을 설정하기가 모호하여, 계층구분의 형평적 문제와 더불어 행정적으로 실행하기에 난점이 많다고 생각된다.

리의 地域醫療保險에 해당되는 自營者保險('國民健康保險': 이하 '국보'라 칭함)은 시정촌국보와 조합국보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조합국보는 동종의 사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300인이상으로 조직되며 도도부현지사의 인가에 의해 설립된다. 현재 조합국보를 설립하고 있는 업종으로는 의사, 치과의사, 약사, 식품판매업, 토목건축업, 이·미용업, 목욕업, 변호사 등이 있다. 조합국보와 피용자보험에서 제외되는 대부분이 시정촌국보의 적용대상이 된다.

한편 1984년에 退職者醫療制度가 창설되어 시정촌국보 피보험자(노인보건법에 의한 의료수혜대상자 제외)중 피용자 노령(퇴직)연금수급권자가 退職者醫療制度의 피보험자로 되고 그 피부양자도 제도속에서 적용된다.[17] 日本의 地域醫療保險에 해당하는 國民健康保險에 대한 國庫補助金의 내역은 〈表 3-1〉에 정리되어 있다.

〈表 3-1〉 日本의 地域醫療保險('國民健康保險')의 國庫補助金 種類 및 內容

종 류	시 정 촌 국 보	조 합 국 보
요양급여비등 부담금	다음 (1), (2)의 합산액의 40% (1)조합부담 요양급여액, 입원시 식사요양비, 특정요양비, 요양비, 방문간호요양비, 특별요양비, 이송비 및 고액요양비(단, 여기에서 보험기반안정제도에 의한 시정촌 이월금의 1/2은 공제) (2)노인보건의료비 갹출금	요양급여비의 32% 단, 재정상태에 따라 15%까지 증액

資料: 日本 厚生統計協會, 『保險と年金の動向』, 제41권 제14호, 1994. 11.
醫療保險管理公團, 『外國의 醫療保障動向』, 1993. 11.

17) 원래 노령퇴직자는 퇴직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의료수요는 높지만 급여수준이 낮게 되며, 또한 의료비부담이 주로 국고와 타국보가입자, 즉 자영자, 농어민 등에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해 1984년 10월부터 퇴직자의료제도를 실시·운영하고 있다. 퇴직자의료제도의 대상자는 피용자연금수급권자(통산노령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가입기간이 20년이상 또는 40세이후 10년이상인 자) 및 피부양자임.

〈表 3-1〉 계속

종 류	시 정 촌 국 보	조 합 국 보
재정조정 교부금	상기 (1), (2)의 합산액의 10%와 보험기반안정제도에 의한 시정촌이월금의 1/4을 합산하여 조합의 재정력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 두가지 형태로 교부: a)보통조정교부금: 보험료수입이 급여비에 미달될 경우 b)특별조정교부금: 재해, 기타 특별사정, 직영진료시설 설치 및 정비확충 보조	-
요양급여비등 보조금	다음 (1), (2)의 합산액의 32% (1)요양급여비중 일부부담금, 입원시식사요양비, 특정요양비, 요양비, 방문간호요양비, 특별요양비, 이송비 및 고액요양비 (2)노인보건의료비 갹출금 단, (1)+(2)의 15%범위내에서 조합별 재정력에 따라 증액 가능	-
보험기반안정 부담금(1988)	보험료경감액의 50%, 도도부현 및 시정촌이 각각 25% 부담 (단, 1993, 94년에는 잠정적으로 정액부담하였음)	-
조산비등 보조금(1992)	출산건당 지급기준액중 일정분: 30만엔이상이면 7만5천엔, 30만엔미만이면 7만5천엔이내 소정액	좌동
사무비 부담금	피보험자1인당 소요비용 기준: 1992년 직원급여, 1993년 임금, 위탁료등, 1994년 광열수도비, 소모품비 등을 포함	-
국보단체 연합회등 보조금	진료보수심사·지불의 적정성, 신속성 도모를 위한 필요경비	-
지도감사 위탁비	보험자, 요양취급기관, 국보의에 대한 지도감사, 국고보조금 적정사용에 대한 지도감사를 도도부현지사에 위탁할 때 소요되는 비용 보조	-
국보특별 대책비 보조 (1992)	국보사업의 원활, 적정한 운영 확보, 1993년에는 보건시설사업 확충, 소규모보험자대책 강화 등에 보조	-

日本의 國庫補助金의 급여지출에 대한 비중은 〈表 3-2〉와 같다. 國庫補助豫算의 보험자부담의 급여비에 대한 비중이 60%를 상회하고 있으며, 일부부담을 포함한 전체급여비에 대해서는 44%를 상회하고 있다. 총지출에 대한 비중은 38%를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國庫補助金의 지원규모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表 3-2〉 日本 地域醫療保險의 國庫補助金 對 給與支出比重

(단위: %)

年度	국고보조예산 대 지출(결산)비	국고보조예산 대 요양비 (보험자부담+일부부담)	국고보조예산 대 요양비(보험자부담)
1990	39.8	47.7	65.9
1991	39.5	46.8	64.5
1992	37.7	43.9	60.5

資料: 日本 厚生統計協會, 『保險と年金の動向』, 제41권 제14호, 1994. 11.

日本의 地域醫療保險에 대한 國庫補助는 우리나라와 기본적으로 유사한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보조금의 種類가 다양하고 종류별로 구체적인 목적을 띠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의깊게 살펴보아야 될 점을 몇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일본의 지역의료보험은 자영자를 대상으로 하되, 의사, 변호사 등 特殊職種에 대해서는 '조합국보'로서 분리운영하고 또한 '시정촌국보'에 비해 국고부담금액이 작고, 지원항목도 단순하다. 즉, 소득수준이 비교적 높은 특수직종을 제외한 농어민 등 자영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집중 보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조합내에 여러 職種의 自營者가 함께 가입되어 있으므로 組合內에서 고소득자영자로부터 저소득자영자에게로 再分配가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국고보조가 대상자의 所得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不合理한 점이 있다.

둘째, 일본은 退職者醫療制度에 의해 老齡年金受給權을 가지고 퇴직한 被傭者를 '시정촌국보'에서 분리하고 있다. 이는 시정촌조합이 피보험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재정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피용자가 지역조합의 피보험자로 되는 경우 지역조합의 재정적 불안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현행 醫療保險法은 직장 및 공교조합의 被扶養者範圍를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어 停

年退職者의 대부분이 직장 및 공교조합의 피부양자로 흡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본의 경우 노령연금수급권을 가진 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와 같이 年金制度의 역사가 짧은 나라에서는 일본과 같은 기준을 단기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게 된다.

셋째, 일본의 경우 補助金支援基準이 주로 給與支出중 일정비율 및 보험료수입이 급여지출에 未達되는 부분에 대한 補助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여러가지 목적의 명목으로 多樣하게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인당 定額支援 중심의 간소한 방식에 所得課標 및 老人扶養比에 의한 일부 差等支援方式을 附加하고 있다. 일본의 방식은 급여지출에 대한 統制나 保險料의 效率的 徵收에 의한 財政正常化 노력을 유인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지나치게 많은 명목의 보조금으로 運營의 硬直性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1인당 정액중심의 지원방식으로는 조합별 재정력격차를 補正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향후 차등배분을 더욱 개선시켜나가야 할 것이며, 일본과 같이 세분화된 명목의 보조금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包括的 補助金으로 지원하되 재정안정노력을 유인하기 위한 組合經營의 自律性과 評價體系를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2. 社會保險方式의 西歐諸國

西歐諸國중 우리나라와 같이 醫療保險을 社會保險方式에 의해 운영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國庫負擔金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表 3-2〉에서 보듯 대체로 國庫補助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醫療需要에 비해 負擔能力이 특히 낮은 집단을 대상으로 일부 보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自營者에 대한 포괄적이고 일률적인 국고지원은 향후 장기적으로 止揚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대부분의 국가는 조합방식으로 운영되

고 있으며, 재정운영을 組合自律에 맡겨두며 國家의 介入은 制限的인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의료보험도 全國民을 대상으로 하는 社會保險制度로서 국민적 연대를 위해 일정부분의 國庫補助를 허용하고 있으며, 국고보조의 분야와 정도는 국가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獨逸의 경우 出産과 관련하여 企業의 負擔이 되는 부분을 보조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女性雇傭 增進을 위해 출산휴가시의 임금을 의료보험에서 現金給與로서 補充하는 방안을 세계화추진위원회의에서 검토하는 것과 그 脈을 같이 하고 있다. 다만 그 부담을 국고부담없이 전체피보험자의 보험료로 충당하려는 것이 논의의 대상이 될 것이다. 또한 실업자, 직업훈련자, 광부, 장애자, 노령퇴직자, 학생 등 의료보험 적용에서 疏外될 可能性이 있는 具體的인 對象에 대해 國庫補助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금제도에서는 연금수급자의 보험급여에 대해 보조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보험으로부터의 離脫防止와 社會保險制度간 連繫를 위한 財政補助가 세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계층이 1995년 약 450만명으로 추정(의료보험연합회 추정)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자격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농민에 대한 보조의 일환으로 농산물에 대한 조세를 보조하고 있는데, 그 재원이 자동차보험료와 의약품광고·알콜·담배에 대한 조세로 마련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國庫補助의 分野와 크기는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각국의 역사적 배경과 국민적 정서에 따라 유형을 달리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醫療保險制度를 비롯한 社會保障制度의 歷史가 짧기 때문에 선진국의 예를 그대로 답습할 필요는 없다. 현재는 제도가 서서히 定着하여 가는 段階에 놓여 있으므로 단계별로 재정이 취약한

부분 및 계층에 탄력적으로 보조하여야 할 것이다.

〈表 3-3〉 社會保險方式 中心의 西歐諸國의 國庫補助金 支援 現況

국 가	국고보조 및 재원
독 일	원칙적으로 國庫補助 없음 出産手當, 出産休暇에 대한 補助, 失業者 및 職業訓練者에 대한 給與, 鑛夫,障碍者疾病保險料 일부, 農業者疾病保險의 老齡退職者(연금수급자 질병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보험료 전액, 학생질병보험료 일부에 대한 보조. * 연금제도는 연금수급자의 의료급여에 대해 기여함.
프 랑 스	원칙적으로 국고보조 없음 단, 農業經營者保險에 대해 農産物에 대한 目的稅 및 一般租稅 중 일부 보조 병원건설과 특정의료·사회서비스에 대한 비용 일부 재원: 자동차보험료에 대해 12% 부과, 의약품광고·알콜·담배에 대한 조세
스 웨 덴	保健서비스의 20%, 健康保險의 15% * 입원은 보건서비스방식, 외래는 사회보험방식임.
네덜란드	任意加入 低所得者, 年金受給者에 대한 보조, 先天性障碍者 費用 전액

資料: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1993*, May 1994.
醫療保險管理公團, 『外國의 醫療保障動向』, 1993. 11.

第 4章 醫療保障改革委員會의 改革案과 評價

第 1節 醫療保障改革委員會의 改革案

政府는 醫療保障에 대한 개혁작업을 1994년 1~6월 동안 각계의 대표들로 醫療保障改革委員會를 구성하여 추진하였다. 地域醫療保險의 國庫負擔金을 피보험자당 정액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던 國庫支援方式을 개선하여 부담능력의 격차와 위험요인의 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差等支援方式으로 段階的으로 전환하며, 실제 재정취약지역에 더 많은 국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差等配分指標를 개선하려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醫療保障改革委員會(1994)는 國庫負擔金중 일정율을 '財政調整交付金'으로 별도 편성하여 財政脆弱組合을 중점 지원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 短期對策으로서 현재 保險給與費 國庫負擔金의 3.3%를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1995년에 급여비 國庫負擔金의 10%, 1996년에 15%, 1997년에 20% 수준까지 상향 조정한다. 差等配分기준중 현재의 노인인구비율을 老人扶養指數(경제활동인구 대비 노인인구비)로 대체함으로서 경제활동력과 노인인구를 함께 반영하여 재정이전효과가 커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것이다.[18] 長期對策으로는 醫療保險의 綜合電算網 構築 및 稅制改善 등의 여건변화와 병행하여 地域組合間 부담능력을 반영하는 변수로서 1인당 평균과표에 所得 외에 財産까지 고려하고, 지역간 醫療施設의 分布度 등 의료접근도와 위험요인 등을 전반적

18) 1994년의 의료보장개혁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1995년부터 노인부양비를 차등배분지표로서 현재 활용하고 있다.

으로 반영할 수 있는 가중치에 의한 綜合配分指標를 개발하여 완전한 差等支援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19]

그런데 差等支援금의 급여비에 대한 비중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생각된다. 행정의 漸進主義(incrementalism)성향에 따라 충격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인 상향조정을 제안하고 있으나 향후 WTO體制의 출범에 따라 농촌인구가 빠른 속도로 감소함과 동시에 부담능력도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國庫負擔金의 短期的이고 强力한 差等配分이 요망된다. 또한 農業人口減少는 국고지원규모의 자연적 감축요인이 되며, 농업인구당 生産性은 장기적으로 향상되어 國庫支援의 當爲性이 줄어들 것이다.

또한 '財政調整交付金'의 과표크기와 노인부양지수에 대한 配分比重이 현재 7:3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第 2節 改革案에 따른 國庫配分과 評價

醫療保障改革委員會의 개혁안에 따라 '財政調整交付金'을 段階的으로 保險給與費의 10%, 15%, 20%로 상향 조정하는 경우의 조합별 財政收支 改善效果를 實驗(simulation)해 보기로 한다. 여기서는 政策的 效果를 보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향후 연도별 피보험자수, 소득상승, 老人扶養費 등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1993년 현재의 각 조합별 자료에 근거하여 差等配分强化에 따른 재정수지변화를 실험한다.

---

19) 筆者는 醫療保障改革委員會(1994. 1.~1994. 6.)의 醫療保險財政分科 實務委員으로 참여하여 差等配分基準으로서 노인인구비를 老人扶養比로 대체하고, 醫療供給資源의 地域間 分布를 새로운 배분요소로 제안하여 前者가 채택되었다. 그리고 향후 綜合所得稅制가 실시되면 소득과표에 財産所得을 포함한 모든 소득이 자연히 포착되리라고 생각한다.

〈表 4-1〉 은 기존의 國庫負擔金 배분에 의한 재정상태와 差等配分 확대에 따른 재정상태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 1993년 현행 國庫負擔金 配分의 對 保險給與支出比重은 전체 조합평균 34.3% (표준편차 3.2%)를 기준으로 각분위에 걸쳐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國庫負擔金을 포함한 收支率은 3분위까지는 100% 이하이나 그 이상의 분위에서는 100% 를 상회하고 있다.

〈表 4-1〉 醫療保障改革委員會의 改革案에 의한 國庫配分結果

		기존 재정상태 ('93)		차등배분비중(%)					
				1995(10%)		1996(15%)		1997(20%)	
분위	기준 수지율	수지율	국고 보조율	수지율	국고 보조율	수지율	국고 보조율	수지율	국고 보조율
1	87.1	87.6	32.4	91.3	36.1	93.4	38.2	95.5	40.3
2	93.9	95.4	34.9	97.6	37.1	99.4	38.9	101.3	40.7
3	96.6	97.9	34.4	99.6	36.1	101.2	37.7	102.7	39.2
4	98.6	100.1	34.8	101.1	35.8	102.4	37.1	103.6	38.3
5	101.2	102.6	34.0	103.6	35.0	104.8	36.2	106.1	37.4
6	104.3	105.0	33.9	105.9	34.7	106.7	35.5	107.5	36.3
7	106.9	107.6	34.3	108.0	34.8	108.6	35.4	109.2	35.9
8	109.6	109.9	34.1	109.4	33.5	109.3	33.4	109.2	33.4
9	112.5	113.0	34.2	112.2	33.3	112.0	33.1	111.8	33.0
10	115.1	115.5	34.1	114.2	32.8	113.8	32.4	113.4	32.0
11	118.8	119.5	35.2	117.8	33.6	117.3	33.0	116.8	32.5
12	126.6	127.5	35.6	125.4	33.6	124.8	33.0	124.2	32.4
平 均	106.1	107.0	34.3	107.3	34.7	108.0	35.3	108.6	35.9
標準偏差	11.3	11.6	3.2	9.7	3.353	9.04	4.4	8.55	5.5
變異係數	0.106	0.109	0.093	0.090	0.097	0.084	0.124	0.079	0.153

註: 1) 각 분위별로 22개 조합이 포함된다. 단, 12분위에는 24개 조합임.
2) 기준수지율은 國庫負擔金을 1인당 정액기준으로 조합별로 배분하였을 경우임.
3) 國庫補助率은 國庫負擔金 對 保險給與費 比임.
4) 差等配分은 保險給與費 國庫負擔金의 일정분(10%, 15%, 20%)에 해당하는 부분을 조합별 所得課標와 老人扶養比 기준에 따라 배분한 것임.

差等配分의 比重이 강화될수록 재정력이 취약한 하위분위에 속한

조합군의 國庫補助率이 상승하고 따라서 수지율도 개선됨을 볼 수 있다. 반면 財政力이 양호한 상위분위 조합군의 國庫補助率 하락으로 인해 수지율이 악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組合 全體의 國庫補助率과 收支率이 평균적으로 改善되고 있는데, 이는 재정력에 따른 差等配分이 얼마나 效率的인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주로 下位分位의 財政狀態(國庫補助率과 수지율)의 현저한 개선으로부터 기인한다. 즉 國庫補助의 限界的 增加分은 保險給與費 규모가 작은 하위분위 조합의 경우 급여비에 대한 비율로서의 國庫負擔金 및 수입(保險料수입+國庫負擔金)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반면 上位分位 조합의 경우 國庫補助의 限界的 減少分은 保險給與費 규모가 크기 때문에 國庫補助率 및 수지율상의 하락은 그다지 크지 않게 된다.

이러한 差等配分은 國庫負擔金 豫算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아니라 조합 재정력에 따른 상대적 격차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형평성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할 것이다.

差等配分에 따른 조합간 財政狀態에 대한 변이계수를 보면, 國庫補助率의 경우 그 차등폭이 차등강화에 따라 점차 커지고 있다. 수지율의 경우 차등폭 확대에 따라 변이계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 평등분포로 접근하고 있다.

한편 國庫差等配分比重을 더욱 확대하는 경우 즉 保險給與費 國庫負擔金의 50%, 100%를 대상으로 差等配分하는 경우의 국고배분결과는 〈表 4-2〉와 같다. 평균수지율은 계속 호전되면서 수지율이 모든 분위에 걸쳐서 흑자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하위분위에 있어서 완전차등(100%)배분 결과 상위분위에서의 수지율을 오히려 능가하여 분위간 收支率이 逆轉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國庫補助率의 경우 50% 差等配分시에는 1분위의 52.9%에서 12분위의 28.8%로 분포하고 있으며,

100% 差等配分시에는 1분위의 73.9%에서 12분위의 22.7%로 분포하고 있다.

〈表 4-2〉 國庫差等配分의 擴大(50%, 100%)에 따른 國庫配分結果

		차등배분비중(%)			
		50% 차등		100%차등	
분 위	기준 수지율	수지율	국고보조율	수지율	국고보조율
1	87.1	108.1	52.9	129.1	73.9
2	93.9	112.3	51.8	130.7	70.2
3	96.5	112.1	48.7	127.8	64.3
4	98.6	111.3	45.9	123.9	58.6
5	101.2	113.4	44.7	125.6	57.0
6	104.3	112.2	41.1	120.2	49.0
7	106.9	112.8	39.5	118.8	45.5
8	109.6	108.7	32.8	107.8	31.9
9	112.5	110.8	32.0	109.1	30.3
10	115.1	110.9	29.5	106.8	25.3
11	118.8	113.7	29.4	108.5	24.3
12	126.6	120.6	28.8	114.6	22.7
平 均	106.1	112.3	39.7	118.55	45.9
標準偏差	11.3	9.4	12.8	19.3	25.4
變異係數	0.106	0.084	0.324	0.163	0.554

註: 〈表 4-1〉의 註 참조.

수지율의 변이계수가 10%에서 20%의 差等配分時에는 계속 하락하여 분위간 수지율격차가 점차 줄어들었으나, 50%, 100% 差等配分시에는 계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收支率 隔差가 분위간에 점차 擴大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原因은 國庫負擔金의 差等配分의 격차 심화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다. 國庫負擔金의 과도한 差等配分은 조합간의 收支率隔差를 深化시키게 되는 데 差等配分의 요소가 客觀的인 財政能力을 완전히 측정하지 못하는 한 組合間의 不衡平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 조합이 스스로 經營效率化를 위한

운영을 포기하게 될 지도 모른다. 즉 재정력에 따른 형평한 분배를 목적으로 한 국고배분이 오히려 불형평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 효율성을 저해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 章에서는 國庫差等配分의 要素들에 대한 妥當性을 검토하고, 差等配分요소를 綜合的인 財政力指數로 구성하여 差等配分의 확대에 따른 完全한 差等配分의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조합간의 불공평한 배분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改善方案을 모색하기로 한다.

第 5 章 國庫支援方式의 改善方案

第 1 節 國庫의 組合間 差等配分指標의 選定

본 절에서는 國庫負擔金을 地域組合의 財政力에 따라 差等하여 配分함에 있어서 地域組合의 재정력을 측정할 수 있는 客觀的인 指標를 選定하는 문제를 논의한다. 조합의 재정안정을 위협하는 危險要素로서 조합방식에 의해 운영하는 유럽각국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은 所得, 年齡, 性別, 被扶養者數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위험요인들은 國庫負擔金의 차등요인이라기 보다는 조합간 財政調整을 위한 지표로서 사용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농어민 등 자영자에 대한 國庫補助가 거의 없고 조합간(혹은 기금간)에 발생하는 재정적 위험격차는 조합간의 共同負擔에 의한 財政調整事業으로 대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高額診療費에 이어 1995년부터 老人醫療費에 대해 조합간의 재정조정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그 事業範圍를 擴大할 계획에 있다. 그런데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이 시행된지 아직 6년여밖에 되지 않았고 제도초기부터 지역자영자조합에 대해 국고지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WTO체제의 출범 등 농어촌에 미치는 경제적 타격 등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불가결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고액 및 노인의료비 재정조정사업만으로는 地域組合의 재정적 불안정을 해결하기에는 限界가 있으므로 국고의 直接的인 支援의 必要性이 요청된다.

본고에서 고려하는 差等配分指標로서는 1인당 所得課標, 老人扶養比, 1인당 給與費, 扶養率(세대당 세대원수), 醫院의 分布 등 5가지를

선택하였다. 먼저 1인당 所得課標와 老人扶養比는 현재 差等配分指標로서 활용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3가지 지표를 고려하여 지표로서의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1인당 급여비는 직접적인 醫療需要를 나타내는 대체적인 지표로서 地域組合別 疾病發生危險 혹은 醫療利用行態에 따라 나타나는 醫療利用의 크기이다. 日本의 경우 시정촌조합에 대해 급여비의 약 40%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 급여비는 1인당所得課標나 老人扶養比 등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조합의 재정상태를 補完하는 指標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급여비에 대해 直接 補助하는 정책은 의료수요를 助長할 수 있는 短點이 있으므로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地域組合 자체의 診療費審査權이 없어 의료이용량의 統制에 거의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급여비는 地域組合의 재정적 위험요인으로서의 어느 정도 객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 扶養率(世帶當 平均世帶員數)은 地域組合別로 世帶當 扶養해야 할 世帶員數를 나타내며, 세대원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醫療需要가 비례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진국에서도 조합의 財政的 危險要因으로 피부양자수를 고려하고 있으며, 세대원수가 많을수록 평균적으로 의료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부담능력은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醫院의 分布를 지표로 고려하는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醫院分布가 稀少한 지역은 풍부한 지역과 비교하여 보험료 1원당 받는 보험서비스의 質이 떨어지고 醫療接近度도 낮아지는 給與報償의 측면 둘째, 醫療供給市場의 市場原理上 醫療機關의 분포가 희소한 이유는 의료비부담능력이 낮기 때문에 의원의 進入이 저조하다는 부담능력의 측면을 들 수 있다. 즉, 醫院의 分布가 많은 地域組合은 부담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같은 保險料를 지불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더 많은 便益을 누리게 되므로 費

用/便益과 負擔能力 등의 측면에서 국고지원의 당위성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國庫支援의 差等을 위한 제요인들이 과연 얼마나 조합의 財政力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20] 조합의 재정력을 측정하는 변수들의 선택을 위해 본고에서는 回歸分析을 이용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조합의 재정력을 나타내는 從屬變數로서의 대표적 지표로서는 조합의 財政自立度 즉, 자체 保險料收入 對 保險給與 支出比를 선택하였다. 이 지표를 선택한 理由는 첫째, 保險料가 負擔能力과 比例한다고 볼 수 있으며 둘째, 재정력은 保險料 뿐아니라 保險給與도 함께 고려한 상대적 지표가 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앞서 고려한 다섯가지의 外生變數들이 조합의 재정자립도에 어느 정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5가지 지표중 統計的으로 有意하다고 판단되는 지표를 선택하고, 그 선택된 지표를 중심으로 綜合財政力指數를 산정하는 것이 전체적인 분석과정이다.

한편 국고배분의 가장 쉬운 방법으로 財政自立度를 재정력을 측정할 수 있는 대표치로 간주하여 이에 따라 國庫를 差等配分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에 의한다면 조합은 財政健全性 확보를 위한 自立經營努力을 게을리할 것이므로 바람직한 지표가 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從屬變數로서의 財政自立度 자체가 組合의 財政力을 代表하는 變數로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의 限界點을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재정자립도를 구성하는 保險料收入이 조합의 재정력(즉, 부담능력)을 정확

20) 조합의 財政力 자체를 측정할 수 있다면 그 재정력에 따라 배분하면 간단할 것이다. 問題는 재정력을 대표하는 하나의 變數를 선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합의 재정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여러가지 外生的 變數들을 고려하여 그 타당성을 분석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물론 재정력을 측정하는 방법은 이외에도 많이 있을 수 있다.

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保險料수입은 기본保險料와 능력비례保險料로 구성되며, 기본保險料는 세대당 정액保險料와 세대원수에 비례한 정액保險料로 구성되며 이는 應益原則에 따른 것이다. 能力比例保險料는 綜合所得稅課稅標準, 財産稅課稅標準 및 自動車(자동차세 및 배기량) 등과 같은 應能原則에 따른 保險料로 구성된다. 따라서 保險料賦課方式이 受益者負擔原則을 부분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므로 負擔能力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能力比例保險料가 負擔能力을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지만, 所得 및 財産稅의 課稅資料가 아직 완전하지 못하고 일부 申告所得/財産에 의존하고 있어 組合의 財政力測定基準으로서 완벽하지 못하다. 그러나 부담능력에 따른 형평과세의 원칙은 모든 조세행정에 있어서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소득 및 재산과세 자료의 불완전성은 地域醫療保險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組合의 財政力을 評價하고 그 財政力에 따라 國庫負擔金이 配分되어야 한다면, 不完全한 財政力評價에 의해서라도 配分하는 것이 보다 더 큰 衡平을 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所得把握率이 낮고 특히 농촌주민의 경우 負擔能力을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財産(토지, 건물, 자동차 등)을 부담능력을 측정하는 代替手段으로서 사용하고 있다.

이들 5가지 危險要素들은 비교적 주어진 外生變數로서 조합이 통제하기 어려운 요소들로 판단된다. 물론 所得, 財産의 경우 객관적인 파악이 어렵고 被保險者들이 露出을 꺼려하려는 경향('tax evasion')이 있으므로 외생변수로 취급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組合經營的 立場에서도 소득, 재산규모를 축소함으로서 國庫負擔金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으므로 被保險者와 保險者의 利害가 일치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金融 및 土地實名制가 정착됨과 함께 소

득 및 재산관련 조세행정이 확립될 것으로 예상하여 불완전한 형태나마 財政力測定의 準據로서 사용할 외생변수로서 선택할 실익이 크다고 본다.

그러면 이들 5가지 要因들의 組合間 分布狀態는 〈表 5-1〉과 같다.

〈表 5-1〉 地域醫療保險의 財政自立度와 財政力評價指標의 分布

		재 정 자립도	재정력 평가지표				
			소 득 과 표	노 인 부양비	의원수	부양율	급여비
1992	최 대 값	106.0	902,512	30.0	2.895	3.997	6,436
	최 소 값	48.4	47,135	3.9	0.000	2.746	3,658
	평 균	76.0	202,076	10.4	0.494	3.409	4,669
	표준편차	11.9	119,341	4.5	0.367	0.212	368
	변이계수	0.157	0.591	0.43	0.743	0.062	0.079
1993	최 대 값	128.6	1,072,577	20.71	2.564	3.810	6,308
	최 소 값	46.3	54,719	4.09	0.000	2.680	4,463
	평 균	72.6	250,723	10.50	0.498	3.321	5,436
	표준편차	10.9	139,617	4.50	0.346	0.191	360
	변이계수	0.150	0.557	0.428	0.694	0.057	0.066

註: 1) 자립도는 보험료수입/급여지출비(%), 소득과표는 1인당 월평균 종합소득세과세표준(원), 老人扶養比는 65세 이상/20~64세 인구비(%), 의원수는 인구 천명당 의원수, 부양률은 세대당평균 세대원수, 급여비는 1인당평균 월급여비(원)임.

2) 자립도가 100% 이상인 조합수는 1992년 5개, 1993년 3개(강남구, 인천 중구, 대전 중구)

1992년의 경우 財政自立度는 최저 48%에서 최대 106%로 분포되어 있으며 평균은 76%를 나타내고 있으며, 1993년의 경우 최저 46%, 최고 129%이나 평균은 약 73%로서 자립도가 평균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따라서 自立度면에서만 파악할 때 國庫支援의 必要性을 보여주고 있다. 1인당 所得課標의 경우 평균이 24% 인상되어 1인당 경상GNP 증가율 9.5%, 근로자 명목임금상승율 12.2%[21]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자영자의 所得增加 혹은 所得把握率의 향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醫院分布의 경우 평균적으로 약간 향상되고 있으며, 부양률은 약간 감소하고 있다. 급여비는 평균 16.4% 상승하고 있다. 한편 1인당 所得課標, 老人扶養比, 특히 醫院數의 變異는 자립도의 변이에 비해 큰 폭을 보이고 있으며, 부양률이나 급여비는 비교적 작은 변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모든 지표상에 있어서 1993년은 1992년에 비해 그 변이가 감소하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地域間 指標의 平準化경향을 2개년에 걸친 자료만 가지고는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국고지원과 관련하여 조합별 保險財政상태를 나타내는 財政指標와 財政力評價의 外生變數로서의 다섯 指標를 12분위별로 분류하여 나타낸 결과는 〈表 5-2〉 및 〈表 5-3〉과 같다. 전체적으로 재정자립도가 3.4%포인트 인하된 상황에서 더우기 國庫補助率은 4.6%포인트 인하됨으로서 수지율은 〈表 2-13〉, 〈表 2-14〉에서 보듯이 114%('92년)에서 107%('93년)로 7%포인트나 하락하였다. 財政力評價指標에서 市比重은 '92년에 비해 '93년에는 도시, 농촌간의 재정력구분이 보다 뚜렷해지고 있다. 所得課標의 경우 分位間 隔差가 분명하게 나타나 소득수준이 財政力隔差의 主要要因임을 알 수 있다. 老人扶養比의 경우도 재정력이 취약한 하위분위일수록 일관성있게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扶養率의 경우 대체적으로 하위분위에서 보다 높은 부양율을 보이는 경향을 시현하고 있어 농촌지역의 세대당 가구원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月給與費는 분위간에 큰 편차없이 분포하고 있으나, '92년과 '93년간 분위별로 급여비를 비교하면 일관성이 없어 財政狀態와 醫療需要行態간에 安定的인 관계가 정착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다만, 하위분위에서 오히려 높은 급여비수준을 보여 선진국에서의 소득수준과

---

21) 자료는 각각 한국은행, 『국민계정』 및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에서 발췌.

급여비가 비례하는 일반적 경향과는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醫院分布의 경우 상위분위일수록 높아 재정력(혹은 소득수준)이 양호할수록 醫院의 進入이 많아지는 현상이 검증되고 있다.

〈表 5-2〉 國庫支援關聯 保險財政 및 財政力評價指標(1992)

(단위: %, 천원)

분위	기준수지율	재정자립도	국고보조율	시비중	소득과표	노인부양비	부양률	급여비	의원분포
1	92.6	56.5	37.8	0.045	95.7	14.6	3.571	4.864	0.263
2	98.9	62.2	37.4	0.136	126.7	13.2	3.520	4.773	0.320
3	102.6	65.4	38.7	0.091	116.0	14.3	3.524	4.681	0.261
4	105.3	68.5	37.4	0.136	130.5	13.4	3.505	4.737	0.293
5	107.5	70.6	37.4	0.273	144.8	13.6	3.498	4.719	0.361
6	110.6	73.2	38.5	0.364	165.3	11.3	3.497	4.659	0.409
7	114.4	77.0	38.4	0.409	177.5	10.5	3.416	4.670	0.418
8	118.9	82.0	37.4	0.818	245.8	7.4	3.303	4.704	0.550
9	121.5	84.0	37.2	0.909	287.2	6.6	3.262	4.646	0.715
10	124.9	86.2	38.5	0.773	265.3	7.3	3.298	4.500	0.716
11	127.5	89.2	39.0	0.909	298.3	6.5	3.260	5.539	0.847
12	133.9	95.6	38.6	0.958	357.8	6.5	3.268	4.548	0.757
平均	113.4	76.0	38.0	-	202.1	10.4	3.409	4.669	0.494
標準偏差	12.2	11.9	3.5	-	119.3	4.5	0.212	0.368	0.367
變異係數	0.108	0.157	0.092	-	0.591	0.932	0.062	0.079	0.743

註: 1) 기준수지율은 국고지원이 조합규모에 따른 1인당 정액으로 이루어질 때의 (보험료수입+국고부담금)/보험급여비(%)이며, 분위분류의 기준은 기준수지율을 중심으로 하였음.

2) 266개 각 지역조합별 보험재정 및 재정력평가지표는 〈附表 1〉 참조.

〈表 5-3〉 國庫支援關聯 保險財政 및 財政力評價指標(1993)

(단위: %, 천원)

분 위	기 준 수지율	재 정 자립도	국 고 보조율	시비중	소 득 과 표	노 인 부양비	부양율	급여비	의 원 분 포
1	87.1	55.3	31.9	0.000	116.9	15.6	3.419	5.693	0.105
2	93.9	60.5	33.4	0.000	128.3	15.2	3.468	5.458	0.094
3	96.5	63.5	33.0	0.045	151.0	14.3	3.452	5.512	0.090
4	98.6	65.3	33.3	0.136	170.9	13.2	3.414	5.457	0.164
5	101.2	68.6	32.5	0.227	180.5	13.0	3.357	5.585	0.182
6	104.3	71.2	33.1	0.364	215.6	11.1	3.362	5.484	0.213
7	106.9	73.3	33.6	0.500	227.9	10.0	3.366	5.403	0.294
8	109.6	75.9	33.7	0.818	309.3	7.8	3.299	5.392	0.850
9	112.5	78.9	33.7	0.864	321.5	7.3	3.187	5.398	0.875
10	115.1	81.4	33.6	0.864	356.3	6.7	3.183	5.385	1.037
11	118.8	84.3	34.6	1.000	374.9	6.2	3.175	5.250	0.845
12	126.6	91.9	34.8	1.000	438.7	6.1	3.187	5.229	1.137
平 均	106.1	72.6	33.4	-	250.7	10.5	3.321	5.436	0.498
標準偏差	11.3	10.9	2.2	-	139.6	4.5	0.191	0.360	0.346
變異係數	0.106	0.150	0.067	-	0.557	0.428	0.057	0.066	0.694

註: 1) 〈表 5-2〉 참조.

2) 266개 각 지역조합별 보험재정 및 재정력 평가지표는 〈附表 1〉 참조.

第 2節 組合의 綜合財政力指數의 開發과 國庫配分方式

제1절에서 地域組合의 보험재정 및 재정력평가지표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첫째, 이러한 재정력평가지표에 대해서 國庫負擔金의 差等配分指標로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정한 지표를 선정한다. 둘째, 선정된 지표들을 중심으로 해당조합의 종합적인 재정력을 평가할 수 있는 종합재정력지수를 개발한다. 셋째, 종합재정력지수를 구성하는 각지표들간의 적정한 상대적 비중을 선택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전체 급여비 國庫負擔金豫算중 差等配分을 위한 적정비중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差等配分指標의 妥當性 檢討

이제 國庫負擔金의 配分要素로서의 이들 다섯가지 지표에 대한 妥當性을 회귀분석을 통하여 檢討해 보기로 한다. 이에 앞서 財政自立度와 5가지 指標間의 相關係數表(correlation coefficient table)를 보기로 한다.

〈表 5-4〉 財政力評價指標間의 相關係數(1992)

	자립도	소득	노인부양비	급여비	부양율	의원분포
자 립 도	1.000	0.743	-0.689	-0.017	-0.569	0.583
소 득	0.743	1.000	-0.755	0.125	-0.606	0.751
노인부양비	-0.689	-0.755	1.000	-0.029	0.553	-0.634
급 여 비	-0.017	0.125	-0.029	1.000	-0.094	0.116
부 양 율	-0.569	-0.606	0.553	-0.094	1.000	-0.515
의원분포	0.583	0.751	-0.634	0.116	-0.515	1.000

〈表 5-5〉 財政力評價指標間의 相關係數(1993)

	자립도	소득	노인부양비	급여비	부양율	의원분포
자 립 도	1.000	0.748	-0.720	-0.089	-0.525	0.645
소 득	0.748	1.000	-0.776	-0.042	-0.560	0.773
노인부양비	-0.720	-0.776	1.000	0.162	0.493	-0.653
급 여 비	-0.089	-0.042	0.162	1.000	-0.041	0.023
부 양 율	-0.525	-0.560	0.493	-0.041	1.000	-0.487
의원분포	0.645	0.773	-0.653	0.023	-0.487	1.000

〈表 5-4〉 및 〈表 5-5〉 에서 보듯이 예상했던 바와 같이 자립도는 所得과 正의, 老人扶養比와 負의, 給與費와 負의, 扶養率과 負의, 醫院分布와 正의 相關關係를 보이고 있다. 특히 소득과 老人扶養比의 경우 1992년, 1993년 모두 가장 높은 상관도를 나타내고 있는 점에 비추어 현행 差等配分指標로서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醫院分布와 부양율의 경우도 상당히 높은 상관도를 보여 재정력 평가지표로서의 가능

성이 크다. 급여비의 경우 1992년에 상관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1993년에 상관도가 대폭 상승하고 있어 주의깊이 관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소득, 老人扶養比, 醫院分布 3자간의 상관도가 높아 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소득과 급여비간은 1992년에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1993년에는 부의 상관관계로 역전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소득수준과 급여비가 비례적 관계로 형성되는 선진국의 경험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로서는 아직까지 의료수요가 잠재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소득수준 상승에 따른 의료이용이 안정된 행태를 보이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1인당 所得課標가 실질적인 소득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데에서도 비롯될 수 있을 것이다.

差等配分指標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回歸分析에 의한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서 각변수들의 단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변수들을 표준화하는 과정을 거쳐 분석하였다.[22]

1992년과 1993년 자료에 의한 분석결과는 〈表 5-6〉과 같다. 먼저 1992년 자료에 의해 5가지 지표에 의한 회귀분석결과는 모형전체로서의 통계적 유의성은 있으나 個別指標에 있어서 醫院分布는 유의하지 않았다. 醫院分布와 자립도간의 상관도는 상당히 높지만 회귀식내에서 醫院分布가 자립도에 미치는 통계적 유의성은 매우 미약하다. 醫院分布를 제외한 4지표에 의한 분석결과 모든 지표가 유의수준 5%하에서 유의하며 전체적인 모형의 유의성도 상승하고 있다. 그런데 부양율에 대한 계수는 -0.513에서 -0.153으로 절대치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한편 給與費의 계수가 그다지 크지 않고 유의수준 1%하에서는 유의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한 3지표에 의한 분석결과 전체적 유의도가 상승함과 함께 扶養率의 계수가 -0.418로서 다시 커지고 있다. 모형의

22) 표준화 방법은 <表 5-6>의 註 2) 참조.

변화에 따른 扶養率의 계수가 불안정하므로 소득과 老人扶養比 2지표만에 의한 분석결과는 전체적으로나 개별지표에 대해서나 모두 안정되고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현행 國庫支援政策下에서의 差等配分指標로서 두지표는 통계적으로도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해석된다. 한편 所得과 扶養率 양지표에 의한 분석결과는 소득과 노인부양비 2지표에 의한 분석결과에 비해 有意度면에서나 適合性(fitting)면에서 열등하게 나타나고 있다.

〈表 5-6〉 差等配分指標와 財政自立度間 回歸分析: 標準化된 回歸分析

	5요소		4요소		3요소		2요소		2요소	
	係數	t값	係數	t값	係數	t값	係數	t값	係數	t값
1992년										
所得	0.474	6.55*	0.476	7.55*	0.455	7.20*	0.519	8.65*	0.630	12.48*
老人扶養比	-0.247	-4.08*	-0.248	-4.13*	-0.264	-4.38*	-0.297	-4.94*		
給與費	-0.098	-2.51*	-0.098	-2.52*						
扶養率	-0.513	-3.09*	-0.153	-3.11*	-0.418	-2.98*			-0.187	-3.71*
醫院分布	0.003	0.06								
R-squared	0.613		0.613		0.604		0.590		0.575	
adj R-squ	0.607		0.609		0.601		0.589		0.573	
F value	103.4*		138.4*		200.3*		380.5*		356.9*	
1993년										
所得	0.353	4.74*			0.419	6.58*	0.476	7.79*		
老人扶養比	-0.308	-4.92*			-0.333	-5.48*	-0.351	-5.75*		
給與費	-0.032	-0.82								
扶養率	-0.122	-2.64*			-0.126	-2.73*				
醫院分布	0.112	1.84								
R-squared	0.625				0.619		0.609			
adj R-squ	0.619				0.617		0.607			
F value	108.7*				214.0*		410.6*			

註: 1) 소득은 조합별 1인당 평균과세표준, 老人扶養比는 조합별 65세 이상 인구/20~64세 인구비(%), 급여비는 조합 1인당평균 급여비, 부양률은 세대당 평균 세대원수, 醫院分布는 조합별 피보험자 천명당 의원수임.
2) 變數의 標準化方法은 (actual value-mean)/standard deviation 임.
3) *는 유의수준 5%하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따라서 1992년 자료에 의한 분석결과 差等配分指標로서 소득과 老人扶養比지표는 계수의 안정성이나 유의성면에서 타당한 지표라 생각된다. 그밖에 부양율과 給與費指標를 보조적인 지표로 사용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1993년 자료에 의한 분석결과는 1992년의 경우와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5지표에 의한 分析結果 급여비와 醫院分布에 대한 계수가 유의하지 못하다. 양변수를 제외한 3지표에 의한 분석결과는 유의하나 부양율에 대한 계수치가 낮아지는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다. 소득과 老人扶養比 양변수에 의한 分析結果는 1992년에 비해 유의도와 적합성 모두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양지표에 대한 계수치의 비중은 1992년 64:36에서 1993년 58:42로 변화하였다.

〈表 5-7〉은 差等配分指標가 財政自立度에 미치는 彈力性을 회귀분석에 의하여 계측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는 醫院分布의 경우 유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표준화된 회귀계수식에서의 부호와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給與費의 경우 1992년의 경우에는 유의한 지표였으나 1993년에는 유의하지 않는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다. 부양률의 경우는 유의도나 계수의 크기면에서 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부양율의 탄력성계수치가 지표들중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소득과 老人扶養比의 탄성치는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 양지표만에 의한 회귀식이 유의도면에서 우수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양자간의 탄성치비중이 1992년 69:31에서 1993년 57:43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1992, 1993년에 걸친 回歸分析結果, 醫院分布를 차등지표로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많다고 판단되며, 급여비의 경우도 모형구성과 자료에 따라 불안정성을 시현하고 있어 배분지표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된다. 결국 남은 지표는 소득, 老人扶養比, 부양율 등 세가지 지표이며, 그 중 소득과 老人扶養比 지표를 중심적인 차등지표로

선택하되, 부양률지표를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表 5-7〉 差等配分指標와 財政自立度間 回歸分析: 彈力性分析

	5요소		4요소		3요소		2요소		2요소	
	係數	t값	係數	t값	係數	t값	係數	t값	係數	t값
1992년										
常數	5.410	7.63*	5.530	7.84*	4.131	16.65*	3.658	22.34*	3.809	18.15*
所得	0.166	6.83*	0.152	6.84*	0.142	6.50*	0.160	7.64*	0.183	13.25*
老人扶養比	-0.061	-2.17*	-0.054	-1.97*	-0.065	-2.38*	-0.071	-2.59*		
給與費	-0.166	-2.03*	-0.173	-2.12*						
扶養率	-0.347	-2.71*	-0.332	-2.60*	-0.323	-2.52*			-0.351	-2.72*
醫院分布	-0.018	-1.42								
R-squared	0.605		0.602		0.595		0.586		0.587	
adj R-squ	0.598		0.596		0.591		0.582		0.583	
F value	79.7*		98.8*		128.5*		185.8*		186.6*	
1993년										
常數	4.610	5.88*			4.496	23.64*	4.093	37.20*		
所得	0.138	5.85*			0.118	5.90*	0.133	6.90*		
老人扶養比	-0.100	-3.96*			-0.098	-4.06*	-0.101	-4.16*		
給與費	-0.020	-0.23								
扶養率	-0.314	-2.66*			-0.303	-2.58*				
醫院分布	-0.020	-1.51								
R-squared	0.627				0.623		0.614			
adj R-squ	0.620				0.619		0.612			
F value	87.3*				144.5*		419.4*			

註: 1) 각 변수에 대해 자연log를 취하여 탄성계수를 구하였음.
2) *는 유의수준 5%하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2. 綜合財政力指數의 算定

前項의 分析에서 나타난 差等配分指標로서는 현행 사용하고 있는 1인당 所得課標와 老人扶養比를 채택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타당하다는 평가결과를 얻었다. 또한 세대당 세대원수(부양률의 대체적 지표)를 보조적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음을 검토하였다.

그러면 所得課標와 老人扶養比 양지표를 어떤 형태로 구성하여 종

합적 지수로 활용하는가에 논의의 촛점이 모아진다. 여기서는 양지표의 분포를 파악함으로서 적절한 형태를 선택하고자 한다. 〈表 5-8〉과 〈表 5-9〉는 양지표의 함수형태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함수형태의 선택은 양지표간의 변이계수가 비슷하도록 하는 데에 기준을 두도록 한다. 왜냐하면 배분지표간의 분포격차가 많이 나면 그에 따른 국고배분의 격차가 한쪽의 지표에 의해 과도하게 편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2장에서의 살펴본 현행 國庫配分方式하에서의 지표별 함수형태는 所得課標(y(i))에 대해서는 y/y(i) 를 사용하고, 老人扶養比(b)에 대해서는 log b (자연로그)를 사용하고 있다.[23] 각각의 변이계수는 전자의 경우 1992년 0.60, 1993년 0.59이며, 후자의 경우 1992, 93년 모두 0.20으로서 양지표간의 변이계수의 격차가 너무 크다고 판단된다. 또한 所得課標의 경우 실질적인 소득수준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와 더불어 면세점이하의 계층이 많이 존재하고 있어 所得課標의 지역간 편차를 老人扶養比에 비해 과도하게 반영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老人扶養比의 경우 거의 객관적인 지표로서 老人扶養比의 지역간 변이는 1992년 0.432, 1993년 0.428로서 所得課標지표 y/y(i)의 편차 0.60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그보다 더 낮은 log b의 변이 0.2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老人扶養比(b)를 그대로 이용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된다.

한편 y/y(i) 와 b 의 형태를 사용하는 방법의 대안으로서 $\sqrt{y/y(i)}$

---

23) y(i) 를 그대로 이용하지 않고 y/y(i) 를 이용하는 것은 첫째, 배분방법상 편리하다는 점, 즉 y(i) 가 클수록 국고배분을 적게 하여야 하는 반비례의 공식을 개발하는 것이 까다롭다. 둘째, y/y(i) 는 y(i) 를 표준화시킴으로서 안정적인 지표로 구성되고 변이계수도 별 차이가 없어 y(i) 의 대체적 지표로 적절하다고 본다.

와 $\sqrt{b}$를 사용하는 경우 變異係數가 前者는 1992년 0.30, 1993년 0.29, 후자는 1992, 93년 모두 0.22로서 낮아지고 있다. 즉 각 지표의 地域間 分布의 偏差를 완화시키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함수형태로서 {y/y(i), b} 보다는 { $\sqrt{y/y(i)}$, $\sqrt{b}$}를 사용하는 것을 더 選好한다. 왜냐하면 兩指標가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표라고는 판단되나 조합의 財政力을 완벽하게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양지표에 의한 組合間 隔差를 지나치게 반영하는 것을 되도록 止揚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며, 그것이 조합의 經營效率을 위한 努力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表 5-8〉 配分指標로서의 1人當 所得課標의 形態別 分布

	1992년				1993년			
	y(i)	y/y(i)	$\sqrt{y/y(i)}$	ln(y/y(i))	y(i)	y/y(i)	$\sqrt{y/y(i)}$	ln(y/y(i))
最大값	902.5	5.65	2.38	1.73	1,072.6	4.58	2.14	1.52
最小값	47.1	0.30	0.54	-1.22	54.7	0.23	0.48	-1.45
平均	202.1	1.85	1.30	0.44	250.7	1.37	1.12	0.15
標準偏差	119.3	1.11	0.39	0.59	139.6	0.81	0.33	0.57
變異係數	0.591	0.60	0.30	1.33	0.557	0.59	0.29	3.73

註: y(i)는 i 조합의 1인당 평균 所得課標(천원)
y는 전체조합의 평균 1인당 所得課標

〈表 5-9〉 配分指標로서의 老人扶養比의 形態別 分布

	1992년			1993년		
	b	$\sqrt{b}$	ln b	b	$\sqrt{b}$	ln b
最大값	30.0	5.48	3.40	20.7	4.55	3.03
最小값	3.9	1.98	1.37	4.1	2.02	1.41
平均	10.4	3.15	2.25	10.5	3.17	2.26
標準偏差	4.5	0.70	0.45	4.5	0.70	0.45
變異係數	0.432	0.22	0.20	0.428	0.22	0.20

註: b는 老人扶養比(%)임.

이러한 指標에 대한 函數形態를 선택한 후, 다음 단계는 각 지표로 구성된 綜合財政力指數를 구하는 것이 될 것이다. 종합재정력지수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자 한다.

組合 i 의 綜合財政力指數 z_i 는

$$z_i = \beta \frac{a_i}{\sum a_i} + (1-\beta) \frac{b_i}{\sum b_i}$$

여기서 $a_i = \sqrt{\frac{y}{y_i}}$ or $\frac{y}{y_i}$, $y = \frac{\sum y_i n_i}{\sum n_i}$

$$b_i = \sqrt{\frac{old_i}{econ_i} \times 100} \quad or \quad \frac{old_i}{econ_i} \times 100$$

n_i = i 조합의 피보험자수,
y_i = i 조합의 1인당 평균 소득과세표준
old_i = i 조합의 65세이상 노인인구수
$econ_i$ = i 조합의 20－64세의 경제활동인구
β = 所得課標에 따른 배분비중(후술)
$(1-\beta)$ = 老人扶養比에 따른 배분비중

綜合財政力指數에 따라 組合別 國庫配分金(x_i)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x_i = \alpha X \frac{z_i n_i}{\sum z_i n_i} + (1-\alpha) X \frac{n_i}{\sum n_i}$$

X = 給與費 國庫負擔金 총규모
α = 國庫負擔金중 差等配分金으로 할당하는 비중 (후술)

이러한 國庫負擔金 配分方式의 개선안을 현행방식과 비교하여 요약·설명한 것은 〈表 5-10〉 과 같다.

〈表 5-10〉 國庫負擔金 配分方式의 改善方案

개 선 안	현 행
組合別 國庫配分金(x_i)은 $x_i = \alpha X \frac{z_i n_i}{\sum z_i n_i} + (1-\alpha) X \frac{n_i}{\sum n_i}$ 組合 i 의 綜合財政力指數(z_i)는 $z_i = \beta \frac{a_i}{\sum a_i} + (1-\beta) \frac{b_i}{\sum b_i}$ 여기서 $a_i = \sqrt{\frac{y}{y_i}}, \quad y = \frac{\sum y_i n_i}{\sum n_i}$ $b_i = \sqrt{\frac{old_i}{econ_i} \times 100}$ β = 0.6, α = 1.0 (완전차등배분) 으로 접근	組合別 國庫配分金(x_i)은 $x_i = \alpha X [\ \beta \frac{a_i}{\sum a_i} + (1-\beta) \frac{b_i}{\sum b_i}\ ] + (1-\alpha) X \frac{n_i}{\sum n_i}$ 여기서, $a_i = \frac{y}{y_i}(n_i - old_i)$ $y = \frac{\sum y_i n_i}{\sum n_i}$ $b_i = old_i \times \ln(\frac{old_i}{econ_i} \times 100)$ β = 0.7, α = 0.1('95년), 0.15('96년), 0.2('97년)

<變數說明>

n_i = i 조합의 피보험자수, y_i = i 조합의 1인당 평균 소득과세표준
old_i = i 조합의 65세 이상 노인인구수
$econ_i$ = i 조합의 20~64세의 경제활동인구
β = 所得課標에 따른 배분비중
$(1-\beta)$ = 老人扶養比에 따른 배분비중
X = 給與費國庫負擔金 총규모
α = X중 差等配分金으로 割當되는 比重

다음 항에서는 差等配分요소별 비중 β_1, β_2와 國庫負擔金중 差等配分으로 割當하는 비중 α를 선택하는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다.

3. 差等配分要素別 比重과 差等配分金의 適正比重

差等配分요소, 즉 所得課標와 老人扶養比에 따라 종합재정력지수를 전항에서 구성하였다. 그런데 양배분요소간 비중은 결정하지 않았다.

현재의 國庫配分方式하에서는 양자간 70:30으로 구성하고 있다. 여기서는 60:40로 구성하고자 한다. 즉, 所得課標에 따른 배분비중 β=0.6으로 하고자 한다.

그 근거로서는 앞서 양지표에 의한 표준화된 회귀분석결과 각각의 계수치의 비중이 1992년 64:36에서 1993년 58:42로 변화하였고, 또한 각 변수별 탄력성계수치의 비중도 1992년 69:31에서 56:44로 나타난 것을 고려하였다. 所得課標의 영향이 감소하고 老人扶養比의 영향이 증가한 것은 첫째로,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農漁村地域에서 생산력인구의 이농으로 인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둘째, 실질소득이 所得課標의 포착범위내로 점차 顯在化되어 지역간 격차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綜合財政力指數를 구성하는 所得課標와 老人扶養比의 함수형태는 제2절 1.에서의 회귀분석에서 사용한 함수형태와 다르다. 따라서 函數形態의 變形에 의한 회귀분석 결과, 回歸係數의 값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고, 그 차이가 종합재정력지수내에서의 소득과표와 노인부양비간 비중을 재조정할 정도의 변화를 초래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附錄 Ⅳ〉에 정리되어 있다. 분석결과는 현재의 회귀분석결과 선정된 양지표간의 비중을 재조정할 정도의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급여비에 대한 전체 國庫負擔金중 差等配分을 위한 비중을 결정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 즉, 어느 정도의 差等配分比重이 적정한 수준인가?

綜合財政力指數가 각조합의 財政能力을 대표하는 지수로서의 信賴性을 확보한다면 醫療保障改革委員會에서 제안한 바에 의하여 國庫負擔金전체를 그 指數에 따라 완전히 差等配分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가장 극단적으로는 모든 組合의 收支率이 같아지도록 만드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이 방안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현재 조합의 財政自立度가 조합의 완전한 效率的 經營努力에 의한 결과라는 假定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差等配分指標로 구성된 종합재정력지수가 조합의 재정능력을 충분히 반영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配分方式의 개발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현재의 差等配分방식하에서 適正한 差等比重(즉 전항에서의 α)을 選擇하는 것은 많은 논쟁이 있을 수 있다. 어느 정도로 확대하는 것이 적정하느냐에 대한 基準은 多樣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差等配分방식에 따라서 적정비중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지니集中度와 分位間 分配率을 기준으로 適正差等率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지니집중도는 1인당 평균 財政收入(보험료+국고보조)별로 266개 組合을 配列하였을 때 累積組合數比率에 따른 1인당 平均財政收入의 累積比率의 分布로서 측정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所得分配의 不均等度를 계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로서 지니계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상세한 설명은 〈附錄 V〉를 참조하기 바란다.

본고에서 응용하고 있는 지니集中度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림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66개 조합을 1인당 평균재정수입의 크기순으로 배열한 뒤에 그 크기순으로 1인당평균 재정수입의 누적액을 계산한다. [圖 5-1]에서와 같이 횡축에 累積組合比率을 놓고, 종축에 累積財政收入比率을 두었을 때의 분포선 OBA와 45도선 OA사이의 面積이 집중도를 나타낸다. 즉 그 면적이 클수록 집중도가 크고 재정수입의 분포가 불균등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財政收入은 保險料收入과 國庫負擔金의 합으로서, 보험료수입이 고정되어 있을 때 정책변수로서의 국고부담금이 組合間에 差等配分이 강화될수록 재정이 취약한 조합은 재정수입이 상승하고 재정이 풍부한 조합은 재정수입이

하강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1인당 재정수입이 균등하게 분포하게 됨으로서 로렌즈곡선인 OBA가 45도선을 향하여 접근하는 경우 지니집중도는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일정한 비중 이상으로 차등배분이 더욱 강화되는 경우에는 재정취약조합에 대한 국고부담금이 더욱 증가하게 되고 재정풍부조합에 대한 국고부담금은 감소하게 되어 1인당 재정수입의 조합간 분포가 역전되는 경우 OBA가 다시 45도선에서 멀어지게 되고, 지니집중도는 상승하게 된다(지니집중도의 계산방법은 부록 참조).

분위간 분배율은 하위 6분위 평균 財政收支率 對 상위 6분위 평균 財政收支率比로 측정하였다. 분배율이 1이 되면 하위 6분위에 속한 조합들의 평균재정수지율과 상위 6분위에 속한 조합들의 평균재정수지율이 같아지므로 전체적으로 재정수지상태가 평형화될 수 있을 것이다.[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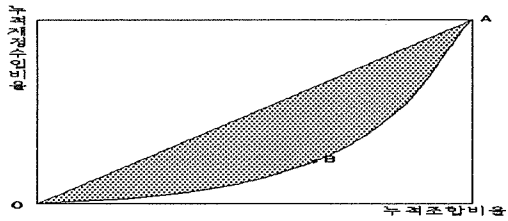

[圖 5-1] 地域組合別 財政收入의 지니集中度

24) 흔히 국민소득분배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분배율은 소득분위를 10분위로 구분하여 하위 4분위 소득의 합 대 상위 2분위 소득의 합의 비율로 측정하고 있다. 지니계수를 포함한 각 소득불평등도지표에 대한 설명은 Mizoguchi and Takayama(1984), 村上雅子 등과(1984) 주학중(1982), 권순원 외(1992)를 참조할 것.

지니集中度와 分配率은 다음 세가지 경우에 각각 계측하였다.

1) 현행 國庫配分方式에 의하는 경우

2) 改善方式(1):
종합재정력지수 Ⅰ에 의한 國庫配分方式에 의하는 경우
즉, 종합재정력지수 z_i 를 구성할 때 소득과표(y_i)와 노인부양비 (b_i)의 함수형태를 { y/y_i , b_i} 를 사용하는 경우임.

3) 改善方式(2):
종합재정력지수 Ⅱ에 의한 國庫配分方式에 의하는 경우
즉, 종합재정력지수 z_i 를 구성할 때 소득과표(y_i)와 노인부양비 (b_i)의 함수형태를 { $\sqrt{y/y_i}$, $\sqrt{b_i}$ } 를 사용하는 경우임.

첫번째 경우에 의한 국고배분결과는 제4장 의료보장개혁위원회의 개선안에 소개되어 있고, 본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두번째와 세번째 경우에 의한 국고배분결과는 다음 절에 소개되어 있다. 이러한 세가지 경우별로 지니집중도, 분배율은 [圖 5-2] 및 [圖 5-3]과 같다.

지니집중도에 있어서 差等配分比重을 확대함에 따라 集中度가 낮아지다가 일정한 배분비중을 지나면 다시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다. 지니집중도가 가장 낮아지는 점은 조합별 1인당 財政收入이 均等하게 分布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조합의 1인당 保險給與支出은 조합간에 비슷하므로 1인당 재정수입이 조합간에 균등히 분포될 때까지 차등배분을 강화하는 것이 國庫配分의 適正한 政策方向이 될 것이다. 따라서 지니집중도가 가장 낮아지게 되는 差等配分比重을 적정한 지점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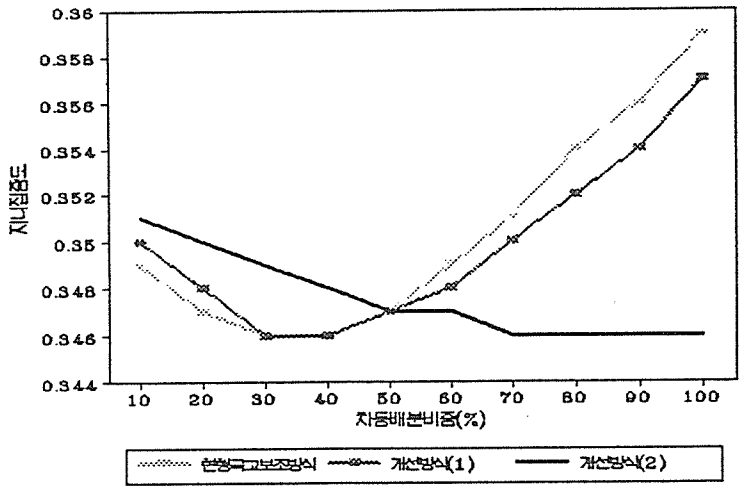

[圖 5-2] 國庫差等配分 比重別 지니集中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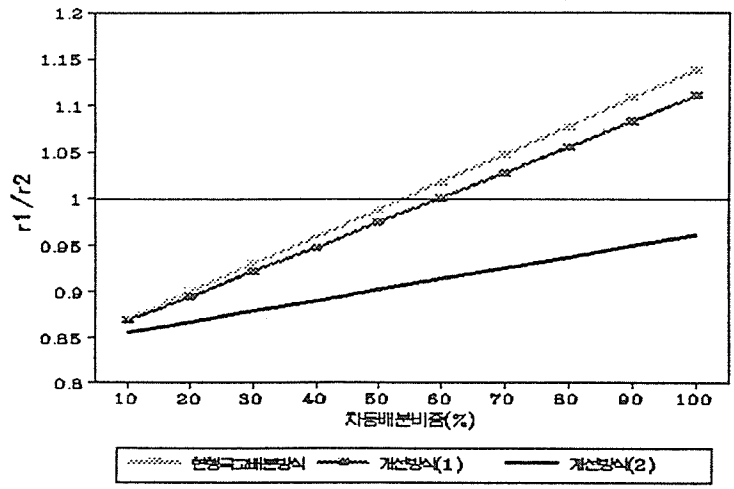

圖 5-3] 國庫差等配分 比重別 分配率

[圖 5-2]에서 보듯이 현행 및 개선방식 (1) 즉, 종합재정력지수 Ⅰ에 의한 配分方式下에서는 약 35%의 差等配分比重이 적정하고, 개선방식 (2) 즉, 종합재정력지수 Ⅱ에 의할 경우 약 70% 이상의 구간에서 가장 낮은 집중도를 보이고 있다.

分配率基準에 의할 경우 1993년 현재 약 0.85의 분배율에서 國庫差等比重을 확대함에 따라 분배율은 계속 상승하여 均等分配點인 1을 거쳐 계속 분배율이 상승하여 分配狀態가 逆戰하게 된다. 분배율이 1이 되는 차등비중을 適正差等比重으로 선택하면 現行方式에 의할 경우 약 53%, 綜合財政力指數 Ⅰ에 의할 경우 약 60%가 되며, 綜合財政力指數 Ⅱ에 의한 配分方式에 따를 경우는 완전차등 100%시에도 분배율이 1에 못미치게 된다.[25] 分配率基準에 의한 적정차등비중은 지니집중도에 의한 適正差等比重과는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다.

따라서 論議는 첫째, 適正差等比重 選擇을 위해 지니집중도와 분배율기준중 어느 것에 의하느냐는 문제와 둘째, 國庫配分方式 개선을 위한 綜合財政力指數 Ⅰ및 Ⅱ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는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첫번째 논의에 대해서는 지니集中度基準이 分配率基準보다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로서는 첫째, 分配率에 의한 선택은 분배율의 정의에 따라 적정차등비중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즉 상하위 3분위 혹은 4분위 등을 대상으로 분배율을 측정하는 경우 적정차등비중의 選擇點이 변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분배율이 1이 되는 경우를 적정하다고 판단하기에는 客觀的이지 못할 수 있다. 즉 國庫補助에 의해 재정수지율을 상위 6분위 조합군과 하위 6분위 조합군간에 균등하게 유지해주는 것은 조합의 自律的인 經營努力을 沮害할 수 있

25) 여기서의 분배율기준은 하위 6분위와 상위 6분위의 비율로 계측하고 있는데, 만약 하위 3분위와 상위 3분위의 비율로 계측하는 경우에는 적정차등비중의 선택점이 변화할 것이다. 적정차등비중의 선택점이 보다 더 높은 곳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기 때문이다. 지니집중도 기준은 분배율기준에 비해 適正差等配分比重의 선택점이 낮아 비교적 保守的이고, 조합의 재정수지균형을 이루기 위한 경영상 노력을 크게 저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니집중도의 계산에 있어서는 전체 標本組合을 각각 個別的으로 모두 포함시키고 있는 반면 분배율은 전조합을 두집단으로 나누어 집단평균의 비교에 의해 계산되므로 지니集中度 基準이 보다 具體的이고 敏感度면에서 나은 기준으로 생각된다.

두번째 논의에서 綜合財政力指數 Ⅰ과 Ⅱ에 대한 選擇에서 前者에 의한 방식은 差等配分의 强度에서 현행방식과 유사한 강력한 配分方式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差等配分比重을 확대함에 따라 地域組合間의 형평성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즉, 地域組合의 재정력이 所得課標와 老人扶養比 양자에 의해 완벽하게 설명될 수 없기 때문에 양지표만에 의해 差等配分되는 國庫負擔金 규모가 커질수록 형평분배의 문제가 야기되고 地域組合들의 저항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종합재정력지수 Ⅱ에 의한 配分方式은 재정력지수에 따른 조합간 差等配分의 强度는 크지 않지만 差等配分比重을 대폭 강화하더라도 조합간의 형평성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은 적다. 또한 의료보장개혁위원회(1994)에서 제의한 종합재정력지수의 개발에 의한 完全한 差等配分方式에 근접한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정부가 國庫負擔金을 지역조합간에 배분함에 있어서 조합별로 1인당定額基準 보다는 組合別 財政狀態를 客觀的으로 측정한 근거에 의해 大部分의 國庫를 효율적으로 집행한다는 운영의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면에서도 長點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組合의 經營努力을 低下시킬 가능성의 측면에서 現行方式 및 綜合財政力指數 Ⅰ에 의한 방식보다 우수할 것으로 판단된다.

第 3節 改善案에 의한 國庫配分結果

제2절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國庫負擔金을 綜合財政力指數 Ⅰ과 綜合財政力指數 Ⅱ에 따라 조합별로 배분하는 경우의 결과는 〈表 5-11〉, 〈表 5-12〉 및 〈表 5-13〉과 같다.

〈表 5-11〉 綜合財政力指數 Ⅰ에 의한 國庫差等配分 結果
(10, 15, 20% 差等)

(단위: %)

		차등분배비중(%)					
		10% 차등		15% 차등		20% 차등	
분위	기 준 수지율	수지율	국 고 보조율	수지율	국 고 보조율	수지율	국 고 보조율
1	87.1	90.9	35.7	92.9	37.6	94.8	39.5
2	93.9	97.3	36.7	99.0	38.4	100.6	40.1
3	96.5	99.3	35.8	100.7	37.3	102.2	38.7
4	98.6	100.9	35.6	102.0	36.7	103.2	37.9
5	101.2	103.4	34.7	104.5	35.8	105.6	37.0
6	104.3	105.7	34.6	106.5	35.3	107.2	36.0
7	106.9	107.9	34.6	108.5	35.2	109.0	35.7
8	109.6	109.4	33.6	109.4	33.5	109.3	33.4
9	112.5	112.2	33.3	112.1	33.2	111.9	33.0
10	115.1	114.3	32.9	113.9	32.5	113.6	32.1
11	118.8	117.9	33.7	117.4	33.2	117.0	32.7
12	126.6	125.5	33.7	125.0	33.1	124.5	32.6
平 均	106.1	107.2	34.6	107.8	35.14	108.4	35.7
標準偏差	11.3	9.8	3.18	9.2	4.1	8.7	50.1
變異係數	0.106	0.091	0.092	0.085	0.116	0.080	0.142

註: 1) 基準收支率은 國庫負擔金을 조합별 피보험자당 정액으로 배분하였을 때의 배분결과이며, 분위분류는 이를 기준으로 하였음.
2) 수지율은 (保險料收入+國庫負擔金)/保險給與費(%)임.
3) 國庫補助率은 國庫負擔金/保險給與費(%)임.

먼저 〈表 5-11〉은 본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종합재정력지수 Ⅰ에 의해 差等配分하되 給與費 國庫負擔金 豫算중 差等配分比重을 10%,

15%, 20%로 확대하여 나가는 경우의 배분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의료보장개혁안에 의한 差等配分結果인 〈表 4-1〉과 비교하여 볼 때 國庫補助率이나 收支率의 평균이나 분포상태는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留意하여 살펴 볼 점은 國庫補助率의 평균은 불과 0.1~0.2% 포인트 낮으나, 변이계수는 10% 差等配分시 0.5% 포인트, 15% 差等配分시 0.8% 포인트, 20% 差等配分시 1.1% 포인트가 낮아 國庫負擔金分配의 조합간 차등폭이 작게 나타나고 있다. 즉, 종합재정력지수 Ⅰ에 의한 배분결과는 현행 배분방식에 의한 결과와 비교하여 國庫補助率이나 收支率의 平均은 거의 유사하다. 그런데 국고보조율의 變異가 현행방식에 의한 배분에 의할 경우 보다 작으면서도 국고보조율이나 수지율의 평균은 비슷하므로 종합재정력지수에 의한 國庫配分方式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종합재정력지수 Ⅱ에 의한 國庫差等配分 결과는 〈表 5-12〉와 같으며, 종합재정력지수 Ⅰ에 의한 배분결과(表 5-11 참조)와 비교할 때 동일한 差等配分比重하에서 國庫補助率이나 收支率의 平均이 낮아 差等配分力이 훨씬 약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國庫補助率의 변이계수도 낮아 조합간 차등폭이 적고 따라서 收支率의 경우 변이계수가 높아져 여전히 수지상태의 조합간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다음 〈表 5-13〉에서 보듯이 差等配分比重을 50%, 100% 로 확대하는 경우 종합재정력지수 Ⅰ에 의하는 경우의 수지율이나 國庫補助率이 종합재정력지수 Ⅱ에 비해 높다. 그러나 수지율의 변이계수를 보면 종합재정력지수 Ⅰ에 의하는 경우 완전(100%)차등시 매우 높아 하위분위의 수지율이 상위분위에 비해 훨씬 높아지는 수지율의 역전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의료보장개혁안에 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

지이다. 國庫補助率을 보면 완전차등시 최하위분위의 경우 급여비의 70%까지 보조하게 된다. 이러한 지나친 差等配分은 조합의 자립경영0 노력을 저해할 수 있으며, 종합재정력지수가 조합의 재정력을 완전히 평가할 수 있는 指數로서의 限界가 있기 때문에 組合間의 不公平問題가 다시 발생할 것이다.

〈表 5-12〉 綜合財政力指數 II에 의한 國庫差等配分 結果
(10, 15, 20% 差等)

(단위: %)

		차등분배비중(%)					
		10% 차등		15% 차등		20% 차등	
분위	기 준 수지율	수지율	국 고 보조율	수지율	국 고 보조율	수지율	국 고 보조율
1	87.1	88.8	33.5	89.6	34.4	90.5	35.2
2	93.9	95.4	34.9	96.2	35.7	97.0	36.4
3	96.5	97.8	34.3	98.4	34.9	99.1	35.6
4	98.6	99.79	34.4	100.2	34.9	100.8	35.5
5	101.2	102.2	33.5	102.7	34.1	103.2	34.6
6	104.3	105.0	33.8	105.3	34.2	105.7	34.5
7	106.9	107.4	34.1	107.7	34.4	107.9	34.6
8	109.6	109.5	33.7	109.5	33.7	109.5	33.7
9	112.5	112.4	33.5	112.4	33.5	112.3	33.4
10	115.1	114.7	33.3	114.6	33.2	114.4	33.0
11	118.8	118.4	34.2	118.2	34.0	118.0	33.7
12	126.6	126.1	34.2	125.8	34.0	125.6	33.7
平 均	106.1	106.6	33.96	106.9	34.24	107.1	34.5
標準偏差	11.3	10.6	2.4	10.2	2.7	9.9	2.9
變異係數	0.106	0.099	0.071	0.096	0.077	0.093	0.085

註: 1) 基準收支率은 國庫負擔金을 조합별 피보험자당 정액으로 배분하였을 때의 배분결과이며, 분위분류는 이를 기준으로 하였음.
2) 수지율은 (保險料수입+國庫負擔金)/保險給與費(%)임.
3) 國庫補助率은 國庫負擔金/保險給與費(%)임.

綜合財政力指數 II에 의한 差等配分의 경우 完全差等配分에 가까울수록 전체적인 收支率이나 國庫補助率이 계속 상승하면서 國庫補助率

의 變異係數는 지속적으로 상승함과 동시에 收支率의 변이계수는 계속 하락하게 됨으로서 國庫補助의 差等配分 확대에 따른 수지분포의 지속적인 安定傾向을 보여주고 있어 보다 바람직한 配分方式이라고 판단된다.

〈表 5-13〉 綜合財政力指數에 의한 國庫差等配分 結果(50, 100% 差等)

		종합재정력지수 I에 의한 차등				종합재정력지수 II에 의한 차등			
		50% 차등		100% 차등		50% 차등		100% 차등	
분위	기 준 수지율	수지율	국 고 보조율	수지율	국 고 보조율	수지율	국 고 보조율	수지율	국 고 보조율
1	87.1	106.2	51.0	125.3	70.1	95.5	40.2	103.8	48.6
2	93.9	110.7	50.1	127.5	66.9	101.6	41.0	109.2	48.7
3	96.5	110.7	47.2	125.0	61.5	103.0	39.5	109.6	46.1
4	98.6	110.2	44.8	121.7	56.4	104.0	38.7	109.5	44.2
5	101.2	112.3	43.6	123.4	54.7	106.3	37.6	111.4	42.7
6	104.3	111.6	40.4	118.9	47.7	107.8	36.6	111.3	40.2
7	106.9	112.2	38.9	117.6	44.3	109.5	36.2	112.2	38.9
8	109.6	108.9	33.0	108.2	32.3	109.4	33.6	109.3	33.5
9	112.5	111.0	32.1	109.4	30.5	112.0	33.1	111.5	32.6
10	115.1	111.3	29.9	107.6	26.2	113.5	32.0	111.9	30.5
11	118.8	114.2	29.9	109.5	25.3	116.7	32.5	114.6	30.4
12	126.6	121.2	29.4	115.9	24.0	124.0	32.2	121.5	29.6
平 均	106.1	111.8	39.1	117.5	44.8	108.7	36.1	111.4	38.7
標準偏差	11.3	8.86	11.6	17.1	23.0	8.4	5.4	7.9	10.1
變異係數	0.106	0.079	0.297	0.146	0.513	0.077	0.149	0.071	0.260

註: 1) 基準收支率은 國庫負擔金을 조합별 피보험자당 정액으로 배분하였을 때의 배분결과이며, 분위분류는 이를 기준으로 하였음.
2) 수지율은 (保險料收入+國庫負擔金)/保險給與費(%)임.
3) 國庫補助率은 國庫負擔金/保險給與費(%)임.

따라서 向後의 國庫負擔金의 配分은 다음과 같은 日程에 따라 추진해나가는 경우 큰 마찰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선 1995년도의 국고배분은 現行配分方式에 의하여 給與費國庫負擔金의 10%를 차등배분하게 된다. 이후 1996년도부터는 綜合財政力指數 II에 의해 差等配分하도록 한다. 1996년에는 指數에 의해 국고부담금의 40%를 차등배

분하는데, 여기서 40%를 선정한 이유는 당초의 1996년도 정부계획인 현행배분방식에 의한 15% 차등배분에 해당하는 지니集中度는 [圖 5-2]에서 0.348인데 이에 상당하는 종합재정력지수 Ⅱ에 의한 차등배분비중은 40% 정도이다. 유사한 방법에 의해 1997년도 政府計劃인 현행배분방식에 의한 20% 차등배분에 해당하는 綜合財政力指數에 의한 차등배분비중은 55%이다. 1998년에는 차등배분비중을 70%까지 확대하도록 한다.

이러한 計劃에 따른 國庫配分의 結果는 〈表 5-14〉와 같다. 1995년도 國庫負擔金의 10%를 현행배분방식에 의한 차등배분 결과, 收支率平均이 107.3%로 개선되며, 1996년의 경우 綜合財政力指數에 따라 國庫負擔金의 40%를 차등배분하는 경우 수지율평균이 108.2%로 개선되며, 1997년에 55%를 차등배분하는 경우 수지율평균은 109.0%, 1998년 70%를 차등배분하는 경우 收支率平均은 109.8%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하분위의 수지율은 1995년 91.3%에서 1998년에는 98.8%로 개선되는 효과를 가지게 되며, 이는 定額補助方式에 의한 기준수지율 87.1%에 비해 11.7%포인트가 상승되는 결과를 낳는다.

한편 1998년이후 2000년까지 國庫負擔金 全額을 차등배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우 〈表 5-13〉의 100% 차등배분에 의한 配分結果를 시현할 것이다. 즉, 국고보조율 평균이 38.7%로 증가하여 수지율평균이 111.4%로 개선되며, 최하분위의 수지율은 103.8%로 개선되리라 전망된다. 그런데 1997년에 비해 차등배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收支率의 標準偏差는 7.8에서 7.9로 약간 증가함으로써 조합간 수지율의 격차가 수렴되지 않고 오히려 확산되는 경향이 있어 注意를 요하게 된다. 이는 組合財政力指數를 구성하는 각 指標가 각 조합의 재정력을 얼마나 잘 反映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매년 새로이 얻어지는 조합별 자료를 가지고 조합의 財政收支와 財政力指標들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작업을 定例化함으로써 보다 타당한 종합재정력지수를 재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所得課標 指標가 각 조합의 부담능력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매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외 扶養率指標, 給與費指標 등이 補助指標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매년 재정상황을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表 5-14〉 國庫負擔金의 差等配分 시뮬레이션(1995~'98)

		現行方式		綜合財政力指數에 의한 方式					
		10% 차등('95)		40% 차등('96)		55% 차등(97')		70% 차등('98)	
분위	기 준 수지율	수지율	국 고 보조율	수지율	국 고 보조율	수지율	국 고 보조율	수지율	국 고 보조율
1	87.1	91.3	36.1	93.8	38.5	96.3	41.0	98.8	43.5
2	93.9	97.6	37.1	100.0	39.5	102.3	41.8	104.6	44.1
3	96.5	99.6	36.1	101.7	38.2	103.7	40.2	105.6	42.1
4	98.6	101.1	35.8	102.9	37.6	104.6	39.3	106.2	40.9
5	101.2	103.6	35.0	105.2	36.6	106.8	38.1	108.3	39.7
6	104.3	105.9	34.7	107.1	35.9	108.2	37.0	109.2	38.0
7	106.9	108.0	34.8	109.0	35.7	109.8	36.5	110.6	37.3
8	109.6	109.4	33.5	109.5	33.6	109.4	33.6	109.4	33.5
9	112.5	112.2	33.3	112.1	33.2	111.9	33.1	111.8	32.9
10	115.1	114.2	32.8	113.8	32.4	113.3	31.9	112.8	31.4
11	118.8	117.8	33.6	117.2	32.9	116.5	32.3	115.9	31.7
12	126.6	125.4	33.6	124.6	32.7	123.8	31.9	123.0	31.2
平 均	106.1	107.3	34.7	108.2	35.6	109.0	36.4	109.8	37.2
標準偏差	11.3	9.7	3.4	8.8	4.5	8.2	5.8	7.8	7.2
變異係數	0.106	0.090	0.097	0.081	0.126	0.075	0.160	0.071	0.194

〈表 5-14〉에 의한 差等配分 結果는 재정이 취약한 조합일수록 더 많은 국고지원을 받게 됨을 分位別 區分에 의해 보여주고 있다. 이를 분위별 市비중(表 5-3 참조)指標와 연계하여 보면 下位분위일수록 市비중이 낮아 農漁村地域 組合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므로 농어촌지역에 대해 많은 財政移轉이 이루어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런데 市地域과 農漁村地域으로 兩分하여 農漁村地域에 얼마나 많

은 財政移轉이 이루어지는가를 보려고 한 것이 〈表 5-15〉 이다. 여기서는 각 組合이 定額配分方式에 의해 국고지원을 받을 때의 국고지원금과 비교하여 差等配分에 의할 때에는 추가적인 국고지원이 얼마나 이루어지는가를 1995년을 기준으로 추정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國庫配分計劃에 의하는 경우의 追加 財政移轉額은 1996년 222.5억원, 1997년 306.0억원, 1998년 389.6억원, 완전차등배분에 의하는 1999년이후 556.5억원으로서, 給與費國庫負擔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996년 4.0%, 1997년 5.4%, 1998년 6.9%, 완전차등배분시 9.9%이다. 이는 현행 국고배분방식에 다른 정부계획에 의할 경우 추가 재정이전규모인 1996년 198.6억원(국고중 3.5%), 1997년 264.9억원(국고중 4.7%)에 비교해 볼 때 농어촌지역에 더 많은 재정이전을 하게 되는 것이다.

〈表 5-15〉 農漁村地域에 대한 追加 財政移轉額 推定(1995)
- 定額配分方式에 의한 國庫支援金과의 比較 -

(단위: 억원)

	綜合財政力指數에 의한 配分		現行方式에 의한 配分(政府計劃)	
	財政移轉	國庫중 比重	財政移轉	國庫중 比重
1996년	222.5	4.0%	198.6	3.5%
1997년	306.0	5.4%	264.9	4.7%
1998년	389.6	6.9%	-	-
1999~	556.5	9.9%	-	-

註: 1) 1995년 기준의 추정은 1993년 자료에 의한 재정이전액을 급여비 국고부담금의 1995년 규모 대 1993년 규모의 비중을 고려하여 계산하였음.
2) 국고중 비중은 급여비국고부담금중 재정이전규모의 비중임.
3) 1995년 재정이전은 109.1억원임(국고중 2.4%).

그런데 여기에서 注意해야 할 점은 農漁村地域으로의 財政移轉이 많이 된다는 것이 좋은 국고배분이라고 판단할 絶對的 基準으로 해석되어서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都市地域조합중에서 상당부분은 農漁村

地域조합보다 재정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와 농어촌지역으로 구분하여 農漁村地域에 대한 財政移轉額을 보고자하는 것은 政策效果를 비교적 간단하게 이해시키기 위한 자료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第 4節 向後 國庫支援의 政策課題

지금까지 地域醫療保險에 대한 國庫負擔金 지원방식에 대해 差等配分指標의 통계적 타당성검증을 통한 지표의 선정과 종합재정력지수의 개발, 종합재정력지수에 의해 급여비 國庫負擔金豫算의 差等配分을 확대하는 경우의 配分結果를 보았다.

國庫負擔金정책의 改善方案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本節에서는 國庫負擔金 배분정책이 醫療保險 全體財政의 效率性 및 衡平性, 國民階層間 醫療費負擔의 歸着, 政府豫算運用의 效率性의 측면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醫療保險 전체재정의 측면에서 財政安定化를 위한 전체조합간 財政調整事業(즉 고액진료비 및 노인의료비 공동부담사업)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1995년부터 老人醫療費 共同負擔事業이 시작되고 財政調整事業 規模가 확대되어 본격적인 재정조업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조합방식을 채택한 선진국의 경우 國庫負擔金은 특별히 지원이 요청되는 분야에 한정되고 있으며, 주로 재정조정사업에 의해 조합간의 질병 및 부담능력상 위험요인을 조정하고 있다. 참고로 日本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地域組合에 대해 國庫補助가 상당히 투입되고 있으나 운영주체가 '市町村'이라는 기초자치단체이며, 또한 國庫負擔金豫算이 매년 감소되는 추세에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醫療保險의 管理運營體系가 組合方式의 基調로 유지·발전하여 간다면 보험재정안정은 조합간

재정조정사업에 의해 보험제도내에서 해결되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재정조정사업이 연차적으로 확대되는 경우 國庫負擔金의 豫算규모를 감축함으로서 조합간의 재정이전을 적절히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國民階層間 醫療費負擔의 '歸着'(즉,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가?)이란 측면에서 볼 때, 國庫負擔金사업과 재정조정사업간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의 문제이다. 國庫負擔金은 정부의 일반豫算의 일부이므로 국민들의 조세부담에 의해 조달되며, 재정조정사업은 피보험자(국민과 거의 일치)의 保險料부담에 의해 조달된다. 이때 양자중 負擔의 歸着이란 면에서 어느 쪽이 더 累進的인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조세부담의 경우 우리나라의 租稅體系가 間接稅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累進性이 약하나 免稅點에 해당하는 階層이 상당히 많은 점에서는 저소득층의 부담이 적은 측면도 있다. 다만 自營者階層에 대한 소득파악율이 낮아 근로자계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과중한 형평상의 문제는 남는다. 保險料부담의 경우 주로 所得比例型이 중심이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受益者負擔比重이 크다. 결국 국민계층간 租稅負擔과 保險料負擔의 歸着을 측정하는 것이 과제로 남게 된다. 다만, 醫療保險은 醫療市場의 특성상 조세부담형태를 취하는 경우 관리운영체제의 전환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醫療利用行態('道德的 危害' 등)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가지 파급효과를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豫算運用의 效率性면에서 國庫負擔金豫算은 差等配分에 의해 취약조합에 상대적으로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재정자립이 가능해지고, 부유조합에는 국고지원이 감축(혹은 중단)됨으로서 豫算의 낭비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본보고서에서 제안하는 完全差等配分에 의하는 경우 國庫負擔金豫算을 어느 정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그 餘

裕豫算을 醫療保護나 給與範圍 擴大, 혹은 他社會福祉豫算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26]

26) 給與費 國庫負擔金豫算의 20%를 감축하여 綜合財政力指數II 에 의해 完全差等配分하는 경우의 分位間 配分結果는 〈附表 3-1〉을 참조하기 바란다. 1, 2분위의 경우 財政自立에 未達하고 있는데 上位分位 조합의 국고보조분을 下位分位로 移轉하는 방안을 추가로 개발한다면 지역보험재정의 安定과 豫算節減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豫算 節減크기에 따른 國庫負擔金 豫算의 減縮 혹은 保險料輕減, 그리고 兩者의 調合에 의한 국고배분 및 재정수지를 분위별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는 최병호(1994: 213~224) 를 참조하기 바란다.

第 6 章 地方化時代에서의 國庫支援方式 檢討

第 1 節 地方化時代와 醫療保險의 管理運營

地方自治의 출범에 따라 각종 정부사업의 中央과 地方政府간의 재원배분 및 집행상의 책임과 권한배분의 문제가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醫療保險의 경우 地方自治制 실시에 따라 재원조달과 보험급여 및 자격관리 등 전반적인 사업이 원칙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을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현행 醫療保險制度는 中央政府(즉 保健福祉部 長官)가 保險給與 및 保險料賦課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각 직장 및 지역별 조합이 독립된 法人格으로서 가입자들의 자격관리, 보험료징수 및 적립기금 등을 관리하고 있다.

현행 單位 地域組合의 관장범위는 행정구역상 基礎自治團體와 일치하고 있다. 日本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점과 비교하면[27], 우리나라는 독일의 組合運營方式의 영향을 많이 받은 듯하다. 그런데 형태상으로는 조합별 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조합의 自律性과 獨立性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즉, 保險給與는 조합간에 차이가 없는 法定給與로 제공되고 있으나 그외의 附加的 給與를 조합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다.

地方自治時代下에서의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國庫支援의 方向은 의료보험조합의 管理運營方式과 연계하여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의료

---

27) 일본은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자영자에 대해서는 따로 직종별 조합을 구성·운영하고 있어 지역별 조합에서 분리하고 있다.

보험의 관리운영은 그 形式論理上 中央 혹은 地方政府조직과는 독립되어 있으며, 각 행정단위별 군·구의 地域組合은 '國庫負擔金'이란 형태로 管理運營費用 전액과 보험급여지출의 일정부분을 보조받고 있다. 다른 보건복지사업의 경우 中央政府의 계획, 地方政府의 집행에 따른 중앙 대 지방의 재원분담과 中央政府의 地方政府에 대한 재정이전이라는 재정정책적 연결구조가 있지만, 醫療保險事業의 경우 정부와는 별개의 조직구조하에서 관리운영되고 있으며 中央政府가 일방적으로 國庫負擔金이란 명목으로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地域組合의 운영이 醫療保險聯合會를 통한 保健福祉部의 통제범위내에 있으며, 國庫負擔金의 규모나 지역간 배분도 保健福祉部 및 財政經濟院의 정책적 결정사항이다. 또한 地方政府로서의 기초자치단체 즉, 군·구 혹은 나아가 廣域自治團體의 직접적인 사업과는 연계되지는 않고 있다.

地方自治制 실시가 醫療保險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향후 醫療保險의 관리운영체제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즉, 中央政府가 地方自治團體에 대해 조합운영에 대한 權限의 委任을 얼마나 할 것인지, 혹은 조합운영에 대한 조합의 自律權을 얼마나 허용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醫療保險組合의 運營은 현행 의료보험법령상의 제규정의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地方自治團體의 개입은 제한적이다. 즉,

1) 地域組合의 管轄地域은 市·郡·區로서(법 제13조 4항) 法人임(법 제14조).
2) 조합의 설립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중에서 5인 이상의 설립위원을 위촉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保健福祉部長官의 인가를 받아야 함(법 제16조 2항).

3) 조합의 상임대표이사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 保健福祉部 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함(령 제24조).
4) 조합 정관의 변경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保健福祉部 長官의 인가를 받아야 함(법 제20조).
5) 요양기관의 지정 및 취소는 保健福祉部 長官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지정하게 되어 있음(법 제32조, 제33조).
6) 조합의 조직·인사·보수·회계 등에 관한 운영상의 준칙은 保健福祉部 長官이 정하여야 함(령 제51조 1항).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의료보험조합의 관리운영은 대부분 保健福祉部의 관할하에 있으므로 地方自治團體의 역할은 상당히 제한적이며 또한 조합 스스로의 自律經營에도 많은 限界가 있다.

그러나 현행 醫療保險法에 의하면 地方自治團體에 대해 상당한 權限을 委任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위임사항은 1994년 12월의 시행령개정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表 6-1 참조).

1. 中央政府(保健福祉部長官)의 權限의 廣域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委任事項

법 제81조 1항은 保健福祉部 長官의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委任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행령 94조 1항은 다음 各號의 權限을 市·道知事에게 委任하도록 규정(1994년 12월 23일 개정)하고 있다.

1) 직장조합의 설립시 기존조합에 編入을 命(법 제17조3항)할 수 있는 권한

2) 조합 決議 또는 임원의 행위가 법규를 위반하여 조합이익에 반하거나 운영이 곤란할 때 組合決議의 取消 및 組合任員의 解任(법 제23조)에 관한 권한
3) 保險料 등의 체납에 대해 보험자(혹은 보험자단체)가 國稅滯納處分에 의해 徵收할 수 있는 權利(법 제56조 3항)를 承認하는 권한
4) 사용자에 대해 被保險者의 이동, 보수 기타 필요사항에 대한 보고 및 關係書類 제출, 요양기관에 대해 保險給與에 관한 보고 및 서류제출, 피보험자에 대해 보험급여의 내용에 관한 報告(법 제76조) 등을 명하는 권한
5) 조합에 대하여 事業報告, 財産狀況을 검사하여 定款의 變更을 명하는 등(법 제80조)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組合監督權限
6) 地域組合 상임대표이사의 취임승인 및 임시대표이사의 選任에 관한 保健福祉部 長官의 권한
7) 당연적용사업장 調査, 豫算編成 및 變更의 승인, 일시차입금의 借入承認, 기본재산의 처리(양도·교환, 담보)승인, 決算報告에 관한 사항

이상과 같이 廣域自治團體長은 조합의 人事, 事業, 豫算編成과 變更, 결산, 定款變更[28] 등 包括的인 감독권한을 갖게 되어 조합운영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된다.

---

28) 조합의 정관은 지역조합의 관할범위, 조직 및 인사사항,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일부부담, 보험료, 준비금 기타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광역자치단체는 조합운영에 전반적으로 개입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2. 中央政府(保健福祉部長官)의 權限의 聯合會에 대한 委託事項

법 제81조 2항은 요양기관에 대한 保險給與關係 자료의 제출요구와 조합에 대한 指導·監督에 관한 권한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聯合會에 委託可能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 94조 2항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연합회에 위탁하도록 규정(1994년 12월 23일 개정)하고 있다.

1) 療養機關에 대한 保險給與費用 審査關係資料의 提出 요구
2) 법 제80조에 의한 조합의 事業報告와 事業 및 財産狀況檢査에 관한 지도

따라서 연합회에 위탁하고 있는 업무는 매우 한정적이다. 참고로 연합회의 기능은 시행령 54조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1994년 12월 23일 개정).

1) 保險財政安定事業과 醫療施設 또는 福祉施設의 설치·운영
2) 療養機關의 指定 및 取消에 관한 업무
3) 보험자가 연합회에 위탁한 保險給與 비용의 심사·지급에 관한 업무
4) 법 제81조2항에 의해 保健福祉部長官이 연합회에 위탁한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5) 해산된 組合의 殘餘財産의 管理
6) 敎育訓練 및 弘報
7) 調査硏究 및 國際協力
8) 다른 법률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診療費用의 審査·支給에 관해 위탁받은 업무

현재 연합회의 주요 기능은 診療費審査·支給과 保險財政安定事業이며,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이 어느 정도 주어져 있으나 廣域自治團體에 위임된 指導·監督權보다는 미약하다고 해석된다.

3. 地域組合 業務의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委託事項

법 제82조 2항은 地域組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地方自治團體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95조2항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1994년 12월 23일 개정).

1) 被保險者의 資格取得 및 喪失申告書의 수리
2) 醫療保險證 交付 및 被保險者의 民願受理
3) 保險料의 賦課·徵收

그러나 령 93조 3항에서 이상의 업무위탁은 保健福祉部 長官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위탁대상으로서 '地方自治團體'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모두 위탁관리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각 廣域自治團體 혹은 基礎自治團體가 피보험자의 자격관리 및 보험료의 부과·징수 업무를 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위탁이 이루어질 경우 조합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며, 地方政府가 醫療保險을 관리하게 된다. 다만, 이러한 위탁은 保健福祉部長官의 承認事項이므로 향후 조합의 管理運營方式의 방향은 中央政府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表 6-1〉 中央政府·地方自治團體 및 組合間 權限委任·委託 關係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의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위임사항	보건복지부장관 권한의 연합회에 대한 위탁사항	지역조합업무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위탁사항
1. 직장조합의 설립시 기존 조합에 편입권한 2. 조합결의의 취소 및 임원해임에 관한 권한 3. 보험료 등의 체납 징수를 승인하는 권한 4. 피보험자 및 보험급여 관련사항의 보고를 명하는 권한 5. 조합감독권(사업보고, 재산상황 검사와 정관변경) 6. 지역조합 상임대표이사의 취임승인 및 임시대표이사의 선임에 관한 권한 7. 당연적용사업장 조사, 예산편성·변경 승인, 차입승인, 재산처리 승인,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1. 요양기관에 대한 보험급여 심사관계 자료의 요구 2. 조합의 사업보고, 사업 및 재산상황 검사에 관한 지도	1. 피보험자의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서의 수리 2. 의료보험교부 및 피보험자의 민원수리 3. 보험료의 부과징수 단, 위탁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요함.

따라서 地方自治制의 실시에 따라 민선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가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운영방향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며, 中央政府와의 관계여하에 따라 기본적인 조합의 管理運營方式에도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즉, 地方自治團體가 保健福祉部에 대해 보다 많은 권한위임을 요구할 가능성이 많으며 법령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대두되며, 中央政府와 地方自治團體의 醫療保險 운영방침이 지방자치의 정착에 따라 장기적으로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醫療保險組合의 運營은 일단 中央政府(保健福祉部)의 통제하에 있으나, 1994년 12월의 시행령개정에 의해 많은 부분의 권한이 廣域自治團體에 위임될 수 있으며 조합의 업무도 地方自治團體에 위

탁할 수 있도록 되어, 조합운영방향은 中央政府, 廣域自治團體, 基礎自治團體, 聯合會, 組合 등 5자간의 管理運營權 配分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地方自治制가 정착됨에 따라 地方政府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日本의 경우와 같이 地方政府가 醫療保險의 運營主體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第 2節 地方化時代下의 國庫支援方式 檢討

본 절에서는 中央政府로부터 廣域自治團體에 상당한 권한위임이 이루어져 地方政府가 지역내 個別組合間 財政을 調整하여 廣域圈內에서의 재정안정을 시도하는 경우에 地域醫療保險의 財政과 國庫支援方式을 검토하고자 한다.

廣域自治團體가 中央政府로부터 많은 권한을 위임받아 地域組合의 운영에 관여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組合規模를 廣域化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규모의 광역화는 被保險의 適用對象을 넓힘으로서(large sample) 조합의 소규모화로부터 발생하는 疾病發生危險의 組合間 偏差를 줄이게 된다. 따라서 광역지역권내에서 危險調整機能을 하게 됨으로서 共同負擔事業과 같은 橫的위험조정기능과 國庫差等支援의 縱的위험조정기능을 상당 부분 흡수하게 됨으로서 전체적으로 개별조합간 재정력격차를 緩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廣域自治團體別로 재정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광역권의 재정상태가 어떻게 되며, 광역지역간 재정격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는 주로 市, 道別 廣域化(즉, 15개 광역지역)의 경우를 검토하였다.

이 경우 현실적으로는 廣域自治團體내의 시·군·구단위의 개별지역조합이 하나의 법인격으로서의 광역조합으로 통합되지 않는다면 1

단계로 광역지역별로 국고배분이 이루어지고, 2단계로 각 광역지역조합의 대표 (혹은 廣域自治團體)가 지역내 개별조합별로 재배분하는 형태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국고배분정책하에 시, 도별 광역화를 추진하는 경우 〈表 6-2〉, 〈表 6-3〉에서 보듯이 6개 대도시조합의 경우 財政收支가 1992년 125% 내외의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1993년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收支狀況이 後退하고 있으나 여전히 良好한 상태에 있다. 재정자립도의 경우 '92년에는 光州를 제외하고는 85% 이상의 자립도를 시현하고 있으며, '93년에는 전반적으로 自立度가 惡化되면서 都市間 偏差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道의 경우도 지역별로 '93년의 전남을 제외하고 財政收支 黑字를 시현하고 있으나, 재정자립도는 제주도가 비교적 양호한 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92년 80% 이하, '93년 75% 이하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남은 60%로서 매우 취약하다.

〈表 6-2〉 市·道別 廣域化에 의한 保險財政 및 財政力評價指標(1992)

지역	수지율	자립율	국고보조율	소득과표	노인부양비	부양률	급여비	의원분포
서울	124.0	88.8	35.1	40.42	5.4	3.102	4.798	0.829
부산	124.3	87.1	36.7	33.22	6.1	3.334	4.680	0.761
대구	123.8	85.8	37.4	30.55	5.8	3.346	4.558	0.956
인천	127.6	90.6	36.1	28.16	6.4	3.222	4.776	0.749
광주	124.7	80.3	43.4	22.40	6.6	3.405	4.090	0.848
대전	129.8	92.5	36.2	25.26	6.4	3.369	4.799	0.800
경기	118.7	81.4	36.7	21.31	9.2	3.231	4.644	0.496
강원	105.6	68.8	37.0	17.19	11.1	3.499	4.949	0.363
충북	104.6	67.2	37.8	14.56	13.0	3.543	4.740	0.388
충남	108.8	71.1	37.8	15.48	12.6	3.640	4.713	0.427
전북	107.6	69.8	38.3	13.94	12.7	3.541	4.680	0.461
전남	101.7	60.1	42.7	10.67	12.8	3.539	4.376	0.301
경북	113.3	74.9	38.7	16.42	13.4	3.417	4.639	0.348
경남	115.1	76.9	38.1	18.48	10.4	3.467	4.735	0.441
제주	130.3	89.9	40.8	20.75	8.8	3.380	4.298	0.460

〈表 6-3〉 市·道別 廣域化에 의한 保險財政 및 財政力評價指標(1993)

지역	수지율	자립율	국 고 보조율	소득과표	노 인 부양비	부양률	급여비	의원분포
서울	119.2	85.3	33.9	486.14	5.6	3.034	5.480	1.853
부산	110.7	77.9	32.8	380.80	6.4	3.307	5.590	1.082
대구	113.8	79.7	34.1	360.17	6.0	3.289	5.347	1.163
인천	122.0	89.9	32.1	333.80	6.6	3.143	5.501	0.957
광주	115.4	76.0	39.3	279.13	6.2	3.315	4.832	1.107
대전	125.3	87.9	37.4	309.63	6.2	3.280	5.475	0.918
경기	110.7	77.3	33.4	278.54	8.7	3.152	5.718	0.475
강원	102.5	68.9	33.7	209.27	11.5	3.394	5.559	0.149
충북	100.8	66.7	34.0	195.53	13.3	3.447	5.484	0.266
충남	101.7	67.6	34.1	193.92	12.7	3.512	5.503	0.212
전북	100.2	65.9	34.3	173.29	12.9	3.465	5.678	0.281
전남	97.0	61.6	35.4	142.78	13.0	3.423	5.169	0.162
경북	106.4	70.5	35.9	200.97	13.6	3.329	5.363	0.159
경남	106.1	72.5	33.6	228.86	10.8	3.376	5.488	0.286
제주	110.6	74.2	36.4	275.79	8.7	3.317	5.131	0.325

廣域地域別로 財政力評價指標의 추이를 보면, 所得課標와 老人扶養比의 지역별 분포는 보험재정지표의 분포와 일관성이 있다. 즉, 所得課標수준이 높고 老人扶養比가 낮은 지역의 수지상태가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의료보장개혁위원회의 개혁안에 의한 國庫差等配分 결과, 광역지역별 보험재정은 〈表 6-4〉와 같다. 大都市의 國庫負擔金이 감축되어 差等配分확대에 따라 수지율이 후퇴하고 있으며, 道別로는 대체로 國庫負擔金이 증액되어 수지율이 보다 호전되고 있다. 특히 전남지역은 國庫補助率이 가장 높아져 수지균형을 회복하게 된다. 다만, 제주지역은 國庫補助率이 오히려 낮아지게 된다.

〈表 6-4〉 醫療保障改革委員會 改革案의 國庫支援方式에 의한 廣域地域別 國庫配分結果(1993)

지 역	수지율 (1993)	10% 차등배분		15% 차등배분		20% 차등배분	
		수지율	국 고 보조율	수지율	국 고 보조율	수지율	국 고 보조율
서 울	119.2	117.0	31.7	116.3	31.0	115.6	30.3
부 산	110.7	109.5	31.5	109.0	31.1	108.5	30.6
대 구	113.8	112.6	32.9	112.1	32.4	111.6	31.9
인 천	122.0	122.1	32.2	121.7	31.8	121.3	31.5
광 주	115.4	113.0	37.0	112.7	36.7	112.5	36.5
대 전	125.3	120.3	32.4	120.0	32.1	119.6	31.7
경 기	110.7	110.9	33.6	110.9	33.6	111.0	33.7
강 원	102.5	103.1	34.3	103.9	35.0	104.7	35.8
충 북	100.8	101.9	35.1	102.9	36.1	103.9	37.2
충 남	101.7	102.7	35.1	103.7	36.1	104.8	37.1
전 북	100.2	100.6	34.7	102.1	36.1	103.5	37.5
전 남	97.0	100.4	38.8	102.3	40.7	104.1	42.5
경 북	106.4	107.0	36.5	108.3	37.8	109.6	39.1
경 남	106.1	106.9	34.4	107.5	35.0	108.1	35.6
제 주	110.6	109.9	35.7	110.1	35.9	110.4	36.1

綜合財政力指數 Ⅱ에 의한 國庫負擔金의 完全差等配分(제5장 2절 참조)에 따른 국고배분 결과는 〈表 6-5〉 와 같다. 廣域 道의 경우 모두 재정수지가 상당한 黑字로 전환되고, 大都市의 경우 수지상태가 후퇴되고 있으나 그래도 상당한 黑字를 계속 維持하고 있다. 특히 재정이 매우 취약했던 강원, 충남북, 전남북의 경우 현저한 재정수지의 개선이라는 뚜렷한 政策效果를 보이게 된다. 모든 광역지역의 재정이 균형을 초과한 상당한 흑자를 시현하게 됨에 따라 平均保險料를 인하하거나 國庫負擔金을 감축하여도 收支均衡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29]

29) 〈附表 3-2〉 는 보험급여비 國庫負擔金중 20%를 감축하여 종합재정력지수 Ⅱ에 따라 완전차등배분하는 경우의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국고부담금

〈表 6-5〉 綜合財政力指數에 의한 完全差等配分方式에 의한 國庫配分結果(1993)

(단위: %)

地 域	收支率(1993)	完全差等配分에 의한 收支率	國庫補助率
서 울	119.2	112.0	26.7
부 산	110.7	106.6	28.6
대 구	113.8	109.6	29.9
인 천	122.0	120.1	30.2
광 주	115.4	112.1	36.1
대 전	125.3	118.6	30.7
경 기	110.7	111.8	34.5
강 원	102.5	108.7	39.9
충 북	100.8	108.9	42.1
충 남	101.7	109.8	42.1
전 북	100.2	109.1	43.2
전 남	97.0	111.4	49.8
경 북	106.4	114.9	44.4
경 남	106.1	111.3	38.8
제 주	110.6	112.1	37.9

예산을 감축하더라도 廣域地域의 財政健全性은 여전히 확보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廣域化에 의해 지역내의 기존의 지역조합의 財政이 統合·調整됨으로서 흑자조합의 재정이 적자조합을 지원하는 형태로 되어 전체적으로 財政均衡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광역화에 의한 기존 지역조합의 재정상태를 단순히 통합한 형태의 실험결과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광역화에 따른 파급효과로서 기존조합자체의 經營效率化노력이 저해되거나 의료이용행태상 道德的 危害(moral hazard)가 만연해 질 경우 재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조합규모가 커짐으로서 規模의 經濟原理에 의한 관리운영비의 절감으로 관리비지원 부담은 줄어들 수 있으며, 組合內部의 疾病發生確率의 組合間 偏差가 줄어들게 되어 광역지역의 재정이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또한 기존조합의 기능이 醫療費支出을 統制할 수 있는 권한이 내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합규모의 광역화에 따른 道德的 危害문제는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第7章 結論 및 政策的 示唆

본 보고서는 地域醫療保險의 財政安定을 위한 정책방안 가운데 地域組合에 대한 國庫負擔金 配分方式을 評價하고, 지역조합의 財政力에 따라 差等配分하는 改善案의 모색에 있어서 國家豫算運用의 效率性과 衡平性을 제고하는 데에 目的이 있다.

이를 위해 地域組合間 財政力隔差를 측정할 수 있는 要素들의 계량적 분석을 통해 差等配分要素를 선정하고, 선정된 差等配分요소로서 조합별 綜合財政力指數를 산정하여 종합지수에 따라 國庫負擔金을 差等配分하는 方案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금년(1995년)부터 시행된 地方自治制의 실시에 따른 中央政府의 廣域自治團體에 대한 權限委任 등이 의료보험관리운영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廣域自治團體別 조합의 財政調整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國庫負擔金政策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國庫負擔金 배분방안은 1994년 醫療保障改革委員會에서 제안한 國庫負擔金의 差等配分比重을 擴大하는 方案에 기초하고 있는데, 현행 國庫負擔金 배분방안은 保險給與費 國庫負擔金의 일정부분을 年次的으로 '95년 10%, '96년 15%, '96년 20%를 差等配分을 위한 재원으로 조성하여 각 조합간에 差等配分하려는 개혁위원회의 案에 근거하고 있다. 差等配分要素로서 所得課標와 老人扶養比를 이용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 분석대상으로 고려한 差等配分要素로서는 所得課標, 老人扶養比 외에 급여비, 부양율(세대당 피보험자수), 의원의 공급분포 등 5가지이다. 이상의 差等配分요소가 재정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계량분석결과, 기존의 배분요소인 所得課標와 老人扶養比가 차등지표로서 적합하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보조적 차등지표로서 부양율과 급여비 등을 유의한 지표로서 제안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의원의 공급분포는 유의한 지표로서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 단계로서는 所得課標와 老人扶養比 양지표를 差等配分指標로서 이용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장기적으로 醫療利用行態가 안정적으로 定着되는 추이에 따라 扶養率 및 給與費 등을 차등배분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개선안의 기존 國庫負擔金 배분방안에 대한 長點으로서는 첫째, 計量的 分析方法에 의해 差等配分要素를 選定하고, 그 要素로서 조합별 綜合財政力指數를 개발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으며 둘째, 國庫負擔金豫算을 종합재정력지수에 따라 差等配分을 단계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더라도 組合間 衡平性이나 經營上 인센티브를 그다지 沮害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현행 배분방안에 의해서 差等配分을 계속 확대하는 경우에는 上下位 組合間에 財政狀況이 逆戰되는 지나친 차등으로 조합의 경영효율과 형평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本 改善案의 향후 課題와 發展方向은 다음과 같다.

먼저 綜合財政力指數의 算定에 필요한 所得課標가 실질적인 所得水準을 나타내는 代表値가 되기에는 限界가 있다. 대부분의 농어민은 免稅點以下의 소득자가 많으며 事業者의 경우 60% 이상이 면세점이하에 속하며 또한 賣出額의 일정 比率을 標準所得으로 보는 標準所得率 자체가 불완전하며, 특히 매출액중 無資料去來가 상당부분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30]. 따라서 이러한 所得課標를 이용한 계량적 분석결과 얻어지는 係數値를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

30)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차등배분방식에서는 소득파표수준에 따른 격차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된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1995년 7월부터의 農漁村地域의 國民年金의 시행으로 所得把握方法이 보다 改善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1998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都市自營者에 대한 國民年金의 확대는 자영자계층에 대한 소득파악율을 보다 제고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綜合財政力指數의 산정에는 所得課標보다 保險料가 賦課되는 所得을 기준으로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 검토된다.

다음으로 본 개선안의 差等配分方法下에서 國庫負擔金 豫算規模를 節減할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國庫負擔金 전체를 完全差等配分하는 경우에는 國庫支援의 節減에 의하여서도 地域組合이 收支均衡을 維持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절감된 豫算은 재정난에 처해있는 의료보호 혹은 타사회복지부문의 豫算으로 배분되거나 醫療保險 급여범위의 확대에 대비한 豫算확보로 이용하여 豫算운용의 效率性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地方化時代의 出帆에 따라 地域醫療保險조합의 관리운영도 廣域自治團體중심의 자치경영의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中央政府의 조합에 대한 권한이 廣域自治團體에게 위임되는 경우 地域組合이 실질적으로 廣域化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광역지역별로 조합간의 재정조정 혹은 통합운용이 되는 경우 광역조합은 최소한 현상태에서도 수지균형을 유지할 수 있으며, 國庫補助가 일단계로 광역지역별로 배분되고 다음단계로 광역지역차원에서 지역개별조합 혹은 기초자치단체단위로 국고배분액이 재조정됨으로서 지역내의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도 전체 國庫負擔金豫算을 절감하여 지역별 종합재정력지수에 따라 完全差等配分하는 경우 광역단체간 수지균형을 유지할 수 있으며, 廣域自治團體別로 豫算運用의 책임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國庫負擔金의 差等配分 개선안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醫療保險政策

에 대해 시사하는 점을 몇가지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조합내의 高所得自營者에 대한 國庫補助를 중단함으로서 國庫負擔金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필요계층이 지원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은 제안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국고지원은 被保險者 個人에 대한 지원이 아닌 組合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을 유의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야 될 것이다.

구체적 방법으로서 첫번째는 組合內에 所得樣態가 다른 여러 職種의 自營者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분리하여 高所得專門職 自營者의 경우 職種別 組合을 조성하게 함으로서 國庫支援을 中斷하거나 대폭 삭감하는 방안인데, 이 경우 가입자간의 소득파악형태가 다른 직종별로 구분하여 관리함으로서 所得推計上 더 效率的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현재 日本의 경우 職種別 自營者保險과 그외의 地域單位別 自營者保險으로 二元化하여, 후자의 경우에 여러가지 명목의 國庫負擔金이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이러한 自營者保險의 이원화에 의하여 實質的으로 財政力이 낙후한 農漁村地域이나 都市地域의 영세한 자영자 중심의 地域組合에 集中的으로 支援될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는 自營者의 所得把握率이 제고되어 소득비례중심의 保險料賦課體系가 어느 정도 확립되는 경우 所得에 비례하여 國庫負擔金을 保險料의 減免에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세번째로 조합규모를 廣域自治團體別로 광역화하는 방안으로서 廣域自治團體 차원에서 광역지역내의 소득계층간 保險料賦課의 공정을 통한 재정조정으로 실질적인 국고지원의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國庫負擔金 배분정책은 의료보험전체의 高額診療費, 老人醫療費 共同負擔事業에 의한 組合間 財政調整事業과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조합간 橫的 危險調整裝置로서의 財政調整事業은 재정취약조합에 대한 財政移轉效果를 가지는데, 國庫負擔金에 의한 縱的 再分配政策과 어느 쪽에 많은 比重을 둘 것인지에 대한 選擇問題가 제기된다. 前者의 재정조정사업은 제도의 역사가 오래된 先進國型이며 間接的이고 長期的인 재정조정정책이며, 後者의 國庫負擔金의 직접 지원방안은 直接的이고 短期的인 再分配效果를 미친다. 향후 WTO 體制의 출범에 따른 농업의 위축, 그에 따른 농업인구의 감소 등 農漁村地域의 부담능력이 저하될 것으로 보아 短期的이고 强力한 再分配效果를 지니는 國庫負擔金의 直接的인 差等支援이 요망된다. 이와 더불어 조합별 國庫差等支援은 조합간 財政調整事業과 連繫하여 조정될 것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즉 財政調整事業 規模의 擴大는 기존의 國庫負擔金의 配分과 함께 組合에 대한 財政移轉이 얼마나 이루어지느냐를 계측하여 양사업간의 규모와 방법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地域醫療保險 財政은 궁극적으로 地域組合의 財政自立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政策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地域自營者에 대한 保險料의 賦課方法을 개선하는 노력이 계속되어 潛在된 負擔能力을 이끌어내어야 할 것이다. 현재 농림수산부의 통계에 의하면 農家口所得과 都市家口所得간 所得隔差가 거의 없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계속 증대되어온 國庫負擔金의 증가는 곧 限界에 이를 것이므로, 保險料賦課·徵收의 노력과 더불어 國庫支援에 대한 依存을 점차 감소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權純源・梁奉玟,『醫療保險制度의 改善을 위한 政策方案』, 韓國開發研究院, 1990. 7.

權純源,『醫療保險財源調達方式의 改善方案』, 韓國開發研究院, 1993. 12.

權純源・高日東・金寬永・金善雄,『分配不均等의 實態와 主要政策』, 韓國開發研究院, 1992.

金基玉・魯仁喆・柳美女,『地域醫療保險의 保險料 賦課體系 改善方案 研究 -市・郡 統合地域을 중심으로-』, 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94. 12.

金東建,『現代財政學』, 1984.

勞動部,『每月勞動統計調査』, 各年度.

魯仁喆,「地域醫療保險의 國庫支援方式에 관한 再檢討」,『社會保障研究』, 제7권, 1991. 12.

文玉綸,『醫療保險財政安定基金의 造成 및 運用에 관한 研究』, 醫療保險聯合會, 1988.

文鐘國,「地域醫療保險組合의 財政狀態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分析」,『豫防醫學會地』, 제24권 제2호, pp.195~210.

保健社會部,『保健社會白書』, 各年度.

_____,『保健社會統計年報』, 各年度.

延世大學校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地域醫療保險 財政安定化方案에 관한 研究』, 1992. 5.

延河淸,「醫療保險擴大와 財政安定化課題」,『社會保障研究』, 제3권, 韓國社會保障學會, 1987, pp.29~65.

劉承欽・金漢中・李海鐘,「地域醫療保險의 財政 및 赤字要因分析」,『社會保障研究』, 제1권, 1985, pp.151~167.

윤완섭, 『地域醫療保險 國庫支援의 合理的 配分方法에 관한 硏究』,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석사논문), 1994. 6.

醫療保障改革委員會, 『醫療保障改革課題와 政策方向』, 1994. 6.

醫療保險管理公團, 『最近醫保動向』, 제119호, 1995. 11.

_____, 『外國의 醫療保障動向』, 조사자료-30, 1993. 11.

醫療保險聯合會, 『'93 地域醫療保險組合 決算現況(조합별 내역)』, 1994. 9.

_____, 『'92 地域醫療保險組合 決算現況(조합별 내역)』, 1993. 9.

李奎植·金慶淑·金基玉, 『地域醫療保險 示範事業 종합평가 및 財政安定化 방안』, 韓國人口保健硏究院, 1986.

朱鶴中, 『韓國의 所得分配와 決定要因(下)』, 韓國開發硏究院, 1982.

崔秉浩, 「地域醫療保險의 國庫補助金 支援方式 改善方案」, 『社會保障硏究』제10권 제2호, 韓國社會保障學會, 1994. 12.

韓國保健社會硏究院, 『地域醫療保險의 財政安定化를 위한 運營實態 評價 및 改善方案』, 1991. 11.

韓國銀行, 『國民計定』, 各年度.

日本 厚生統計協會, 『保險と年金の動向』, 제41권 제14호, 1994. 11.

村上雅子, 『社會保障の經濟學』, 東洋經濟新聞社, 1984.

Mizoguchi, T. and Noriyuki Takayama, *Equity and Poverty under Rapid Economic Growth: The Japanese Experience*, Kinokuniya Company Ltd., Tokyo, 1984.

NERA(National Economic Research Associates), *The Reform of Health Insurance in Korea*, 1994.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1993*, May 1994.

附　　錄

附錄 Ⅰ. 1992年 地域醫療保險組合의 財政指標

〈附表 1〉 組合別 保險財政指標 및 財政力 評價指標(1992)

시·도명	조합명	수지율	자립도	국고보조율	보험료	국고부담금	급여비	소득과표	노인부양비	부양률	의원분포
서울시	종로구	124.9	88.0	36.9	4.111	1.754	4.673	388.3	6.49	2.86	1.47
	중 구	119.3	85.6	33.6	4.192	1.684	4.896	359.2	6.17	2.87	1.55
	용산구	119.6	86.6	33.0	4.225	1.651	4.876	398.7	6.36	2.93	0.80
	성동구	121.2	85.8	35.3	4.174	1.746	4.860	364.5	4.80	3.16	0.65
	동대문	114.2	79.7	34.5	3.921	1.693	4.918	299.3	5.10	3.05	0.72
	중랑구	118.2	81.0	37.2	3.808	1.731	4.703	266.1	4.59	3.20	0.51
	성북구	125.6	89.4	36.3	4.118	1.669	4.609	279.4	5.58	3.12	0.59
	도봉구	118.6	83.6	35.0	4.129	1.695	4.941	302.7	5.24	3.19	0.57
	노원구	119.8	84.8	35.0	4.188	1.702	4.939	318.1	5.61	3.06	0.61
	은평구	125.3	88.8	36.5	4.097	1.674	4.616	356.8	5.53	3.12	0.62
	서대문	122.3	88.0	34.3	4.200	1.662	4.772	326.7	5.84	3.07	0.71
	마포구	127.4	92.4	35.0	4.358	1.652	4.718	367.9	5.72	2.98	0.74
	강서구	116.9	82.6	34.3	4.023	1.600	4.871	382.3	5.27	3.20	0.74
	양천구	127.5	92.7	34.8	4.429	1.637	4.776	455.9	5.01	3.25	0.58
	구로구	123.0	85.6	37.4	3.938	1.720	4.599	346.2	4.32	3.12	0.62
	영등포	127.0	91.3	35.7	4.399	1.717	4.820	439.5	4.98	3.08	0.86
	동작구	119.3	83.8	35.5	4.016	1.710	4.793	358.6	5.29	3.07	0.71
	관악구	126.4	86.1	40.3	3.736	1.753	4.339	294.8	4.46	3.12	0.61
	강남구	136.0	103.4	32.6	5.054	1.557	4.888	902.5	6.52	3.13	1.55
	서초구	138.5	106.0	32.5	5.337	1.635	5.035	822.8	6.29	3.22	1.36
	강동구	128.5	94.5	34.0	4.601	1.666	4.869	352.7	5.13	3.16	0.74
	송파구	127.4	92.9	34.5	4.690	1.732	5.047	510.0	5.26	3.18	0.84
부산시	중 구	125.2	91.4	33.9	4.634	1.745	5.072	492.4	7.25	3.02	1.91
	서 구	112.9	79.0	34.0	4.056	1.734	5.137	319.9	7.36	3.31	0.80
	동 구	122.2	85.9	36.3	4.116	1.738	4.790	285.4	6.48	3.28	0.91
	영도구	119.0	83.2	35.7	4.135	1.761	4.967	272.6	6.48	3.38	0.54
	진 구	126.5	88.3	38.1	4.066	1.735	4.603	341.2	5.19	3.35	0.99
	동래구	136.3	95.8	40.5	4.187	1.758	4.372	409.1	5.27	3.34	0.71
	금정구	130.6	90.1	40.6	3.954	1.779	4.391	369.5	5.21	3.35	0.60
	남 구	127.1	89.5	37.6	4.208	1.751	4.699	382.1	5.21	3.37	0.65
	북 구	131.1	90.1	41.0	3.784	1.650	4.198	312.0	4.53	3.36	0.65
	사하구	119.0	85.6	33.4	4.118	1.539	4.812	344.0	5.44	3.42	0.72
	해운대	122.5	83.4	39.1	3.694	1.657	4.429	285.8	5.72	3.34	0.56
	강서구	119.1	82.5	36.6	3.871	1.701	4.694	172.6	8.61	3.43	0.04
대구시	중 구	127.0	88.6	38.3	4.066	1.786	4.586	388.5	7.16	3.07	2.89
	동 구	118.5	81.8	36.7	3.844	1.700	4.698	232.6	6.07	3.34	0.58
	서 구	121.1	82.5	38.6	3.773	1.763	4.575	255.5	5.04	3.42	0.70
	남 구	131.5	91.0	40.5	4.082	1.803	4.486	308.6	5.81	3.26	0.55
	달서구	118.5	83.4	35.0	3.863	1.586	4.631	286.5	5.05	3.48	0.82
	북 구	125.2	86.8	38.4	3.913	1.683	4.511	286.5	5.57	3.42	0.47
	수성구	124.9	86.6	38.2	3.826	1.617	4.417	380.6	6.08	3.39	0.65

〈附表 1〉 계속

시·도명	조합명	수지율	자립도	국고보조율	보험료	국고부담금	급여비	소득과표	노인부양비	부양률	의원분포
인천시	중 구	137.5	102.1	35.5	5.007	1.760	4.906	348.8	9.30	3.07	1.24
	동 구	128.8	91.9	36.9	4.510	1.818	4.908	215.0	7.20	3.05	0.63
	남 구	129.8	90.1	39.8	4.174	1.777	4.635	321.9	6.25	3.27	0.78
	남동구	125.9	90.1	35.8	4.268	1.610	4.735	272.0	5.60	3.31	0.57
	북 구	120.7	83.3	37.5	3.901	1.700	4.684	279.7	5.14	3.28	0.65
	서 구	122.8	86.1	36.7	4.118	1.670	4.785	252.0	5.07	3.33	0.59
광주시	동 구	128.8	83.8	45.0	3.381	1.847	4.037	299.8	6.63	3.34	1.73
	북 구	126.0	76.8	49.3	3.035	1.880	3.952	233.6	5.09	3.41	0.65
	서 구	120.9	77.2	43.7	3.194	1.788	4.135	228.5	5.32	3.49	0.57
	광산구	123.1	83.5	39.6	3.536	1.563	4.235	134.1	9.34	3.35	0.42
대전시	동 구	124.8	88.0	36.8	4.323	1.775	4.913	230.2	5.85	3.34	0.73
	중 구	126.6	89.6	37.0	4.407	1.810	4.921	316.3	6.09	3.29	1.56
	서 구	132.0	96.4	35.6	4.459	1.577	4.625	276.6	5.28	3.43	0.69
	유성구	135.1	94.5	40.6	4.400	1.823	4.655	180.1	9.46	3.46	0.53
	대덕구	130.6	94.1	36.5	4.594	1.698	4.880	259.7	5.16	3.31	0.47
경기도	장안구	116.1	80.0	36.1	3.822	1.686	4.777	291.6	5.81	3.26	0.94
(수원)	권선구	132.7	93.4	39.3	4.245	1.759	4.543	290.9	5.87	3.28	0.60
(부천)	중 구	118.0	83.3	34.7	3.997	1.610	4.798	276.7	4.55	3.25	0.76
	남 구	121.8	88.5	33.4	4.153	1.558	4.694	294.8	4.77	3.17	0.63
(성남)	중원구	123.4	79.9	43.5	3.474	1.747	4.347	215.0	5.18	3.35	0.39
	수정구	121.5	82.6	39.0	3.835	1.797	4.643	170.5	5.15	3.31	0.58
	안양시	131.7	90.9	40.8	3.887	1.615	4.276	320.2	5.63	3.15	0.70
	광명시	120.0	86.8	33.3	4.127	1.546	4.756	355.5	8.64	3.02	0.67
	안산시	121.1	88.3	32.8	4.075	1.413	4.616	269.7	4.69	3.07	0.78
	과천시	134.3	99.9	34.4	5.104	1.761	5.108	450.3	8.47	2.74	0.84
	구리시	126.6	85.7	41.0	3.841	1.803	4.484	227.2	5.77	3.04	0.51
	동두천	141.1	100.6	40.5	4.315	1.704	4.289	227.3	7.53	3.02	0.53
	의정부	127.4	89.0	38.4	3.873	1.623	4.349	222.3	5.57	3.05	0.62
	평택시	130.8	91.5	39.3	4.201	1.801	4.592	280.3	6.71	3.13	1.02
	송탄시	120.6	82.9	37.7	3.831	1.683	4.619	217.7	6.30	3.09	0.71
	군포시	131.3	84.4	46.8	3.340	1.723	3.956	255.5	4.68	3.00	0.53
	의왕시	116.1	77.7	38.4	3.080	1.542	3.962	209.0	5.82	2.92	0.53
	시흥시	108.0	66.7	41.4	2.979	1.789	4.468	193.1	6.47	3.01	0.35
	하남시	113.9	80.1	33.8	4.072	1.710	5.084	150.8	6.90	3.20	0.47
	오산시	128.1	91.2	36.9	4.242	1.680	4.653	268.2	6.17	3.37	1.00
	미금시	117.4	78.4	39.0	3.524	1.709	4.494	188.8	3.33	3.12	0.34
	고양시	104.1	67.9	36.2	3.286	1.669	4.842	197.7	6.78	2.94	0.45
강원도	춘천시	105.8	73.0	32.9	3.930	1.728	5.385	272.4	7.65	3.16	0.66
	원주시	117.0	80.2	36.7	4.327	1.944	5.393	280.8	7.47	3.21	0.77
	강릉시	118.1	81.2	36.9	3.920	1.763	4.830	308.8	7.19	3.27	0.61
	삼척시	108.6	74.3	34.3	3.755	1.720	5.055	334.5	7.55	3.25	0.69
	동해시	102.9	67.1	35.8	3.313	1.746	4.941	296.9	7.33	3.30	0.59

〈附表 1〉 계속

시·도명	조합명	수지율	자립도	국고보조율	보험료	국고부담금	급여비	소득과표	노인부양비	부양률	의원분포
강원도	태백시	93.8	58.8	35.0	3.786	2.248	6.436	217.0	6.03	3.38	0.69
	속초시	101.1	66.4	34.8	3.371	1.731	5.080	315.4	8.57	3.26	0.61
충청북도	청주시	111.7	76.5	35.2	3.824	1.714	5.001	271.6	5.74	3.44	0.89
	충주시	107.0	66.1	40.9	2.926	1.769	4.427	255.0	7.36	3.47	0.51
	제천시	122.1	82.9	39.2	3.707	1.728	4.474	277.7	7.46	3.38	0.67
충청남도	천안시	120.8	83.3	37.5	3.818	1.662	4.584	338.4	6.60	3.27	0.93
	공주시	124.8	82.7	42.1	3.361	1.671	4.063	244.8	8.15	3.59	0.94
	대천시	113.9	73.7	40.2	3.508	1.912	4.759	318.6	7.04	3.54	0.70
	온양시	105.9	72.9	32.9	3.591	1.582	4.924	251.5	7.40	3.32	0.89
	서산시	117.1	77.1	40.1	3.379	1.766	4.385	271.5	8.16	3.53	0.78
전라북도	완산구	114.9	77.0	37.9	3.610	1.753	4.689	238.3	6.61	3.51	1.07
	덕진구	122.0	82.8	39.2	3.857	1.827	4.656	249.6	6.30	3.55	0.99
(전주)	군산시	126.4	85.5	40.9	3.764	1.774	4.404	269.5	6.74	3.33	0.79
	이리시	120.9	81.9	39.1	3.783	1.744	4.621	230.3	6.23	3.39	0.93
	정주시	100.1	66.3	33.8	3.350	1.687	5.052	232.1	8.49	3.59	1.17
	남원시	107.8	70.7	37.1	3.372	1.760	4.769	283.6	7.30	3.47	0.79
	김제시	119.0	80.0	39.0	3.449	1.681	4.312	198.8	0.53	3.44	0.66
전라남도	목포시	102.0	64.2	37.8	3.259	1.901	5.073	255.9	6.53	3.62	0.69
	여수시	114.1	74.0	40.2	3.333	1.794	4.507	193.6	6.11	3.64	0.55
	여천시	116.1	75.6	40.5	3.366	1.778	4.451	123.1	7.60	3.70	0.39
	순천시	112.2	72.5	39.7	3.187	1.704	4.392	194.8	6.08	3.47	0.89
	나주시	111.6	70.2	41.3	2.994	1.763	4.262	206.7	0.00	3.27	0.88
	동광양	107.4	70.4	37.0	3.162	1.705	4.490	156.6	6.20	3.66	0.35
경상북도	포항시	136.8	97.4	39.5	4.377	1.740	4.496	383.0	5.46	3.35	0.81
	경주시	120.8	83.2	37.6	3.867	1.720	4.649	292.0	8.51	3.21	0.53
	김천시	119.7	83.7	36.0	4.039	1.718	4.828	324.6	8.62	3.48	0.89
	안동시	124.0	84.6	39.3	3.853	1.789	4.553	284.2	8.08	3.40	0.65
	구미시	121.8	86.8	35.0	4.414	1.731	5.088	373.7	5.09	3.34	1.16
	영주시	126.4	78.5	47.8	3.008	1.823	3.830	275.2	8.07	3.44	0.44
	영천시	113.1	77.1	36.0	3.917	1.799	5.081	256.3	8.81	3.36	0.84
	상주시	110.1	76.1	34.0	3.765	1.684	4.948	201.5	0.58	3.42	0.46
	점촌시	131.2	86.4	44.8	3.643	1.887	4.216	235.5	8.00	3.55	0.60
	경산시	121.9	78.1	43.9	3.524	1.911	4.514	309.8	6.89	3.06	0.75
경상남도	중구	127.5	88.2	39.3	3.961	1.733	4.490	359.2	4.54	3.29	1.00
	남구	135.1	93.6	41.5	4.187	1.831	4.472	409.2	3.93	3.39	0.67
(울산)	동구	128.6	92.3	36.4	4.368	1.690	4.735	216.5	5.09	3.38	1.16
	마산시	127.5	92.4	35.1	4.379	1.673	4.739	339.8	5.37	3.32	0.91
	창원시	125.1	88.4	36.7	4.598	1.806	5.202	363.5	4.07	3.32	0.85
	진주시	132.8	93.6	39.2	4.208	1.758	4.497	282.3	5.72	3.54	0.50
	진해시	107.7	74.9	32.9	4.032	1.763	5.388	242.3	7.45	3.23	0.78
	충무시	132.3	90.2	42.0	3.869	1.796	4.288	268.3	6.19	3.58	0.40
	삼천포	114.8	73.7	41.0	3.423	1.888	4.642	208.3	8.32	3.66	0.37

〈附表 1〉 계속

시·도명	조합명	수지율	자립도	국고보조율	보험료	국고부담금	급여비	소득과표	노인부양비	부양률	의원분포
경상남도	김해시	131.5	86.0	45.5	3.643	1.807	4.236	247.8	5.24	3.24	0.69
	밀양시	137.2	96.7	40.5	4.167	1.734	4.309	268.5	8.42	3.40	0.82
	장승포	109.8	78.6	31.2	4.608	1.788	5.861	238.5	6.93	3.22	0.89
제주도	제주시	146.9	105.5	41.4	4.404	1.711	4.174	366.1	5.60	3.16	1.13
	서귀포	127.9	86.4	41.5	3.781	1.828	4.373	231.8	7.34	3.32	0.43
<군>											
경기도	강화군	101.9	67.7	34.2	3.380	1.746	4.991	123.5	16.32	3.63	0.25
	양주군	118.1	78.7	39.4	3.598	1.764	4.569	180.0	9.31	3.27	0.17
	여주군	134.6	91.3	43.2	3.724	1.755	4.078	131.5	12.15	3.54	0.23
	평택군	118.5	86.1	32.4	4.437	1.690	5.151	139.3	11.24	3.18	0.20
	파주군	110.6	74.1	36.5	3.559	1.753	4.801	168.8	10.71	3.19	0.54
	연천군	103.3	68.2	35.0	3.380	1.732	4.952	132.6	12.10	3.39	0.22
	포천군	113.8	79.9	33.8	4.144	1.732	5.186	170.6	11.59	3.46	0.34
	가평군	111.0	74.8	36.1	3.550	1.712	4.746	145.1	13.24	3.43	0.34
	양평군	99.9	65.7	34.3	3.311	1.741	5.042	114.7	15.72	3.39	0.19
	이천군	125.5	88.3	37.2	4.138	1.754	4.686	154.9	10.46	3.50	0.48
	용인군	124.4	87.0	37.4	3.996	1.675	4.593	200.6	9.33	3.33	0.51
	안성군	106.5	71.2	35.4	3.339	1.674	4.692	153.9	30.00	3.51	0.40
	김포군	105.6	70.4	35.2	3.503	1.733	4.976	214.2	10.16	3.36	0.42
	웅진군	97.1	62.1	35.0	2.840	1.645	4.569	134.0	16.43	3.31	0.08
	광주군	121.0	81.3	39.8	3.649	1.757	4.491	212.5	10.22	3.29	0.38
	화성군	122.4	85.9	36.5	3.895	1.651	4.534	169.0	11.34	3.45	0.23
	남양주	109.8	72.4	37.4	3.401	1.696	4.697	190.4	8.49	3.14	0.27
강원도	홍천군	99.9	65.3	34.5	3.394	1.825	5.193	122.5	13.30	3.74	0.30
	춘천군	105.0	71.4	33.6	3.721	1.778	5.214	84.7	14.88	3.49	0.12
	횡성군	108.4	70.0	38.4	3.270	1.824	4.672	96.5	15.03	3.65	0.07
	원주군	106.8	73.2	33.7	3.853	1.784	5.265	88.6	13.83	3.45	0.04
	영월군	96.2	60.2	36.0	2.881	1.759	4.786	179.8	12.19	3.52	0.33
	평창군	107.4	66.1	41.3	2.797	1.788	4.231	100.5	12.81	3.78	0.20
	정선군	97.9	60.4	37.5	2.784	1.743	4.608	110.6	10.26	3.61	0.45
	철원군	100.6	68.0	32.6	3.851	1.877	5.667	99.8	13.28	3.70	0.26
	화천군	109.1	72.2	36.9	3.709	1.908	5.136	112.1	13.58	3.46	0.31
	양구군	112.4	72.8	39.6	3.471	1.926	4.769	105.3	12.56	3.73	0.15
	인제군	106.4	66.8	39.6	2.940	1.783	4.400	134.8	13.25	3.64	0.24
	고성군	110.3	66.1	44.3	2.659	1.824	4.024	132.4	12.21	3.55	0.11
	양양군	104.2	63.1	41.1	2.827	1.870	4.482	136.2	13.18	3.61	0.15
	명주군	104.2	68.1	36.1	3.216	1.683	4.724	144.2	11.26	3.58	0.21
	삼척군	106.7	69.9	36.8	3.209	1.738	4.594	106.9	11.67	3.54	0.33
충청북도	보은군	91.3	57.1	34.2	2.938	1.850	5.150	123.2	16.43	3.72	0.27
	청원군	98.6	64.9	33.7	3.267	1.698	5.033	93.1	12.86	3.59	0.13
	옥천군	105.7	67.9	37.8	3.123	1.767	4.597	120.1	15.46	3.47	0.39
	영동군	94.7	56.8	37.9	2.651	1.787	4.669	102.3	16.10	3.57	0.35
	진천군	103.0	69.0	34.1	3.530	1.769	5.119	138.8	13.15	3.38	0.73

〈附表 1〉 계속

시·도명	조합명	수지율	자립도	국 고 보조율	보험료	국 고 부담금	급여비	소득 과표	노 인 부양비	부양률	의원 분포
충 청	괴산군	102.7	66.9	35.9	3.199	1.751	4.783	102.2	14.11	3.51	0.37
북 도	음성군	106.2	70.6	35.5	3.518	1.810	4.982	107.2	14.43	3.71	0.34
	중원군	106.4	63.8	42.6	2.944	2.006	4.616	79.4	16.19	3.64	0.09
	제천군	104.8	66.4	38.5	3.018	1.820	4.547	87.0	17.10	3.55	0.08
	단양군	105.8	64.9	40.9	2.745	1.767	4.227	134.6	13.02	3.57	0.15
충 청	금산군	96.7	63.7	33.0	3.360	1.796	5.274	92.4	12.71	3.67	0.46
남 도	연기군	104.3	72.5	31.8	3.890	1.670	5.364	167.6	16.50	3.66	0.57
	공주군	107.8	65.3	42.5	2.816	1.844	4.314	75.7	15.90	3.89	0.16
	논산군	112.0	69.6	42.5	3.223	2.008	4.632	136.1	13.38	3.63	0.44
	부여군	108.2	67.9	40.4	3.061	1.866	4.508	102.3	14.38	3.68	0.29
	서천군	105.2	68.9	36.3	3.522	1.900	5.113	133.3	14.87	3.61	0.51
	보령군	96.4	61.2	35.3	3.041	1.778	4.979	67.4	14.14	3.69	0.09
	청양군	95.3	61.5	33.9	3.106	1.729	5.054	76.5	17.14	3.70	0.31
	홍성군	109.6	71.5	38.1	3.245	1.771	4.541	137.4	13.84	3.65	0.30
	예산군	109.9	71.2	38.7	3.147	1.729	4.420	115.3	13.51	3.73	0.32
	당진군	108.6	72.6	36.1	3.580	1.799	4.934	133.1	12.89	3.79	0.27
	아산군	98.4	65.0	33.4	3.215	1.584	4.945	115.6	14.12	3.72	0.08
	천안군	112.2	76.9	35.3	3.718	1.706	4.837	159.2	13.24	3.53	0.16
	서산군	115.2	75.2	40.1	3.337	1.816	4.440	76.3	13.85	3.77	0.09
	태안군	113.1	70.3	42.8	2.942	1.850	4.187	82.5	13.42	3.75	0.16
전 라	옥구군	112.9	68.6	44.3	3.509	2.306	5.115	111.3	12.16	3.65	0.09
북 도	완주군	102.1	64.5	37.6	3.061	1.789	4.746	101.4	13.41	3.60	0.18
	진안군	94.9	59.2	35.6	2.772	1.739	4.680	62.1	16.62	3.57	0.17
	무주군	100.9	61.1	39.8	2.669	1.786	4.371	78.0	16.45	3.66	0.25
	장수군	91.6	55.9	35.8	2.607	1.723	4.669	68.1	16.00	3.72	0.34
	임실군	104.5	68.2	36.3	3.143	1.711	4.609	84.2	16.08	3.55	0.35
	남원군	114.3	73.5	40.8	3.293	1.887	4.480	50.7	18.58	3.61	0.06
	순창군	97.0	61.1	35.9	3.036	1.836	4.966	71.9	18.85	3.56	0.19
	정읍군	103.5	68.1	35.5	3.367	1.794	4.947	59.4	16.79	3.49	0.23
	고창군	97.3	60.4	36.9	3.006	1.884	4.976	82.9	15.59	3.61	0.29
	부안군	107.9	69.0	38.9	3.079	1.754	4.463	114.3	13.17	3.43	0.27
	익산군	108.9	72.8	36.1	3.348	1.702	4.602	136.2	13.03	3.52	0.22
	김제군	104.9	68.6	36.3	3.076	1.672	4.482	66.2	15.52	3.48	0.10
전 라	담양군	104.7	60.3	44.5	2.440	1.873	4.047	86.9	15.54	3.42	0.21
남 도	곡성군	103.7	61.6	42.1	2.543	1.801	4.127	91.5	18.02	3.42	0.31
	구례군	100.2	59.4	40.8	2.584	1.800	4.351	94.7	15.50	3.65	0.20
	여천군	102.3	60.0	42.3	2.539	1.859	4.232	79.6	14.68	3.99	0.06
	승주군	108.6	62.4	46.2	2.596	1.983	4.160	65.7	15.62	3.53	0.05
	고흥군	97.8	48.6	49.3	2.036	2.144	4.193	76.7	15.53	3.63	0.18
	보성군	107.1	65.5	41.6	2.775	1.829	4.234	92.6	15.40	3.50	0.31
	화순군	114.2	67.9	46.2	2.605	1.783	3.834	94.4	13.80	3.22	0.22
	장흥군	86.0	52.7	33.4	2.756	1.782	5.231	96.7	14.11	3.58	0.20

〈附表 1〉 계속

시·도명	조합명	수지율	자립도	국고보조율	보험료	국고부담금	급여비	소득과표	노인부양비	부양율	의원분포
전라	강진군	96.6	57.7	38.9	2.676	1.849	4.635	110.2	15.31	3.41	0.19
남도	해남군	88.7	48.4	40.4	2.229	1.904	4.608	77.8	13.09	3.67	0.27
	영암군	98.6	57.8	40.9	2.612	1.916	4.521	81.6	13.44	3.43	0.23
	무안군	92.4	53.3	39.1	2.427	1.812	4.556	72.9	13.18	3.53	0.21
	나주군	99.4	52.8	46.6	2.200	2.025	4.163	66.1	15.36	3.29	0.15
	함평군	103.4	55.0	48.4	2.194	2.016	3.985	67.0	14.83	3.23	0.28
	영광군	85.6	51.9	33.7	2.744	1.856	5.289	76.6	12.74	3.56	0.24
	장성군	102.8	60.2	42.5	2.602	1.921	4.321	81.2	14.52	3.26	0.26
	완도군	93.9	49.9	44.0	1.927	1.805	3.859	85.9	13.12	3.76	0.15
	진도군	99.8	54.0	45.8	2.091	1.853	3.871	59.0	13.15	3.52	0.20
	신안군	94.7	52.6	42.1	2.308	1.951	4.387	49.8	14.35	3.65	0.05
	광양군	102.0	62.9	39.1	2.746	1.731	4.368	142.8	10.63	3.82	0.30
경상	군위군	108.3	71.2	37.1	3.467	1.846	4.871	79.1	18.49	3.36	0.09
북도	달성군	117.8	80.9	36.9	3.994	1.757	4.936	198.2	9.75	3.26	0.26
	의성군	108.5	69.5	39.1	3.150	1.840	4.536	92.5	16.58	3.37	0.19
	안동군	112.7	75.7	37.0	3.566	1.808	4.712	57.3	17.93	3.41	0.06
	청송군	109.5	69.7	39.8	3.006	1.756	4.311	79.6	15.46	3.44	0.17
	영양군	124.4	77.8	46.6	2.846	1.759	3.658	73.5	15.43	3.57	0.06
	영덕군	102.4	64.4	38.0	2.915	1.775	4.524	139.5	13.99	3.33	0.12
	영일군	119.7	84.0	35.7	4.003	1.673	4.765	147.8	11.05	3.41	0.21
	경주군	105.2	70.6	34.5	3.552	1.737	5.027	128.9	15.62	3.44	0.23
	영천군	109.3	73.2	36.1	3.613	1.829	4.935	66.9	15.92	3.37	0.07
	청도군	107.9	70.7	37.2	3.412	1.839	4.827	103.8	17.65	3.34	0.25
	고령군	117.9	79.4	38.5	3.713	1.809	4.676	117.9	15.98	3.43	0.09
	성주군	115.4	78.2	37.2	3.844	1.868	4.918	90.6	14.19	3.42	0.19
	칠곡군	117.6	83.1	34.4	4.171	1.695	5.017	177.5	12.36	3.33	0.24
	금릉군	95.2	60.6	34.6	2.980	1.742	4.915	59.7	18.72	3.50	0.81
	선산군	95.9	63.8	32.1	3.469	1.742	5.436	127.5	16.36	3.50	0.19
	상주군	104.7	67.9	36.8	3.292	1.837	4.848	51.1	21.54	3.44	0.11
	문경군	102.2	65.0	37.2	3.104	1.828	4.776	60.4	18.61	3.64	0.13
	예천군	107.1	67.7	39.4	2.992	1.790	4.419	97.2	19.87	3.45	0.15
	영풍군	113.6	70.1	43.5	2.745	1.766	3.917	77.7	16.85	3.67	0.11
	봉화군	105.6	61.6	44.0	2.421	1.772	3.931	89.1	16.39	3.73	0.17
	울진군	101.6	59.7	41.9	2.526	1.780	4.229	139.8	15.19	3.39	0.26
	울릉군	96.8	59.3	37.5	2.826	1.863	4.764	201.6	9.94	3.21	0.13
	경산군	128.5	90.3	38.3	4.132	1.711	4.577	188.8	12.30	3.39	0.24
경상	진양군	112.9	74.1	38.8	3.544	1.876	4.786	75.2	11.74	3.76	0.07
남도	의령군	103.4	67.6	35.7	3.177	1.700	4.697	47.1	14.99	3.30	0.38
	함안군	100.3	66.3	34.1	3.475	1.785	5.244	134.7	12.89	3.30	0.24
	창녕군	117.9	77.8	40.0	3.588	1.888	4.610	120.9	12.17	3.33	0.31
	양산군	117.7	77.9	39.7	3.644	1.740	4.675	221.0	9.44	3.34	0.45
	울산군	111.6	74.5	37.0	3.705	1.803	4.971	181.2	11.02	3.27	0.22

〈附表 1〉 계속

시·도명	조합명	수지율	자립도	국고 보조율	보험료	국고 부담금	급여비	소득 과표	노인 부양비	부양률	의원 분포
경상	김해군	113.1	75.0	38.1	3.468	1.715	4.624	170.5	10.41	3.47	0.21
남도	창원군	116.5	79.3	37.2	3.897	1.783	4.917	152.6	11.37	3.48	0.15
	통영군	108.2	68.0	40.1	2.922	1.817	4.295	135.9	12.67	3.80	0.03
	고성군	99.9	63.3	36.6	3.233	1.936	5.109	122.7	13.45	3.60	0.10
	사천군	99.6	61.9	37.7	3.309	2.046	5.346	95.0	12.97	3.64	0.11
	남해군	105.6	66.2	39.3	2.961	1.792	4.471	97.4	20.02	3.53	0.15
	하동군	109.6	72.1	37.5	3.373	1.786	4.679	99.0	16.06	3.71	0.18
	산청군	104.3	66.6	37.7	3.216	1.850	4.826	81.2	14.84	3.57	0.20
	함양군	94.1	57.3	36.8	2.708	1.760	4.729	100.2	15.40	3.58	0.28
	거창군	102.4	63.7	38.7	2.823	1.730	4.430	139.6	15.22	3.52	0.28
	합천군	106.8	65.4	41.4	2.842	1.813	4.344	95.3	10.32	3.54	0.30
	밀양군	128.9	86.0	42.9	3.500	1.771	4.069	76.5	14.23	3.56	0.60
	거제군	105.2	71.4	33.9	3.652	1.737	5.117	137.7	11.17	3.45	0.23
제주도	북제주	121.5	81.8	39.6	3.496	1.726	4.272	112.8	12.40	3.40	0.12
	남제주	125.2	85.7	39.5	3.747	1.755	4.373	119.4	9.84	3.62	0.14

註: 수지율=(보험료수입 + 국고 보조금)/보험급여비(%)
자립도=보험료수입/보험급여비(%)
국고 보조율=국고부담금/보험급여비(%)
보험료=1인당 평균 월 보험료(천원)
국고부담금=1인당 평균 월 국고부담금(천원)
급여비=1인당 평균 월 급여비(천원)
소득과표=1인당 평균 월 소득과표(천원)
노인부양비=65세이상인구/70~64세인구(%)
부양율=세대당 평균 피보험자수
의원분포=인구 1000인당 의원수

附錄Ⅱ. 1993年 地域醫療保險組合의 財政指標

〈附表 2〉 組合別 保險財政指標 및 財政力 評價指標(1993)

시,도명	조합명	수지율	자립도	국고보조율	보험료	국고부담금	급여비	소득과표	노인부양비	부양율	의원분포
서울시	종로구	124.0	89.7	34.3	4.670	1.796	5.207	494.0	6.83	2.82	1.88
	중 구	111.9	78.9	33.0	4.471	1.898	5.663	491.4	7.00	2.82	1.77
	용산구	117.7	86.0	31.7	4.911	1.819	5.708	489.0	6.74	2.86	1.02
	성동구	111.5	80.8	30.7	4.553	1.734	5.636	435.2	4.92	3.09	2.64
	동대문	115.2	80.5	34.7	4.565	1.969	5.670	361.9	5.29	2.98	2.03
	중랑구	114.9	78.5	36.4	4.117	1.872	5.246	319.3	4.54	3.14	1.36
	성북구	117.1	82.7	34.4	4.469	1.860	5.402	332.9	5.85	3.04	1.85
	도봉구	112.3	77.9	34.4	4.317	1.853	5.541	377.8	5.31	3.13	2.23
	노원구	114.9	84.4	30.5	4.638	1.648	5.496	402.8	5.83	3.04	1.52
	은평구	126.1	89.5	36.6	4.647	1.867	5.194	418.3	5.56	3.07	1.43
	서대문	119.2	84.5	34.7	4.669	1.914	5.523	400.3	6.08	3.00	1.37
	마포구	124.1	89.4	34.7	4.912	1.882	5.492	437.3	5.95	2.91	1.52
	강서구	116.4	82.2	34.2	4.234	1.673	5.152	451.4	5.27	3.12	1.38
	양천구	120.3	85.0	35.3	4.631	1.913	5.448	501.5	5.04	3.17	1.31
	구로구	115.0	80.7	34.3	4.369	1.843	5.413	374.8	4.37	3.04	2.17
	영등포	118.0	83.9	34.1	4.778	1.929	5.692	498.5	5.07	2.99	1.88
	동작구	114.4	80.9	33.5	4.497	1.823	5.557	436.0	5.49	3.00	1.50
	관악구	113.5	79.0	34.5	4.062	1.748	5.142	351.7	4.56	3.05	1.85
	강남구	134.9	101.2	33.7	5.566	1.849	5.498	1072.6	6.47	3.12	3.32
	서초구	131.6	99.3	32.3	5.719	1.866	5.762	977.2	6.38	3.11	2.11
	강동구	124.4	89.8	34.6	4.899	1.888	5.455	419.7	5.27	3.12	2.02
	송파구	124.1	91.6	32.5	5.186	1.819	5.661	651.2	5.29	3.12	2.60
부산시	중 구	112.2	82.8	29.4	5.140	1.869	6.211	568.7	7.70	2.99	0.88
	서 구	99.50	70.3	29.2	4.309	1.802	6.125	365.6	7.50	3.30	0.67
	동 구	115.6	80.9	34.7	4.425	1.907	5.472	325.1	7.30	3.27	0.79
	영도구	104.6	74.7	29.9	4.502	1.777	6.030	325.0	6.96	3.35	0.51
	진 구	109.6	77.3	32.3	4.185	1.732	5.412	392.5	5.62	3.32	2.19
	동래구	115.8	81.9	33.9	4.321	1.783	5.275	437.7	5.24	3.31	1.96
	금정구	119.1	83.1	36.0	4.341	1.887	5.224	402.6	5.47	3.34	0.86
	남 구	110.9	77.8	33.1	4.284	1.824	5.507	436.3	5.87	3.34	1.60
	북 구	110.1	75.1	35.0	3.764	1.674	5.009	366.7	4.37	3.38	1.55
	사하구	114.5	81.8	32.7	4.663	1.815	5.700	419.1	5.57	3.40	1.26
	해운대	108.4	73.5	34.9	3.904	1.799	5.310	334.5	5.84	3.32	0.69
	강서구	108.2	76.0	32.2	4.416	1.870	5.808	195.9	9.04	3.36	0.03
대구시	중 구	111.5	80.4	31.1	4.479	1.746	5.571	465.2	7.63	3.05	2.01
	동 구	112.0	78.5	33.5	4.224	1.769	5.378	272.0	6.18	3.28	1.02
	서 구	110.5	76.5	34.0	4.134	1.853	5.406	286.0	5.15	3.35	1.31
	남 구	117.3	84.8	32.5	4.618	1.794	5.448	349.8	5.89	3.20	0.70
	달서구	109.9	74.8	35.1	4.099	1.856	5.483	341.6	5.08	3.42	1.15
	북 구	111.8	79.0	32.8	4.132	1.641	5.230	340.3	5.74	3.37	0.95
	수성구	123.5	83.8	39.7	4.120	1.908	4.916	466.3	6.14	3.35	1.00

註: 〈附表 1〉의 註 참조.

〈附表 2〉 계속

시·도명	조합명	수지율	자립도	국 고 보조율	보험료	국 고 부담금	급여비	소득 과표	노 인 부양비	부양률	의원 분포
인천시	중 구	134.6	102.8	31.8	6.102	1.906	5.936	404.6	10.03	3.02	0.48
	동 구	119.6	88.5	31.1	4.971	1.740	5.615	234.9	7.67	3.00	0.23
	남 구	114.1	83.3	30.8	4.508	1.583	5.415	391.4	6.28	3.22	1.49
	남동구	122.1	88.4	33.7	4.848	1.800	5.485	325.7	5.64	3.23	0.95
	북 구	117.2	84.7	32.5	4.626	1.701	5.462	339.7	5.22	3.23	1.97
	서 구	124.3	91.7	32.6	4.668	1.557	5.093	306.4	4.91	3.16	0.62
광주시	동 구	119.6	79.6	40.0	3.807	1.933	4.785	354.5	6.38	3.22	1.56
	북 구	111.6	73.9	37.7	3.467	1.739	4.694	288.3	5.27	3.35	1.26
	서 구	112.9	73.9	39.0	3.589	1.874	4.859	289.0	5.37	3.42	1.26
	광산구	117.3	76.7	40.6	3.825	1.917	4.990	184.7	7.97	3.27	0.35
대전시	동 구	106.3	75.2	31.1	4.273	1.769	5.679	252.7	6.08	3.27	1.07
	중 구	183.4	128.6	54.8	7.166	1.852	5.571	360.0	6.22	3.21	2.03
	서 구	120.2	83.7	36.5	4.270	1.671	5.103	386.9	5.03	3.35	0.86
	유성구	103.8	73.2	30.6	3.991	1.626	5.453	244.9	8.84	3.33	0.20
	대덕구	112.9	78.9	34.0	4.392	1.803	5.569	303.6	4.90	3.24	0.43
경기도	장안구	114.2	81.6	32.6	4.507	1.778	5.520	351.7	5.32	3.20	1.34
(수 원)	권선구	123.1	90.0	33.1	4.756	1.714	5.285	355.0	5.72	3.21	0.91
(부 천)	중 구	118.8	83.0	35.8	4.359	1.828	5.250	337.5	4.71	3.16	1.20
	남 구	119.7	88.2	31.5	4.437	1.513	5.033	376.2	5.13	3.13	1.01
(성 남)	중원구	104.4	75.4	29.0	4.081	1.458	5.414	402.1	5.24	3.27	1.06
	수정구	109.1	76.3	32.8	4.249	1.820	5.565	207.6	4.83	3.22	0.90
	안양시	121.0	90.1	30.9	4.269	1.400	4.739	394.4	5.97	3.10	1.69
	광명시	118.1	84.8	33.3	4.573	1.766	5.395	355.5	6.02	3.00	1.00
	안산시	118.7	83.9	34.8	4.432	1.708	5.284	334.9	4.75	3.04	1.27
	과천시	119.5	87.1	32.4	5.061	1.889	5.810	564.9	9.04	2.68	0.20
	구리시	114.4	80.2	34.2	4.228	1.775	5.269	227.2	6.00	3.00	0.39
	동두천	107.0	74.0	33.0	4.023	1.765	5.435	260.0	7.74	2.99	0.22
	의정부	113.3	79.4	33.9	4.239	1.728	5.338	269.3	5.54	3.00	0.78
	평택시	121.8	88.2	33.6	4.699	1.775	5.325	333.3	6.65	3.03	0.42
	송탄시	112.8	81.1	31.7	4.618	1.786	5.698	262.8	6.05	3.07	0.34
	군포시	123.5	85.7	37.8	3.826	1.448	4.463	392.5	5.01	3.00	0.41
	의왕시	122.7	81.1	41.6	3.881	2.012	4.788	280.0	5.84	2.92	0.21
	시흥시	100.8	64.9	35.9	3.287	1.783	5.064	231.5	6.60	3.01	0.24
	하남시	114.9	80.9	34.0	4.473	1.848	5.527	250.2	7.21	3.14	0.27
	오산시	114.3	79.8	34.5	4.332	1.824	5.428	366.4	6.10	3.28	0.25
	미금시	113.1	77.7	35.4	3.969	1.765	5.107	264.7	12.95	3.09	0.17
	고양시	99.60	66.4	33.2	3.674	1.695	5.533	343.9	6.48	2.88	0.75
강원도	춘천시	103.1	71.6	31.5	4.334	1.880	6.055	290.5	8.19	3.10	0.54
	원주시	108.9	80.6	28.3	4.722	1.621	5.858	343.5	7.49	3.18	0.58
	강릉시	115.5	79.7	35.8	4.128	1.823	5.180	365.8	7.32	3.19	0.45
	삼척시	116.1	81.4	34.7	4.351	1.852	5.348	420.0	7.62	3.20	0.11
	동해시	109.3	74.9	34.4	4.093	1.874	5.464	340.1	7.58	3.22	0.22

〈附表 2〉 계속

시·도명	조합명	수지율	자립도	국고보조율	보험료	국고부담금	급여비	소득과표	노인부양비	부양률	의원분포
강원도	태백시	98.8	71.6	27.2	4.321	1.649	6.036	263.3	4.57	3.34	0.18
	속초시	103.4	70.3	33.1	3.904	1.806	5.551	357.9	8.59	3.18	0.27
충청	청주시	113.3	79.7	33.6	4.297	1.738	5.393	312.7	5.43	3.38	1.72
북도	충주시	101.1	65.1	36.0	3.422	1.866	5.254	336.5	7.42	3.40	0.41
	제천시	114.7	77.6	37.1	4.003	1.870	5.156	370.0	6.99	3.33	0.34
충청	천안시	117.5	81.7	35.8	4.285	1.825	5.243	389.3	7.41	3.24	0.78
남도	공주시	126.5	84.1	42.4	3.846	1.902	4.574	289.2	7.59	3.53	0.21
	대천시	104.9	73.9	31.0	3.989	1.661	5.394	361.5	7.04	3.46	0.18
	온양시	107.4	72.2	35.2	3.961	1.859	5.489	289.1	7.49	3.21	0.27
	서산시	104.2	69.7	34.5	3.757	1.824	5.387	309.2	8.17	3.43	0.24
전라	완산구	109.7	75.8	33.9	4.213	1.842	5.556	301.9	7.00	3.46	1.24
북도	덕진구	105.5	75.0	30.5	4.215	1.699	5.618	293.7	6.42	3.51	1.07
(전주)	군산시	109.7	76.0	33.7	4.076	1.779	5.364	344.2	7.06	3.31	0.70
	이리시	108.5	75.0	33.5	4.089	1.780	5.450	294.3	6.46	3.34	0.80
	정주시	103.7	71.0	32.7	4.150	1.875	5.842	294.2	8.72	3.52	0.33
	남원시	110.2	75.9	34.3	4.268	1.898	5.626	329.4	7.68	3.40	0.25
	김제시	99.1	67.0	32.1	3.904	1.863	5.826	255.7	11.14	3.40	0.15
전라	목포시	101.2	70.4	30.8	3.922	1.682	5.568	309.6	6.28	3.56	0.73
남도	여수시	107.3	70.1	37.2	3.601	1.914	5.138	285.5	6.11	3.57	0.58
	여천시	112.4	72.7	39.7	3.730	2.032	5.131	217.4	7.31	3.60	0.11
	순천시	112.6	73.3	39.3	3.578	1.891	4.880	373.3	5.88	3.42	0.65
	나주시	109.3	70.2	39.1	3.276	1.804	4.666	277.4	10.28	3.21	0.19
	동광양	112.5	71.3	41.2	3.576	2.096	5.014	200.0	6.63	3.58	0.06
경상	포항시	121.4	85.8	35.6	4.388	1.791	5.116	448.2	4.54	3.29	1.02
북도	경주시	114.0	79.5	34.5	4.325	1.852	5.440	361.8	9.10	3.16	0.42
	김천시	125.8	88.4	37.4	4.502	1.875	5.090	337.3	8.27	3.43	0.28
	안동시	122.2	84.1	38.1	4.238	1.910	5.041	357.5	8.30	3.34	0.38
	구미시	120.1	87.7	32.4	4.837	1.698	5.516	373.7	5.14	3.28	0.65
	영주시	109.8	70.6	39.2	3.283	1.796	4.654	331.1	8.34	3.41	0.19
	영천시	110.6	78.8	31.8	4.486	1.771	5.696	323.9	8.70	3.29	0.22
	상주시	121.1	82.4	38.7	4.179	1.957	5.073	253.5	10.15	3.34	0.14
	점촌시	116.3	80.3	36.0	3.829	1.702	4.768	282.2	8.08	3.49	0.15
	경산시	105.6	69.9	35.7	3.610	1.749	5.162	334.9	6.73	3.05	0.23
경상	중구	121.8	87.2	34.6	4.472	1.750	5.128	417.8	4.48	3.23	1.07
남도	남구	127.2	91.4	35.8	4.767	1.837	5.219	479.6	4.09	3.33	0.78
(울산)	동구	125.7	90.2	35.5	4.888	1.885	5.419	278.8	4.65	3.27	0.51
	마산시	111.0	76.0	35.0	4.013	1.838	5.283	388.5	5.81	3.25	1.54
	창원시	119.5	88.2	31.3	4.924	1.687	5.584	420.9	4.40	3.30	0.93
	진주시	121.5	85.5	36.0	4.280	1.777	5.004	340.1	5.58	3.49	0.58
	진해시	104.1	73.1	31.0	4.357	1.825	5.958	285.0	8.37	3.19	0.30
	충무시	122.2	84.5	37.7	4.128	1.824	4.886	319.5	6.32	3.52	0.30
	삼천포	94.9	64.3	30.6	3.602	1.707	5.598	256.6	9.17	3.59	0.14

〈附表 2〉 계속

시·도명	조합명	수지율	자립도	국고보조율	보험료	국고부담금	급여비	소득과표	노인부양비	부양률	의원분포
경상남도	김해시	120.5	81.5	39.0	3.814	1.756	4.680	310.2	5.27	3.24	0.40
	밀양시	126.6	89.1	37.5	4.431	1.813	4.975	347.7	8.11	3.33	0.16
	장승포	109.2	80.8	28.4	5.064	1.738	6.265	307.3	7.08	3.15	0.11
제주도	제주시	112.3	77.4	34.9	4.010	1.767	5.181	475.2	5.85	3.11	0.85
	서귀포	115.0	78.1	36.9	3.912	1.855	5.008	321.6	7.37	3.28	0.26
<군>											
경기도	강화군	93.6	61.3	32.3	3.495	1.883	5.698	123.5	17.38	3.50	0.12
	양주군	102.0	71.1	30.9	3.913	1.663	5.505	217.7	8.92	3.22	0.11
	여주군	98.9	68.3	30.6	4.008	1.803	5.865	231.2	12.20	3.40	0.13
	평택군	114.1	81.4	32.7	4.817	1.952	5.915	169.2	11.33	3.06	0.12
	파주군	100.2	67.4	32.8	3.785	1.818	5.615	236.8	10.67	3.13	0.48
	연천군	104.6	70.8	33.8	3.812	1.833	5.386	158.6	12.78	3.30	0.09
	포천군	108.6	77.2	31.4	4.477	1.792	5.800	269.6	10.37	3.36	0.25
	가평군	100.7	68.2	32.5	3.843	1.823	5.634	179.2	11.12	3.27	0.08
	양평군	107.2	73.7	33.5	3.950	1.796	5.361	196.1	16.14	3.29	0.12
	이천군	115.7	81.6	34.1	4.535	1.891	5.556	284.3	10.83	3.43	0.37
	용인군	107.7	74.7	33.0	4.292	1.839	5.748	357.1	8.63	3.22	0.48
	안성군	106.8	73.1	33.7	4.128	1.917	5.645	192.7	12.21	3.38	0.25
	김포군	96.3	65.0	31.3	3.762	1.785	5.784	269.5	10.18	3.23	0.24
	웅진군	97.3	62.5	34.8	3.350	1.895	5.361	134.0	18.08	3.12	0.01
	광주군	115.0	81.7	33.3	4.397	1.756	5.384	267.5	9.19	3.20	0.13
강원도	화성군	118.2	83.5	34.7	4.560	1.898	5.460	201.9	11.76	3.34	0.26
	남양주	105.4	72.1	33.3	3.839	1.716	5.323	212.8	7.74	3.07	0.26
	홍천군	95.7	62.7	33.0	3.634	1.932	5.796	159.6	13.45	3.61	0.16
	춘천군	97.6	67.2	30.4	4.241	1.928	6.308	105.9	15.36	3.42	0.02
	횡성군	104.9	69.5	35.4	3.740	1.939	5.381	150.5	15.18	3.54	0.03
	원주군	108.6	75.5	33.1	4.188	1.837	5.549	133.3	15.31	3.35	0.02
	영월군	95.6	63.1	32.5	3.407	1.779	5.400	179.8	13.29	3.37	0.09
	평창군	97.4	60.9	36.5	3.058	1.871	5.022	130.5	12.86	3.62	0.07
	정선군	95.0	60.9	34.1	3.116	1.779	5.117	136.5	12.26	3.50	0.11
	철원군	95.7	66.8	28.9	4.181	1.827	6.261	141.1	12.81	3.59	0.09
	화천군	95.3	67.0	28.3	4.203	1.812	6.276	151.4	13.84	3.32	0.04
	양구군	100.4	66.2	34.2	3.935	2.059	5.944	129.5	12.63	3.63	0.02
	인제군	101.7	63.6	38.1	3.373	2.031	5.302	165.2	13.14	3.58	0.06
	고성군	99.2	59.6	39.6	2.994	2.027	5.027	188.5	13.31	3.44	0.04
	양양군	101.1	62.4	38.7	3.190	1.996	5.115	172.8	12.29	3.48	0.03
충청북도	명주군	99.5	63.9	35.6	3.457	1.932	5.409	164.8	11.68	3.45	0.10
	삽척군	113.1	75.5	37.6	3.700	1.896	4.903	113.4	13.85	3.36	0.05
	보은군	97.2	64.2	33.0	3.684	1.942	5.735	151.8	16.97	3.59	0.10
	청원군	97.6	62.7	34.9	3.579	1.977	5.709	118.5	12.58	3.59	0.10
	옥천군	97.0	64.0	33.0	3.619	1.814	5.652	176.6	15.49	3.35	0.12
	영동군	90.5	56.2	34.3	3.113	1.864	5.539	167.8	17.21	3.46	0.13
	진천군	99.7	69.9	29.8	4.082	1.723	5.842	205.7	13.87	3.35	0.11

〈附表 2〉 계속

시·도명	조합명	수지율	자립도	국고보조율	보험료	국고부담금	급여비	소득과표	노인부양비	부양률	의원분포
충청북도	괴산군	103.2	69.6	33.6	3.867	1.894	5.555	176.4	15.16	3.41	0.16
	음성군	102.2	70.0	32.2	3.936	1.801	5.626	159.4	13.78	3.53	0.13
	충원군	93.9	61.9	32.0	3.329	1.722	5.377	100.5	16.55	3.52	0.06
	제천군	102.3	65.0	37.3	3.470	2.024	5.340	87.0	17.97	3.43	0.02
	단양군	97.3	61.7	35.6	3.157	1.824	5.115	179.0	13.20	3.47	0.06
충청남도	금산군	105.5	69.5	36.0	3.998	2.105	5.752	123.7	14.01	3.54	0.20
	연기군	108.8	76.0	32.8	4.389	1.946	5.778	232.4	13.35	3.43	0.24
	공주군	105.2	67.4	37.8	3.242	1.847	4.806	88.9	16.85	3.70	0.09
	논산군	95.7	64.1	31.6	3.327	1.665	5.192	178.5	13.93	3.52	0.39
	부여군	92.7	59.9	32.8	3.242	1.796	5.410	163.9	14.04	3.59	0.16
	서천군	86.6	58.5	28.1	3.668	1.786	6.274	170.2	16.40	3.51	0.24
	보령군	92.1	59.7	32.4	3.408	1.882	5.708	83.5	13.46	3.52	0.05
	청양군	96.5	63.7	32.8	3.761	1.980	5.901	124.5	17.43	3.58	0.08
	홍성군	88.5	58.3	30.2	3.562	1.837	6.107	200.5	14.77	3.56	0.24
	예산군	98.9	63.7	35.2	3.525	1.967	5.536	134.8	13.82	3.65	0.25
	당진군	98.2	65.7	32.5	3.810	1.899	5.798	189.3	12.72	3.65	0.30
	아산군	103.1	67.9	35.2	3.855	1.995	5.678	159.8	14.71	3.47	0.08
	천안군	105.6	71.5	34.1	4.016	1.911	5.617	184.3	13.41	3.37	0.10
	서산군	97.0	63.0	34.0	3.322	1.825	5.277	103.4	14.08	3.63	0.06
	태안군	98.8	61.9	36.9	3.184	1.926	5.144	102.7	13.38	3.65	0.09
전라북도	옥구군	102.6	67.6	35.0	3.840	2.014	5.680	141.4	12.55	3.59	0.05
	완주군	99.3	62.3	37.0	3.689	2.063	5.922	111.0	14.08	3.51	0.10
	진안군	101.4	62.9	38.5	3.316	2.083	5.275	87.2	16.48	3.46	0.05
	무주군	90.8	56.4	34.4	3.313	2.059	5.875	100.7	16.09	3.53	0.05
	장수군	90.2	55.9	34.3	3.186	2.001	5.701	93.3	16.16	3.62	0.06
	임실군	98.6	65.4	33.2	3.965	2.054	6.062	110.5	17.38	3.49	0.10
	남원군	102.3	64.7	37.6	3.628	2.163	5.608	64.0	19.00	3.52	0.03
	순창군	84.7	53.0	31.7	3.268	1.995	6.167	90.3	18.77	3.49	0.06
	정읍군	91.4	58.7	32.7	3.411	1.923	5.811	77.0	15.66	3.43	0.11
	고창군	99.8	69.2	30.6	4.134	1.850	5.970	104.4	15.40	3.48	0.16
	부안군	94.0	59.5	34.5	3.173	1.898	5.336	125.5	13.29	3.37	0.13
	익산군	103.1	66.2	36.9	3.622	2.045	5.472	165.5	13.10	3.48	0.14
	김제군	99.5	60.7	38.8	3.278	2.139	5.399	81.7	14.92	3.39	0.04
전라남도	담양군	95.8	59.0	36.8	2.923	1.842	4.958	114.5	16.52	3.36	0.10
	곡성군	92.7	57.8	34.9	3.018	1.849	5.220	109.6	18.58	3.29	0.09
	구례군	91.6	56.6	35.0	3.041	1.897	5.369	120.7	15.60	3.49	0.05
	여천군	90.7	55.0	35.7	2.837	1.886	5.158	102.5	15.28	3.81	0.05
	승주군	96.2	60.6	35.6	3.112	1.851	5.133	90.5	15.17	3.41	0.03
	고흥군	80.0	49.9	30.1	2.645	1.585	5.297	80.2	17.15	3.50	0.16
	보성군	104.4	67.3	37.1	3.337	1.864	4.960	118.8	15.86	3.35	0.11
	화순군	96.7	58.3	38.4	2.703	1.771	4.633	124.8	14.21	3.34	0.10
	장흥군	106.1	71.6	34.5	3.631	1.776	5.070	118.5	17.41	3.51	0.09

〈附表 2〉 계속

시·도명	조합명	수지율	자립도	국고보조율	보험료	국고부담금	급여비	소득과표	노인부양비	부양률	의원분포
전라남도	강진군	83.0	53.7	29.3	3.137	1.746	5.839	116.3	15.58	3.28	0.10
	해남군	89.4	55.2	34.2	2.855	1.804	5.172	99.8	14.12	3.54	0.20
	영암군	105.0	70.6	34.4	3.704	1.819	5.249	104.1	13.11	3.33	0.11
	무안군	103.5	68.4	35.1	3.622	1.887	5.296	89.7	12.90	3.42	0.12
	나주군	83.8	51.2	32.6	2.670	1.723	5.218	82.2	15.96	3.16	0.10
	함평군	73.5	46.3	27.2	2.665	1.603	5.756	89.6	15.64	3.15	0.10
	영광군	85.2	56.7	28.5	3.459	1.692	6.099	109.8	12.52	3.44	0.14
	장성군	88.8	57.2	31.6	3.199	1.813	5.595	106.9	14.71	3.14	0.09
	완도군	89.9	52.8	37.1	2.430	1.753	4.602	116.4	12.66	3.55	0.08
	진도군	94.3	53.7	40.6	2.581	2.006	4.802	73.8	13.25	3.35	0.08
	신안군	106.7	67.8	38.9	3.243	2.013	4.782	54.7	12.34	3.30	0.02
	광양군	105.9	65.0	40.9	3.226	2.075	4.963	168.3	11.16	3.77	0.13
경상북도	군위군	105.0	69.0	36.0	3.817	2.022	5.532	107.2	19.75	3.26	0.02
	달성군	106.6	73.7	32.9	4.219	1.847	5.722	316.9	9.62	3.20	0.15
	의성군	100.9	64.7	36.2	3.491	1.997	5.397	128.2	17.65	3.24	0.11
	안동군	107.1	71.3	35.8	3.858	1.974	5.408	70.4	19.05	3.45	0.04
	청송군	101.5	63.8	37.7	3.314	1.986	5.193	109.2	15.57	3.29	0.06
	영양군	102.3	62.6	39.7	3.049	1.989	4.871	99.7	14.93	3.42	0.01
	영덕군	86.2	53.6	32.6	3.073	1.851	5.737	189.3	13.84	3.35	0.06
	영일군	105.8	73.6	32.2	4.352	1.905	5.916	175.5	11.53	3.35	0.20
	경주군	105.6	70.7	34.9	4.027	1.974	5.694	163.1	15.62	3.34	0.18
	영천군	103.8	70.1	33.7	4.165	2.030	5.941	92.7	16.43	3.25	0.03
	청도군	98.2	64.6	33.6	3.698	1.954	5.727	117.3	17.60	3.25	0.10
	고령군	107.9	73.6	34.3	4.084	1.925	5.552	149.6	16.89	3.30	0.02
	성주군	108.4	74.0	34.4	4.234	1.967	5.719	122.0	15.70	3.30	0.07
	칠곡군	105.4	74.8	30.6	4.448	1.796	5.950	215.2	12.13	3.27	0.13
	금릉군	96.5	58.3	38.2	3.206	2.113	5.494	68.7	19.79	3.41	0.01
	선산군	99.6	67.7	31.9	3.773	1.752	5.570	127.5	16.50	3.34	0.06
	상주군	104.5	66.4	38.1	3.572	2.077	5.377	61.2	20.71	3.34	0.06
	문경군	107.5	64.9	42.6	3.434	2.314	5.291	68.7	19.01	3.54	0.04
	예천군	104.7	66.4	38.3	3.425	2.004	5.157	110.9	20.29	3.38	0.06
	영풍군	101.0	59.7	41.3	2.912	2.038	4.876	103.8	16.92	3.58	0.05
	봉화군	93.1	53.8	39.3	2.555	1.902	4.751	108.3	17.65	3.58	0.05
	울진군	85.8	50.7	35.1	2.753	1.913	5.426	200.7	15.00	3.27	0.11
	울릉군	98.70	61.2	37.5	3.140	1.977	5.131	325.3	10.44	3.06	0.02
	경산군	113.7	79.5	34.2	4.267	1.823	5.365	197.8	12.09	3.33	0.09
경상남도	진양군	101.8	70.8	31.0	4.018	1.782	5.677	100.9	13.45	3.64	0.04
	의령군	94.3	60.9	33.4	3.704	2.063	6.082	105.5	18.24	3.18	0.09
	함안군	93.9	64.2	29.7	3.830	1.779	5.968	163.0	12.91	3.25	0.11
	창녕군	109.8	76.6	33.2	4.084	1.749	5.329	150.8	13.38	3.23	0.15
	양산군	99.4	68.3	31.1	3.752	1.585	5.492	266.5	8.50	3.28	0.40
	울산군	102.9	70.9	32.0	4.085	1.786	5.761	234.3	10.99	3.21	0.22

〈附表 2〉 계속

시·도명	조합명	수지율	자립도	국고보조율	보험료	국고부담금	급여비	소득과표	노인부양비	부양률	의원분포
경상남도	김해군	99.0	66.9	32.1	3.819	1.792	5.710	205.0	9.84	3.42	0.13
	창원군	103.7	73.1	30.6	4.097	1.656	5.606	218.1	10.82	3.41	0.08
	통영군	108.7	69.8	38.9	3.454	1.977	4.952	154.5	14.35	3.61	0.01
	고성군	95.4	64.5	30.9	3.807	1.862	5.902	166.1	13.17	3.47	0.05
	사천군	96.5	65.2	31.3	3.611	1.737	5.539	128.2	13.10	3.54	0.03
	남해군	96.2	60.8	35.4	3.225	1.904	5.304	109.0	20.29	3.41	0.12
	하동군	98.6	64.8	33.8	3.494	1.753	5.389	150.4	16.69	3.54	0.09
	산청군	98.6	64.7	33.9	3.696	1.961	5.716	106.1	15.05	3.50	0.05
	함양군	95.8	58.6	37.2	3.016	1.968	5.144	134.7	15.71	3.40	0.07
	거창군	96.2	60.3	35.9	3.326	2.003	5.519	178.4	16.35	3.45	0.13
	합천군	84.4	53.5	30.9	3.118	1.843	5.832	117.1	11.63	3.37	0.10
	밀양군	109.3	73.1	36.2	3.760	1.851	5.145	96.0	14.15	3.52	0.06
	거제군	99.7	68.9	30.8	4.170	1.876	6.054	157.9	11.94	3.34	0.11
제주도	북제주	107.5	69.9	37.6	3.596	1.926	5.142	151.7	11.99	3.33	0.11
	남제주	107.6	71.4	36.2	3.708	1.893	5.194	154.5	9.71	3.55	0.08

附錄 Ⅲ. 綜合財政指數에 의한 完全差等配分 結果

〈附表 3-1〉 綜合財政力指數에 의한 分位間 完全差等配分 結果(1993)
- 保險給與費 國庫負擔金豫算의 20% 削減 -

분위	기준수지율	새로운 수지율	새로운 국고보조율
1	87.1	94.1	38.8
2	93.9	99.5	38.9
3	96.5	100.3	36.9
4	98.6	100.7	35.4
5	101.2	102.8	34.2
6	104.3	103.3	32.1
7	106.9	104.4	31.1
8	109.6	102.6	26.8
9	112.5	104.9	26.1
10	115.1	105.8	24.4
11	118.8	108.6	24.3
12	126.6	115.5	23.7

註: 기준수지율은 1인당정액 보조금에 의한 배분시 수지율임.

〈附表 3-2〉 綜合財政力指數에 의한 地域間 完全差等配分 結果(1993)
- 保險給與費 國庫負擔金豫算 20% 削減 -

지역	수지율	새로운 수지율	새로운 국고보조율
서울	119.2	106.7	21.4
부산	110.7	100.8	22.9
대구	113.8	103.6	23.9
인천	122.0	114.0	24.2
광주	115.4	104.8	28.9
대전	125.3	112.5	24.5
경기	110.7	104.9	27.6
강원	102.5	100.8	31.9
충북	100.8	100.4	33.7
충남	101.7	101.3	33.7
전북	100.2	100.5	34.6
전남	97.0	101.4	39.8
경북	106.4	106.0	35.5
경남	106.1	103.5	31.0
제주	110.6	104.5	30.3

附錄 Ⅳ. 所得課標와 老人扶養比의 函數形態 變形에 따른 回歸分析

	표준화된 회귀분석				탄력성분석			
	1992년		1993년		1992년		1993년	
	계수	t값	계수	t값	계수	t값	계수	t값
소득과표(y_i)의 형태를 y/y_i로 취한 경우 즉 {y/y_i, b_i} (y는 y_i의 평균)								
상수	-	-	-	-	4.505	76.089*	4.523	85.819*
소득	-0.419	-5.793*	-0.279	-3.729*	-0.160	-7.635*	-0.133	-6.882*
노인부양비	-0.348	-4.804*	-0.488	-6.511*	-0.071	-2.590*	-0.101	-4.155*
R-squared	0.534		0.543		0.586		0.614	
adj R-squared	0.532		0.541		0.582		0.611	
F value	302.1		313.3*		185.8*		208.9*	
소득과표와 노인부양비에 각각 root를 취한 경우 즉 {$\sqrt{y/y_i}$, $\sqrt{b_i}$}								
상수	-	-	-	-	4.505	76.089*	4.523	85.819*
소득	-0.513	-6.697*	-0.403	-5.201*	-0.319	-7.635*	-0.267	-6.882*
노인부양비	-0.269	-3.511*	-0.382	-4.934*	-0.143	-2.590*	-0.202	-4.155*
R-squared	0.569		0.573		0.586		0.614	
adj R-squared	0.568		0.571		0.582		0.611	
F value	349.1*		353.6*		185.8		208.9*	

註: *는 유의수준 5%내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附錄 V. 지니係數의 槪念과 計算方法

지니계수는 소득분포의 불평등도를 측정하는데에 흔히 사용된다. 아래 그림과 같이 횡축에 소득의 크기순에 따라 누적소득인원비율을 잡고, 종축에 이들의 누적소득액비율을 표시하였을 때의 분포선 OCA를 흔히 로렌즈곡선이라 한다. 여기서 45도의 보조선은 평등한 소득분포를 나타내고, OBA는 소득분포가 가장 불평등한 상태를 나타낸다. 따라서 △OCA는 불평등면적(concentration area)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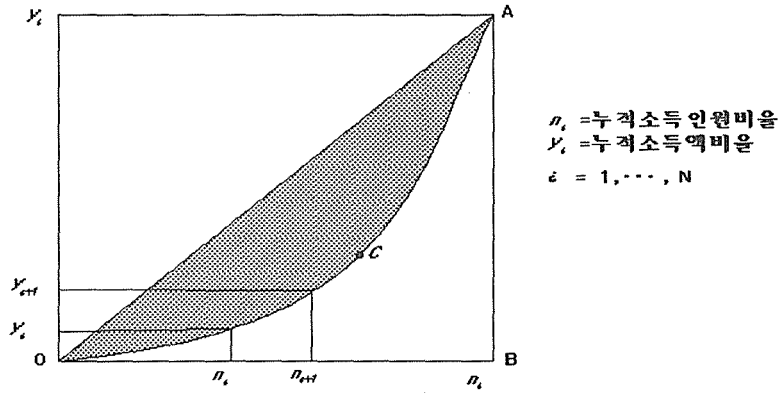

$$\triangle OCA = \frac{1}{2} - \sum_{i=1}^{N}(y_i+y_{i+1})(n_{i+1}-n_i)/2$$

$$= \frac{1}{2}\left[\ 1 - \sum_{i=1}^{N}(y_i+y_{i+1})(n_{i+1}-n_i)\right]$$

△OCA 값은 가장 불평등한 소득분포일 때 1/2, 가장 평등한 소득분포일 때 0 의 값을 갖는다. 따라서 소득분포의 불평등측정치가 0 혹은 1의 값을 갖도록 2를 곱한 것이 지니계수이다. 즉

$$GI = 1 - \sum_{i=1}^{N}(y_i + y_{i+1})(n_{i+1} - n_i)$$

$$= 2\sum_{i=1}^{N}\frac{(N+1-i)(\mu - y_i)}{\mu N^2}$$

여기서 $\mu = \sum_{i=1}^{N}\frac{y_i}{N}$

지니계수는 불평등도를 시각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지니계수의 산출과정에 있어서 모집단의 모든 표본의 소득이 반영되고, 좋고 나쁜 소득분포의 서열을 규정하는 "피구-달톤"조건을 잘 충족시키고 있다.

그러나 단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첫째, 곡선형태와 관계없이 면적만 같으면 지니계수가 같을 수 있다는 것이며, 둘째, 이론적으로 지니계수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취하지만 실측치변화는 가장 좋은 소득분포가 약 0.3, 가장 나쁜 분포가 0.55 정도이므로 실질적인 변화폭은 0.3 포인트이내로서 그 감응도가 매우 낮다는 것이다.

刊行物 案內

‖研‖究‖報‖告‖書‖

94-11 우리나라 家口構造의 變動과 市·道別 家口數 推計
A5新 / 158쪽 / 定價 4,000원 / 金柔敬·曺大熙 著

94-12 2010年의 醫師人力 需給 展望
A5新 / 84쪽 / 定價 2,000원 / 宋建鏞·崔晶秀·金東奎 外

94-13 未婚男性의 性行態에 關한 硏究
A5新 / 224쪽 / 定價 5,000원 / 林鍾權·金惠蓮·張東鉉 外

94-14 21世紀에 對備한 韓國製藥産業의 發展方向과 保險藥價 管理制度 改善方案
A5新 / 296쪽 / 定價 7,000원 / 李儀卿·曺在國·金元重 外

94-15 障碍人福祉의 現況과 政策課題
A5新 / 357쪽 / 定價 8,000원 / 朴玉喜·權重燉 著

94-16 性比의 不均衡 變動推移와 對應方案
A5新 / 144쪽 / 定價 3,000원 / 趙南勳·徐文姬 著

94-17 老人生活 實態分析 및 政策課題
A5新 / 577쪽 / 定價 13,000원 / 李佳玉·徐美卿·高敬煥 外

94-18 開放化에 對備한 食品産業의 構造改善 및 發展方案
A5新 / 242쪽 / 定價 6,000원 / 金元重·李相暎·金惠蓮 外

94-19 最低生計費 計測調査 硏究
A5新 / 297쪽 / 定價 7,000원 / 朴純一·金美坤 外

94-20 醫藥品 臨床試驗 管理基準 導入方案 硏究

A5新 / 159쪽 / 定價 5,000원 / 李儀卿·張善美 外

94-21 韓國 家族保健事業의 現況과 政策課題

A5新 / 125쪽 / 定價 3,000원 / 文顯相·張英植 外

94-22 母乳授乳實態 分析과 支援政策의 課題

A5新 / 115쪽 / 定價 3,000원 / 朴仁和·黃那美 著

94-23 國民健康診斷調査 設計에 關한 硏究

A5新 / 145쪽 / 定價 3,000원 / 李順英·金善祐 著

94-24 少年/少女家長家族의 生活實態와 政策課題

A5新 / 186쪽 / 定價 4,000원 / 金應錫·李尙憲 著

94-25 1994年 全國 出産力 및 家族保健 實態調査

A5新 / 328쪽 / 定價 7,000원 / 洪文植·李相暎·張英植 外

94-26 21世紀를 향한 保健醫療 政策課題

A5新 / 220쪽 / 定價 5,000원 / 金秀春·金銀珠 編著

94-27 精神保健의 現況과 政策課題

A5新 / 453쪽 / 定價 10,000원 / 南貞子·韓英子·崔晶秀 外

94-28 診療圈別 醫療資源의 適正配分과 政策課題

A5新 / 143쪽 / 定價 3,000원 / 金東奎·金銀珠 著

94-29 墓地制度에 관한 國民 意識行態調査 硏究

A5新 / 117쪽 / 定價 3,000원 / 林鍾權·張東鉉·趙洪滉 著

94-30 家族領域의 삶의 質과 政策課題

A5新 / 213쪽 / 定價 5,000원 / 張玄燮·金顯玉·裵花玉 著

94-31 地域醫療保險의 保險料 賦課體系 改善方案 硏究
A5新 / 223쪽 / 定價 5,000원 / 金基玉·魯仁喆·柳美女 著

94-32 韓國의 保健·社會福祉 政策硏究
- 1994年度 硏究結果 要約報告 -
A5新 / 261쪽 / 定價 6,000원

94-33 健康增進示範保健所 運營을 위한 技術支援 硏究
A5新 / 350쪽 / 定價 7,000원 / 卞鐘和·李順英·鄭基惠 編著

95-01 赤十字會費 募金制度 改善方案
A5新 / 149쪽 / 定價 4,000원 / 韓惠卿·魯仁喆·姜惠圭 著

95-02 化粧品 價格表示의 適正化 方案
A5新 / 134쪽 / 定價 4,000원 / 曺在國·李相暎·金銀珠 著

95-03 家族缺損의 類型別 特徵과 家族政策의 接近方案
A5新 / 467쪽 / 定價 11,000원 / 孔世權·曺愛姐·許美暎 著

95-04 葬儀制度의 現況과 發展方向
A5新 / 187쪽 / 定價 5,000원 / 李顯松·李必道 著

95-05 出産率豫測과 人口構造 安定을 위한 適正出産水準
A5新 / 217쪽 / 定價 6,000원 / 文顯相·張英植·金柔敬 著

95-06 低所得層 實態變化와 政策課題
A5新 / 472쪽 / 定價 11,000원 / 魯仁喆·李成基 外

95-07 血漿分劃製劑의 公共管理政策에 관한 硏究
A5新 / 162쪽 / 定價 5,000원 / 韓惠卿·鄭宇鎭 著

95-08 嬰兒死亡率 算出을 위한 調査方法 開發硏究
A5新 / 180쪽 / 定價 5,000원 / 韓英子·都世綠 外

95-09 公衆保健醫師 職務敎育 改善方案

A5新 / 177쪽 / 定價 5,000원 / 李大熙·李熙龍·鄭洸 著

95-10 醫藥品 再評價制度 改善方案

A5新 / 158쪽 / 定價 5,000원 / 李儀卿·張善美 著

95-11 保育施設 評價基準 및 評價體系 開發

A5新 / 141쪽 / 定價 4,000원 / 鄭基源·吳美暎·安賢愛 著

95-12 醫療部門의 情報利用 活性化

A5新 / 166쪽 / 定價 5,000원 / 金東奎 外

95-13 韓國의 社會指標 體系改編 硏究(Ⅰ)-總括編-

A5新 / 362쪽 / 定價 9,000원 / 趙南勳 外

韓國의 社會指標 體系改編 硏究(Ⅱ)-解說編-

A5新 / 366쪽 / 定價 9,000원 / 趙南勳 外

95-16 韓國의 에이즈管理 및 監視體系의 效率的 運營方案

A5新 / 168쪽 / 定價 5,000원 / 李順英 著

▌政▌策▌報▌告▌書▌

94-01 老人生活實態와 老人福祉의 政策課題 李佳玉 著

94-02 低出産時代의 人口問題와 政策方向 洪文植 著

94-04 醫療서비스市場 對外開放에 따른 政策課題 魯仁喆 著

94-05 專門醫 人力需給 展望과 政策課題 宋建鏞 著

94-06 醫藥品 品質管理制度의 現況과 政策課題 李儀卿 著

94-07 國民年金基金의 效率的 運用方案
高喆基・鄭敬培・李佳玉 外

94-08 癡呆老人의 扶養實態와 對應戰略 權重燉 著

94-09 社會福祉事業基金 運營改善을 위한 共同募金制度의 導入方案 鄭基源・韓惠卿・張玄燮 著

94-10 社會保障基本法의 政策構想 鄭敬培・李成基 著

94-11 地域保健情報體系 開發硏究 金善祐・鄭永澈 著

94-12 農村福祉의 主要 政策課題 朴純一・金鎭順・李佳玉 著

94-13 公衆保健醫師 敎育 및 活動改善에 관한 硏究
金鎭順・趙成晋・崔成旭 著

94-14 西獨의 分斷管理政策과 統一後 所得保障政策에 관한 硏究 金振洙 著

95-01 國際社會保障協定 締結의 對應方向 金龍夏・崔秉浩 著

95-02 人口變動에 따른 勞動人力 需給展望과 政策課題
鄭宇鎭 著

95-03 地方化時代의 保健福祉政策 方向
金元重・鄭基源・張英植 外

95-04 生活保護對象者의 永久賃貸아파트 現況과 政策課題
朴純一 著

95-05 高齡化 社會를 향한 老人福祉의 實踐課題
金秀春・林鍾權・徐美卿・吳京錫 著

95-06 PROPOSALS FOR ENLARGING INTER-KOREAN ECONOMIC RELATIONS 延河淸 著

□ 著者 略歷 □

成均館大學校 貿易學科 卒業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政策學 碩士
美國 University of Georgia 經濟學 博士
現 韓國保健社會研究院 社會保險研究室長

〈主要 論文 및 著書〉

『國際社會保障協定 締結의 對應方向』, 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95. (共著)
"An Applied General Equilibrium Study of Social Security Reforms", (博士學位 論文), 1993.
『國民福祉年金의 財政收支 推計 및 財政分析』, 韓國開發研究院, 1985. 7. (共著)

研究報告書 95-17

地域醫療保險 國庫支援方式의 評價와 改善方案

1995年 12月 日 印刷 값: 4,000원

1995年 12月 日 發行

著 者 崔 秉 浩
發行人 延 河 淸
發行處 韓國保健社會研究院
서울特別市 恩平區 佛光洞 山42-14
代表電話 : 02) 355-8003
登 錄 1994年 7月 1日 (第8-142號)
印 刷 大明文化社

© 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94

ISBN 89-8187-016-0 93320